

연구보고 232 / 1990. 12.

#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장 우 환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P 4265

빈 면

## 머리말

우리 나라 전체 산림의 72%가 사유림이다. 그러나 사유림의 山林生產與件은 취약하다. 전체 사유림의 83% 이상이 Ⅱ齡級 이하인 幼齡林이고, ha당 立木蓄積은 30m<sup>3</sup>으로서 국유림의 48%에 불과하다. 국내 산림자원의 증대를 위해서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육림 단계에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을 담당할 林業人을 育成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유림의 경우 山主는 있으나 경영주체인 임업경영인과 작업 담당자인 임업노동자는 거의 없다. 그 동안 산주를 임업경영인으로 유도하려는 임업인 육성정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1982년에 572명이던 독립가가 매년 2% 이상씩 감소, 1989년에는 471명으로 줄었다. 1989년에 시작된 임업후계자도 89명에 불과하다.

이에 본연구원은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미래 사유림 경영을 담당할 중요한 경영주체로서의 임업경영인과 산림작업을 담당할 임업노동자를 포괄하는 임업인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착수하였다. 임업인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해서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 실태와 임업인 육성 기본방향 등에 관해서 먼저 검토해 보았으므로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이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신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작업단원, 그리고 연구과정중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산림청 기술지도과 및 임정과, 산림조합,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1990. 12.

院長 許信行

빈

면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내용과 범위 .....	3
3. 연구방법 .....	4
4. 보고서의 구성 .....	5

## 제 2 장 사유림 경영의 문제점과 임업인 육성의 필요성

1. 한국 사유림의 현황 .....	6
2. 사유림 경영상의 문제점 .....	8
3. 임업인 육성의 필요성 .....	18

## 제 3 장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 .....	20
2. 임업인 육성정책의 문제점 .....	36

## 제 4 장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

1.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 .....	40
2. 임업노동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 .....	55

## 제 5 장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1. 임업경영인의 육성방향 .....	76
2. 임업노동의 육성방향 .....	83

3.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	91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111
부록 1. 退役給與 및 災害補償 共濟會 約款 (林業技能 作業團) ..	135
부록 2. 임업경영인 설문조사표 .....	140
부록 3.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 설문조사표 .....	145
부록 4. 임업인 육성 관련업무담당자 설문조사표 .....	150

## 표 목 차

### 제 2 장

표 2-1 소유별 임야면적 추이	6
표 2-2 국유림과 사유림의 상태 비교	7
표 2-3 사유림 소유규모 분포	12
표 2-4 산림 소유규모별 산주수의 추이	13
표 2-5 임업종사자 중 농림학교 졸업자 비율, 1980	18

### 제 3 장

표 3-1 독립가 유형별 인정요건	22
표 3-2 연도별 독립가 현황	24
표 3-3 도별 독립가 현황	25
표 3-4 연령별 독립가 현황	25
표 3-5 임야 소유규모별 독립가 현황	26
표 3-6 임업후계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표	29
표 3-7 도별, 연령별 임업후계자 현황	30
표 3-8 임야 소유규모별 임업후계자 현황	31
표 3-9 임업후계자에 대한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조건	31
표 3-10 민유림 작업단의 조직	34
표 3-11 연령별 민유림 작업단 현황	35
표 3-12 학력별 민유림 작업단 현황	35
표 3-13 한국의 임업후계자와 농어민후계자, 일본의 임업후계자 육성제도 비교	37

표 3-14 임업후계자와 농어민후계자 지원조건 비교 ..... 38

제 4 장

표 4-1 임업경영인 설문조사의 개요	41
표 4-2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필요성	50
표 4-3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이유	51
표 4-4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이 어려운 이유	52
표 4-5 임업경영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	54
표 4-6 임업노동자 설문조사의 개요	57
표 4-7 산림작업단원들의 작업단 탈퇴 이유	68
표 4-8 산림작업단원들의 월평균 임업노동 소득이 낮은 이유	69
표 4-9 산림작업단의 연간 작업가능 물량이 부족한 이유	71
표 4-10 산림작업단이 별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72
표 4-11 산림작업단 운영시 애로점	73
표 4-12 산림작업 수행시 애로사항	75

제 5 장

표 5-1 산주의 임업경영 실태에 따른 구분	78
표 5-2 산주 유형 구분	79
표 5-3 임업노동과 농업노동의 특성 비교	85
표 5-4 임업노동 수요량 추산	89
표 5-5 임업노동 유형별 수요량	90
표 5-6 임업노동 공급량 추산	90
표 5-7 임업노동의 수급구조 전망, 2000	90
표 5-8 사유림 경영조직 형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2
표 5-9 향후 임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시급한 사항	95
표 5-10 임업후계자 유형별 지원방안	97
표 5-11 임업후계자에 대한 적정 용자규모	98

표 5-12 임업후계자에 대한 적정 융자조건	99
표 5-13 임업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대출방법	100
표 5-14 향후 임업노동자 육성을 위해 시급한 개선사항	102
표 5-15 산림작업단의 바람직한 소속 형태	103
표 5-16 산림작업단의 적정한 조직규모	104
표 5-17 한 개 산림작업단의 적정 인원	105
표 5-18 임업노동 종류별 현설노임	106
표 5-19 산림작업단원들의 월평균 적정 임업노동 소득	107
표 5-20 산림작업단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임금지불 형태	108
표 5-21 산림작업 수행시 시급한 안전대책	109
 부표 I-1 임업경영인의 연령 구성	115
부표 I-2 임업경영인의 학력 구성	115
부표 I-3 임업경영인의 직업 구성	116
부표 I-4 임업경영인의 총부양가족수	116
부표 I-5 임업경영인의 경지 및 임야 소유현황	117
부표 I-6 임업경영인의 임야 소유동기	117
부표 I-7 임업경영인의 임야 구입목적	117
부표 I-8 향후 임야 소유규모 확대 의향	118
부표 I-9 임야 소유규모 확대 후의 용도	118
부표 I-10 향후 임야 소유규모 축소 이유	119
부표 I-11 위탁임업경영단체(가칭)에 대한 임업경영 위탁 의향	119
부표 I-12 현재 임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	120
부표 I-13 현재 임업노동력의 문제점	120
부표 I-14 현재 임업경영인에게 가장 부족한 기술분야	121
부표 I-15 현재 임업경영인에게 시급한 자금 지원 분야	121
부표 I-16 임업경영인의 산림작업별 시행률	122

부표 I-17 임업경영인의 임업기계 보유율	122
부표 I-18 임업경영인의 지정동기	123
부표 I-19 독립가의 연차적인 감소 이유	123
부표 I-20 독립가 육성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	123
부표 I-21 독립가 육성정책이 비효율적인 이유	124
부표 I-22 실질적인 독립가 지원내용	124
부표 I-23 임업후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	124
 부표 II - 1 임업노동자의 연령 구성	125
부표 II - 2 임업노동자의 학력 구성	125
부표 II - 3 임업노동자의 직업 구성	126
부표 II - 4 임업노동자의 총부양가족수	126
부표 II - 5 임업노동자의 경지 및 임야 소유현황	127
부표 II - 6 임업노동자의 연간 산림작업 참여일수	127
부표 II - 7 임업노동자의 하루 평균 현실노임	128
부표 II - 8 임업노동자의 연간 임업노동 소득	128
부표 II - 9 임업노동자의 주소득원	129
부표 II-10 산림작업단 가입동기	129
부표 II-11 산림작업단원의 작업단 탈퇴 의향	130
부표 II-12 산림작업단 가입 전의 산림작업 실시 경험	130
부표 II-13 산림작업단원들이 주로 실시한 산림작업 종류	131
부표 II-14 산림작업단원들의 영림기능사 자격증 소지 유무	131
부표 II-15 산림작업단원들의 기능인 양성교육 참여 횟수	132
부표 II-16 산림작업단에서의 직책	132
부표 II-17 관내 산림작업을 담당하는 임업노동력 여건	133
부표 II-18 관내 산림작업단 조직 및 육성의 필요성	133
부표 II-19 관내 산림작업단 조직 및 육성이 필요한 이유	134
부표 II-20 관내 산림작업단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	134

## 그 림 목 차

### 제 2 장

그림 2-1 사유림 경영상의 문제점	9
그림 2-2 사유림 규모별 소유목적	15
그림 2-3 임업종사자의 고령화 추이, 1970~80	16
그림 2-4 임업종사자의 학력 분포, 1980	17

### 제 3 장

그림 3-1 독립가의 추천 및 인정절차	23
그림 3-2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29
그림 3-3 임업후계자 사업의 추진체계	32

### 제 5 장

그림 5-1 산주 유형별 육성방향	80
그림 5-2 임업경영인 육성의 의의	81
그림 5-3 임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변수 및 관련분야	82
그림 5-4 임업의 특성에 기인한 임업노동의 문제점 및 육성방향	87
그림 5-5 사유림 경영 조직체계 개선방안	93

빈  
면

# 제 1 장

##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 65%나 차지하는 산림국이다. 그러나 외형상 산림국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재 수요량의 84%를 외국산 목재에 의존하는 목재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목재 자급률이 낮은 근본 이유는 우리 나라의 산림이 대부분 유령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목축적이 낮기 때문이다. Ⅱ령급 이하의 유령림이 전체의 75%를 점유하고 있어 ha당 평균 임목축적이  $37m^3$ 에 불과하다. 즉, 전체 산림 여건이 아직 목재 생산기에 접어들지 못한 육림단계이다. 생산에 의한 소득 발생이 어려운 투자 단계인 것이다.

특히,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사유림의 경우, 산림 생산여건은 더욱 취약하다. Ⅱ령급 이하의 유령림이 전체의 83%를 점하고 있고,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30m^3$ 으로써 국유림  $62m^3/ha$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육성을 통한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유림 경영을 둘러싼 제반여건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난 10여년 동안 농산총 임금 상승 등 국내재 생산비용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국내재의 실질가격은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국내 목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8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 목재 수급구조의 특성상 값싼 외재가 국내 목재가격의 결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60년대 이후, 산업화·공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유출로 인하여 임업 노동력 부족 및 노임 상승현상은 직접적인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사유림 경영을 둘러싼 제반 불리한 여건은 사유림 소유자인 산주들의 임업경영 의욕을 상실시키게 된다는 데 근본 문제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산주는 임업경영으로 인한 임업 수익 증대보다는 임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가차익에 보다 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특히, 90%에 달하는 5ha 이하의 영세산주들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임업경영이외 산림 소유목적 등으로 인해 임업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임업경영의 특성상 대규모의 경영이 요구되는데 비해, 평균 2.4ha에 불과한 사유림 소유구조로서는 사유림 경영 자체가 실현되기 어렵다. 사유림 경영 의욕이 있는 일부 대규모 산주들의 경우, 임업경영기술, 임업경영자본, 임업노동력 등의 생산요소 부족으로 인한 임업경영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유림 경영의 제반 현실을 요약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산주는 있으나 임업인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유림 소유주로서의 산주는 있으나, 사유림 경영주체로서의 임업경영인과 산림작업 담당자로서의 전문 임업노동자는 없는 것 같다.

일부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경우, 임업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산주를 임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임업인 육성정책도 미흡한 상태이다. 1989년에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이 시작되어 89명의 후계자를

선발하였으나 아직 초보단계이다. 1971년부터 독립가 육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2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10ha 미만의 산주가 96%인 사유림 소유구조를 감안할 때, 포괄적 의미에서의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1990년부터 부족한 임업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유림 작업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 및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업경영인 및 임업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으로 “임업 후계자의 효과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김장수 외, 1987)와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마상규, 1988) 등이 있을 뿐이다. 이들 연구들은 각 분야에서의 부분적인 유용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사유림 경영체계 내에서 임업경영인과 임업노동자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임업인 육성방안 연구로서는 공통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미래 임업을 담당할 중요한 주체로서 임업경영인과 임업노동자를 포괄하는 임업인의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과 범위

###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유림 소유구조 및 경영실태 분석
- 2)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3)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 분석

4) 임업인 육성방안 설정

#### 나. 연구 범위

본연구에서는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점하는 사유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임업인<sup>1)</sup>의 범위는 사유림 경영주체인 임업경영인과 사유림 경영의 실제 담당자인 임업노동자로 설정했다.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실태 분석대상은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작업단의 단원 및 각각의 관련업무담당자가 포함되었다.

### 3. 연구방법

본연구는 크게 산주의 산림 경영실태 및 경영의식 조사, 임업노동 실태 조사, 임업인 육성정책 수용에 관한 설문조사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었다.

임업인의 실태 분석을 위하여 산주의 산림 경영실태 조사 및 임업노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를 분

1) 현재 임업인이라는 용어는 뚜렷한 개념의 정립이 없이 산주(Forest-land Owner), 임업계종사자(Forester), 임업관계공무원 및 단체의 임직원, 임업연구자 및 학자, 임업노동자, 임업지도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의 개념이 목재의 유통과정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보다 “식목에서 소재(素材)의 생산까지의 과정”이라는 협의의 개념이 일반적(임업노동연구회, 1976. P. 18)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임업인의 개념 역시 광의의 개념보다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협의의 개념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임업인의 범위는 임업경영인과 임업노동자로 국한되어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석하기 위해서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작업단의 단원, 그리고 시·군 산림과, 산림조합 관련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된 자료는 주로 제표분석 (Tabulation Analysis)에 의해 이용되었다.

#### 4.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 사유림 경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임업인 육성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임업경영인에 대한 임업경영실태와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의 임업노동 실태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임업경영인 육성방향과 임업노동의 육성방향을 고찰한 다음,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임업인 육성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하였다.

## 제 2 장

### 사유림 경영의 문제점과 임업인 육성의 필요성

#### 1. 한국 사유림의 현황

우리 나라의 사유림 면적은 1989년말 현재 4,642천ha로서 전체 산림 면적 6,485천ha의 72%를 점하고 있다(표 2-1). 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산지의 타용도 전용에 따라 전체 산림면적은 1970~89년간 연 평균 0.1%씩 감소해 왔다.

표 2-1 所有別 林野面積 推移

單位: 千ha, %

	國 有 林		公 有 林		私 有 林		計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1970	1,277	19.3	489	7.4	4,846	73.3	6,611	100.0
1975	1,310	19.7	499	7.5	4,819	72.6	6,535	100.0
1980	1,314	20.0	495	7.5	4,733	72.1	6,568	100.0
1985	1,314	20.1	493	7.5	4,705	72.0	6,531	100.0
1989	1,333	20.6	491	7.6	4,642	71.6	6,485	100.0
'70-'89 年平均 增減率	+ 0.23		+ 0.02		△ 0.23		△ 0.10	

資料: 山林廳, 1990.

국유림의 경우 동기간에 연평균 0.23%씩 증가한데 비하여 사유림의 경우는 연평균 0.23%씩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사유림 면적의 비중은 여전히 전체 산림면적의 2/3 이상을 점하고 있어, 전체 산림자원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 사유림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유림 상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소유의 국유림과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 상태를 비교해 보면 <표 2-2>와 같다. 표를 통해보면 사유림 면적은 4,501

표 2-2 국유림과 사유림의 상태 비교, 1989

單位: 천ha, 천m<sup>3</sup>, m<sup>3</sup>

구 분		계	국유림(A)	사유림(B)	B/A
I	면 적 (%)	1,995 (34.4)	257 (19.7)	1,738 (38.6)	6.76
	ha당축적	1.5	1.4	1.5	1.07
II	면 적 (%)	2,360 (40.6)	351 (26.9)	2,009 (44.6)	5.72
	ha당축적	45.1	51.7	43.9	0.85
III	면 적 (%)	918 (15.8)	313 (24.0)	605 (13.4)	1.93
	ha당축적	56.9	65.5	52.5	0.81
IV	면 적 (%)	390 (6.7)	266 (20.4)	124 (2.8)	0.47
	ha당축적	97.6	104.6	82.7	0.79
V	면 적 (%)	105 (1.8)	88 (6.7)	17 (0.4)	0.19
	ha당축적	119.1	120.9	110.1	0.91
VI	면 적 (%)	38 (0.7)	30 (2.3)	8 (0.2)	0.27
	ha당축적	125.2	128.2	113.9	0.89
計	면 적 (%)	5,806 (100.0)	1,305 (100.0)	4,501 (100.0)	3.45
	ha당축적	37.4	62.3	30.1	0.48

資料: 산림청, 1990.

천ha로서 국유림 면적 1,305천ha의 3.5배에 달하고 있으나, ha당 임목 측적은 사유림이  $30.1\text{m}^3$ 으로서 국유림  $62.3\text{m}^3$ 에 비해 48%에 불과하다. 영급별 면적을 보면 국유림의 경우 전체면적의 46.6%가 Ⅱ영급 이하의 幼齡林이고, 나머지 53.4%는 Ⅲ영급 이상의 成熟林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사유림은 전체면적의 83.2%인 3,747천ha가 I, Ⅱ영급의 幼齡林으로 구성되어 있고, Ⅲ영급 이상의 成熟林은 16.8%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영급이 유령림에서 성숙림으로 갈수록 총 임야면적 및 ha당 임목측적량의 측면에서 사유림 임상이 국유림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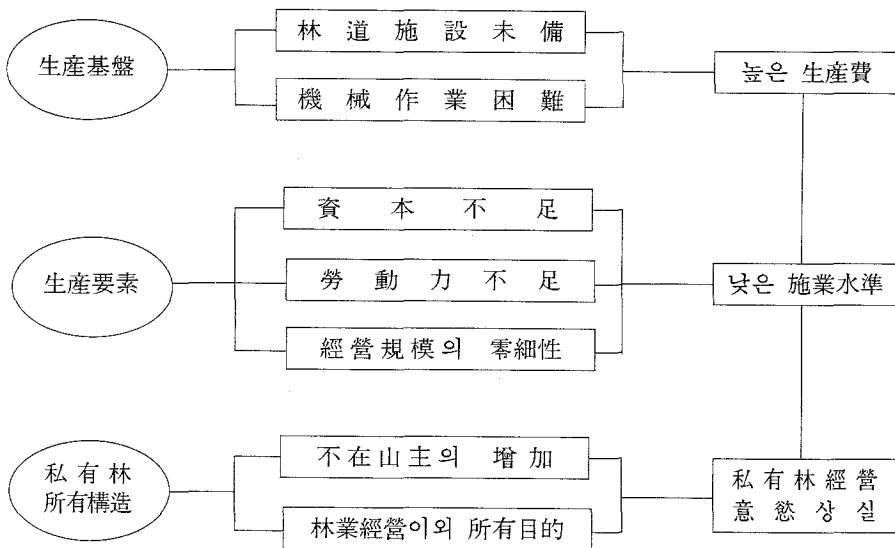
## 2. 사유림 경영상의 문제점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유림은 유령림 중심의 영급 분포 측면이나 낮은 ha당 임목측적 측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유림 산림 상태의 낙후성, 즉 빈약한 사유림 상태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유림 산림 상태의 낙후성은 임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 자본의 장기화임성, 외재 도입에 따른 목재가격 형성 구조상의 불리성, 그리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부재 등 여러가지 외적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유림 산림상태 낙후성의 근본적인 내적요인은 사유림 경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림 경영 부재는 “산림(산주)은 있으나 임업(임업인)은 없다”란 말에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은 사유림을 소유하는 산주와 산림녹화를 강조하는 정부는 있었지만, 사유림을 하나의 업(業)으로 경영하는 경영인이나 경영정책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그림 2-1 사유림 경영상의 문제점



하다.

우리 나라 사유림 경영의 부재요인을 생산기반, 생산요소, 사유림 소유구조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사유림의 경영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 생산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임업 생산기반은 임도율과 기계화율을 들 수 있다. 임도의 경우 산림사업을 적시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임도시설이 미비되어 있을 경우 사업지인 산림에의 접근도가 매우 낮아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 나라 산림 생산지인 산지의 여건이 부분적으로 除地가 많고 경사도가 급해 임업기계의 이용이 제한되어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열악한 임업 생산기반으로 인해 생산비가 높게 책정된다.

둘째, 생산요소의 측면에서 사유림 경영에 필요한 임지, 자본, 노동

의 3요소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임업경영은 장기적인 생산과정, 자본의 장기회임성 등 임업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방적인 대규모 경영이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2.4ha의 사유림 소유규모로서는 기본적으로 사유림 경영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유림의 실질적 경영이 가능한 적정규모 확보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이 미흡했던 점도 사실이다.

우리 나라 산림은 해방 후 황폐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조림·녹화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 목재의 생산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육림의 단계이다. 따라서 생산에 의한 수익이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의 관건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산림은 아직도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노동력의 경우 역시 부족하다.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부녀화되고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산림작업의 경우 그 위험성과 고통도가 농업노동에 비해 높으며, 또한 일정한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산림작업을 위한 노동력의 조달은 매우 힘들다. 조림 및 하목 등 단순작업의 경우에 비해 육림 및 벌채 등 복잡작업은 더욱 전문적인 임업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임업 노동력의 부족 현상은 산림작업에 따른 현실노임 상승과 직결되므로, 사유림 경영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사유림 소유구조의 측면에서 부채산주의 증가 현상 및 임업경영 이외의 산림 소유목적이 있다. 부채산주의 증가 현상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금투자 여력이 있는 산주의 증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채산주의 산림 소유목적이 근본적으로 임업경영에 있지 않고, 지가차익에 의한 재산가치 보전이나 투기목적 등으로 인해 사유림 경영이 방치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채산주의 임업경영 이외 산림 소유목적을 임업경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유림 위탁경영체제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유림 경영의 부채요인, 즉 사유림 경영의 문제점은 생산기반의 미흡, 생산요소의 결핍, 사유림 소유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파생된 높은 생산비, 낮은 시업구조, 사유림 경영의욕의 상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유림 면적의 대부분이 어린 나무로 구성된 육림기에 접어 들고 있어 임업을 담당할 손(手), 즉 사유림 경영의 주체와 임업 노동력을 포괄하는 임업인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측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적 산림소유 형태 및 사유림 경영규모의 영세성 등 임업경영 구조상의 제약요인이 있다. 임업노동 육성 측면의 경우, 임업 노동력 자체의 노령화, 부녀화 등 양적·질적 부족 현상과 작업의 계절성 등으로 인한 생산요소 및 자연적 제약요인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약요인으로서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부채 산주수의 증가, 임업경영 이외의 산림 소유목적, 열악한 임업노동 시장의 여건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우리 나라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을 1987년 내무부 지적 전산화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에서 보면 1987년 현재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산주수는 1,979천명이고, 총 3,436천 펼지에 4,887천ha의 면적으로 나타났다.

산주 1인당 평균 소유규모는 2.5ha, 한 펼지당 평균 산림면적은 1.4ha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農家林業 규모에 속하는 5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수는 1,775천명으로 전체 산주수의 대부분인 89.7%를 점하고 있으나, 산림면적으로는 1,675천ha로 전체 사유림 면적의 34.2%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업적 임업이 가능한 3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

수는 16천명으로 전체 산주수의 0.7%에 불과하지만, 산림면적은 1,377천ha로 전체 사유림 면적의 26.8%나 차하고 있다.

또한 벌기령을 50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법정림 상태에서 매년 2ha 이상의 주별 수확이 가능한 주업적 임업 대상규모 100ha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수는 2.5천명으로 0.1%에 불과하나, 면적은 651천ha로 13.3%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 소유규모가 크게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私有林 所有規模 分布

單位: 人, %, ha

所有規模	山主現況	面積現況	筆地現況	B/A	B/C
	山主數(A) (比率)	面積(B) (比率)	筆地數(C) (比率)		
總 計	1,979,056 (100.0)	4,886,637 (100.0)	3,436,171 (100.0)	2.5	1.4
1ha 未 滿	1,197,103 (60.5)	328,387 (6.7)	1,637,732 (47.7)	0.3	0.2
1 ~ 5	578,240 (29.2)	1,345,058 (27.5)	1,058,366 (30.8)	2.3	1.3
5 ~ 10	120,783 (6.1)	836,647 (17.1)	312,843 (9.1)	6.9	2.7
10 ~ 30	68,841 (3.5)	1,062,757 (21.7)	258,900 (7.5)	15.4	4.1
30 ~ 50	8,687 (0.4)	392,322 (6.7)	58,597 (1.7)	37.9	5.6
50 ~ 100	4,895 (0.2)	333,638 (6.8)	49,185 (1.4)	68.2	6.8
100ha 以上	2,507 (0.1)	650,828 (13.3)	60,548 (1.8)	259.6	0.7

資料：內務部，「地積電算化 資料」，1987。

#### 나. 不在山主數의 증가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수의 변화 추이를 <표 2-4>에서 살펴보면 1971년 1,761천명에서 1987년에는 1,979천명으로 연평균 0.7%씩 증가하였다.

특히 1971~87년 동안 사유림 소유규모별 산주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규모 산주의 증가율에 비해 1ha 미만과 100ha 이상, 즉 소규모 및 대규모 산주수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주목된다.

표 2-4 山林 所有規模別 山主數의 推移

단위: 千人, %

		所有 規 模 別 山 主 數							
		合 計	1ha 未満	1~ 5	5~ 10	10~ 30	30~ 50	50~ 100	100ha 以上
1971	所 在	1,486 (100.0)	839 (56.4)	478 (32.2)	109 (7.3)	49 (3.3)	6 (0.4)	3 (0.3)	1 (0.1)
	不 在	275 (100.0)	146 (53.3)	92 (33.5)	21 (7.6)	12 (4.3)	2 (0.7)	1 (0.4)	1 (0.2)
	計	1,761 (100.0)	985 (56.0)	570 (32.4)	130 (7.4)	61 (3.5)	8 (0.5)	4 (0.3)	2 (0.1)
1987	所 在	1,283 (100.0)	779 (60.0)	381 (29.7)	76 (5.9)	39 (3.0)	4 (0.4)	2 (0.2)	1 (0.1)
	不 在	696 (100.0)	418 (60.0)	197 (28.3)	45 (6.4)	28 (4.0)	4 (0.6)	3 (0.4)	2 (0.2)
	計	1,979 (100.0)	1,197 (60.5)	578 (29.2)	121 (6.1)	67 (3.4)	9 (0.4)	5 (0.3)	3 (0.1)
年平均 增減率 ('71-'87)	所 在 (%)	- 0.9	- 0.5	- 1.4	- 2.2	- 1.5	- 2.2	- 2.5	- 1.8
	不 在 (%)	+ 6.0	+ 6.8	+ 4.9	+ 4.9	+ 5.5	+ 5.1	+ 5.3	+ 5.2
	計 (%)	0.7	1.2	0.1	-0.5	0.6	0.3	0.6	1.7

자료: 山林廳, 林業統計요람, 1975, 1990.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70년대 이후 농산촌 거주 산주의 도시 유출, 山地의 부동산 투기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에 의하여 산림의 분할 매각과 집단 매입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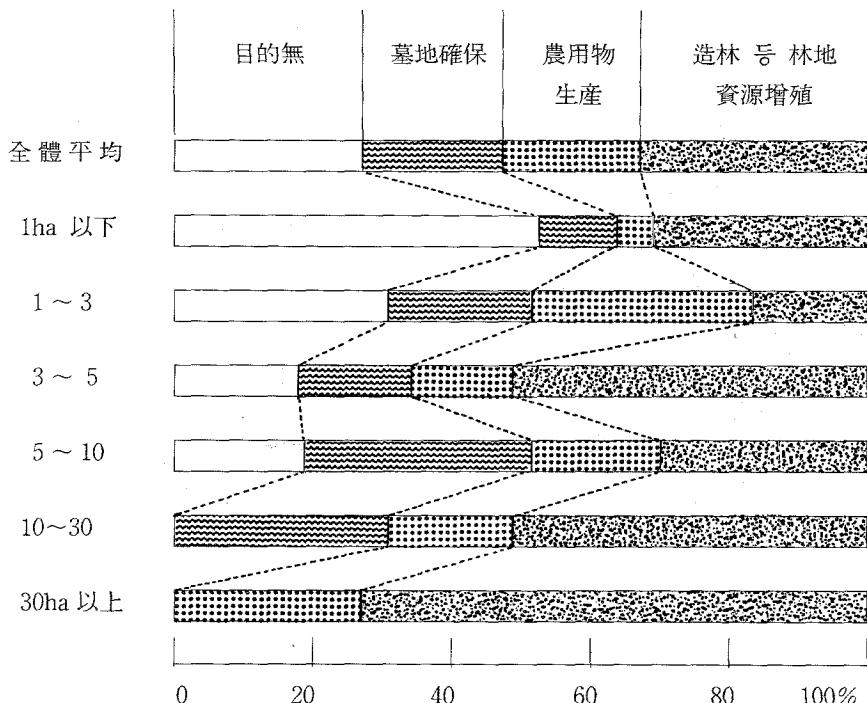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부채산주의 증가추세와 소유규모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적절한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다. 임업경영 이외의 산림 소유목적

사유림 경영 부채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유림 소유주인 산주의 임업경영 이외의 산림 소유목적에 있다. 임업연구원 자료에 따른 산주들의 산림 소유목적을 <그림 2-2>에서 살펴보면, 산림을 특별한 목적 없이 소유(27%)하거나, 묘지용(22%)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49%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영세 산주가 더욱 심하여 1ha 이하의 경우 65%, 10ha 이하의 경우 53%로 조사되었고, 대규모 산림 소유자의 경우는 농림산물 생산이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림경영에 무관심한 영세산주들이 소유산림을 대상으로 조림, 무육, 간벌 등의 임업경영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와 같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들의 경영의식 부재 내지 소극화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임업경영 이외의 산림 소유목적,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등에 기인하는 한편, 사유림 경영을 위한 임업노동 등의 경영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사유림 규모별 所有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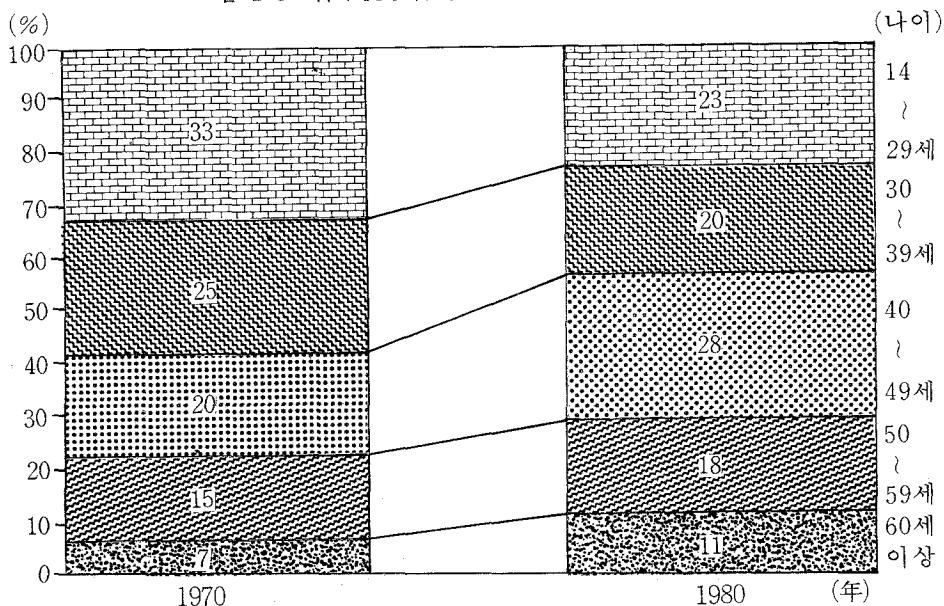
資料：林業研究院, 「試驗研究報告書」, 1984.

#### 라. 열악한 임업노동 시장

1960년대 이후 농산촌의 극심한 인구유출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농림업 취업자 수는 1965년 56% 수준에서 1989년 현재 20% 수준으로 격감했다. 이러한 농산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업노동뿐만 아니라 임업노동의 양적, 질적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이에 본항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EPB, 1974) 상의 ‘임업종사자’<sup>1)</sup>를 대상으로 하여 양적, 질적으로 열악한 임업노동 시장 여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2-3 林業從事者의 高齡化 推移, 197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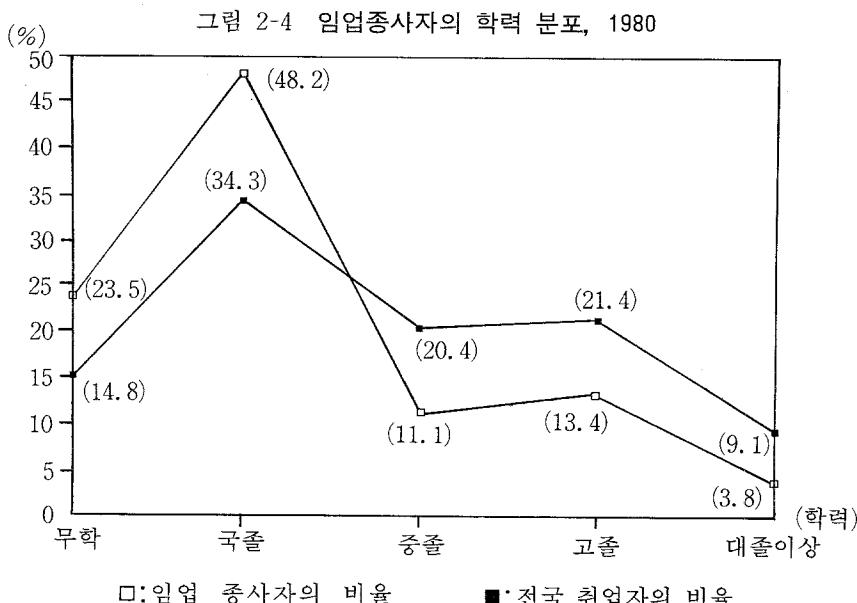


資料: 경제기획원, 「人口 및 住宅 센서스 報告」, 1970, 1980.

우리 나라 임업종사자의 고령화 추이를 경제기획원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을 통해 보듯이 1970년 이후 1980년까지 40代 이상의 임업종사자 비율은 전체의 42%에서 57%로 증가한 반면, 그간 14세 이상~39세 이하의 임업종사자는 58%에서 43%로 감소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세 이상~29세 이하의 임업종사

- 1) 임업노동자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경제기획원, 1975) 상 ‘임업’ 취업자와 “한국표준직업분류” (경제기획원, 1974) 상 ‘임업종사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제1장의 연구범위에서 지적한 임업노동자의 분석대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임업종사자’가 이용되었음을 밝혀 둔다. ‘임업종사자’의 구체적인 소분류에 관해서는 노동부의 「한국직업사전」, 1986을 참조할 것.



資料: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1980.

자는 1970년 전체의 33%에서 1980년 23%로 감소했으며, 30代 임업종사자의 경우는 1970년 25%에서 1980년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40代의 임업종사자는 1970년 20%에서 1980년 28%로, 50代 임업종사자는 1970년 15%에서 1980년 18%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60代 이상의 임업종사자가 1970년의 7%에서 1980년 11%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임업종사자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편, 1980년 현재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에 따른 임업종사자 총 7,478명의 학력 분포를 그래프화한 것이 <그림 2-4>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업종사자의 경우 국졸 이하의 학력 비율은 전체의 71.7%로, 전국 취업자의 국졸 이하 학력 분포 비율 49.1%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졸 이상의 학력 분포 비율은 전체의 28.3%로서 전국 취업자의 학력 분포 비율 50.9%보다 약 20% 낮게 나타나, 임업종사자의 낮은 교육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표 2-5 임업종사자 중 農林學校 卒業者 比率, 1980

單位: 人, %

	14세以上 林業從事 者 數(A)	農業系 高卒者數 (B)	農林系 專門大卒 者 數(C)	農林系 大卒者數 (D)	B + C + D = E
男	6,302(84.3)	233	24	69	326
女	1,176(15.7)	—	—	—	—
計	7,478(100.0)	233(3.1)	24(0.3)	69(0.9)	326(4.4)

資料: 경제기획원(1980).

특히,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림학교 출신자가 졸업 후 임업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전체 임업종사자 7,478명 중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농산촌 인구유출과 병행하여 진행된 임업노동의 양적인 부족 현상 및 임업종사자들의 고령화, 낮은 교육수준 등의 질적인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임업노동 시장은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

### 3. 임업인 육성의 필요성

앞 절에서 우리나라 사유림의 현황과 경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 첫째로 사유림 부존자원 측면에서 전체 사유림 면적의 대부분인 83.2%가 Ⅱ영급 이하의 유령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육림을 담당할 임업인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로 사유림 경영주체인 산주의 측면에서 보면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부채산주의 증가 추세, 임업경영 이외의 산림 소유목적 등의 내적 요인과 불리한 제반 외적 요인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영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유림 소유주로서의 산주를 임업경영인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협업화에 의한 규모확대 및 임업구조 개선정책에 의한 대규모 임업경영인 양성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증가하는 부채산주의 사유림 경영 유도를 위해서 전문 위탁경영인 육성을 통한 사유림영림서(가칭) 또는 위탁임업경영회사(가칭) 등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도 있다. 특히 이러한 임업경영인 및 위탁경영체의 육성은 전문 임업노동자 육성과 연계시켜 육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사유림 경영을 실제 담당할 손(手)으로서 임업노동 측면에서 보면, 농산촌의 절대적 인구유출 현상과 함께 양적·질적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특히 임업노동은 농업노동과 달리 작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작업의 위험도 및 고통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작업의 계절성에 의해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점 등의 임업노동 특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영림기능인으로 구성된 산림작업단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유림 경영의 문제점인 사유림 경영주체의 부채 현상과 임업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써 임업경영인과 임업노동자를 포함하는 임업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 3 장

##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육림단계에 있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사유림 경영주체 측면에서의 임업경영인과 실제 산림작업을 담당할 손(手)의 육성 측면에서 임업노동자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래 사유림 경영의 향방은 이들 임업인의 역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사유림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정책이나 산림작업을 담당하는 손(手)을 양성하기 위한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 임업인 육성정책은 크게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정책과 임업노동 육성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정책으로는 1974년에 시작된 협업경영사업,<sup>1)</sup> 1971년에 시작된 독립가 육

---

1)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이란 영세산주들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산림경영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유림 개발방안으로서 일종의 사유림 위탁경영 체 성격이다(이광원 외, 1989. 12). 이에 관한 연구는 1989년 수행된 바 있기 때문에 본연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성정책, 1989년 시작된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이 있다. 임업노동 육성정책으로서는 1974년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협업체 작업단 육성사업,<sup>2)</sup> 1990년에 시작된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과 산림개발사업단 육성정책<sup>3)</sup>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 파악을 위해 독립가 육성정책, 임업후계자 육성정책, 그리고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가. 독립가 육성정책의 현황

#### [1] 독립가 육성의 목적

산림청 ‘독립가 육성요강(산림청 훈령 제337호)’ 제1조에 의하면 독립가 육성의 목적은 전전하고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여 사유림 경영의 선도자로 육성하는 데 있다.

#### [2] 독립가의 구분 및 인정 요건

1990년 현재 독립가는 크게 개인 독립가, 법인 독립가, 그리고 협업체 독립가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개인 독립가는 다시 산림소유 규모 및 조림실적에 따라서 모범 독립가, 우수 독립가, 자영 독립가로 세분된다. 이들 독립가 각 유형에 대한 인정요건 및 인정권자를 나타낸 것이 <표 3-1>이다.

- 2) 1990년 현재 협업체 작업단은 총 27개로서 282명의 작업단원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인 현황은 KREI 연구보고서 201, 1989. 12, pp. 28~30 참조).
- 3) 1990년 현재 경기, 강원, 경북의 3개 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에 산림개발 사업단이 조직되어 있으나, 그 기능이 임도시설, 휴양림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본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민유림 작업단은 조림, 육림, 벌채 등의 산림작업을 전담 실행하는 임업노동자 조직으로서 1990년 현재 20개 작업단에 300명의 작업단원을 가지고 있다.

표 3-1 독립가 유형별 인정요건

독립가 구분		인정요건	인정권자
개 우수	모 범	소유산림 3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 이상	산림청장
	자 영	소유산림 1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input type="checkbox"/> 용재림 50ha 이상 <input type="checkbox"/> 유실수 20ha 이상	도지사
		소유산림 5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input type="checkbox"/> 용재림 20ha 이상 <input type="checkbox"/> 유실수 10ha 이상	시장, 군수
법 인		소유산림 5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300ha 이상	산림청장
협 업		협업산림 5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input type="checkbox"/> 용재림 20ha 이상 <input type="checkbox"/> 유실수 10ha 이상	도지사

자료: 산림청, 1990.

### ③ 독립가의 추천 및 인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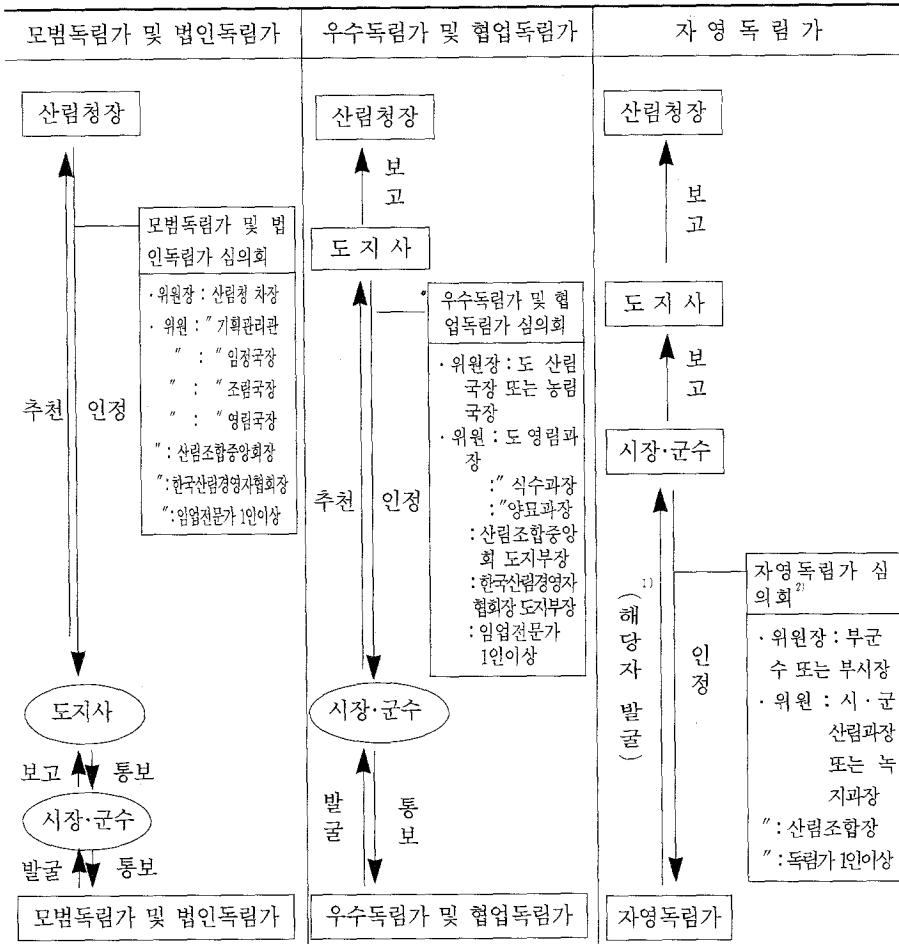
독립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독립가 인정권자가 인정하고자 할 때의 추천 및 인정절차를 나타낸 것이 <그림 3-1>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첫째, 모범 및 법인 돋립가의 경우 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추천하게 되고, 산림청장은 모범 돋립가 및 법인 돋립가 심의회를 거쳐 심사관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돋립가로 인정한다.

둘째, 우수 돋립가 및 협업 돋립가의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는 우수 돋립가 및 협업 돋립가 심의회를 거쳐 돋립가로 인정하게 된다. 단, 이 때 도지사는 우수 돋립가 및 협업 돋립가 인정 결과와 돋립가 실태조사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자영 돋립가의 경우는 시·군 자체에서 해당자를 발굴하여 시

그림 3-1 독립가의 추천 및 인정 절차



- 단, 산림조합장 및 한국 산림경영자 협회장은 조합원 또는 협회 회원중에서 '독립가 육성 요강'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음.
- 독립가 심사는 심사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장·군수가 자영 돋립가 심의회를 거친 다음 자영 돋립가로 인정하게 된다. 인정 후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은 우수 돋립가 및 협업 돋립가의 경우와 같다.

#### ④ 독립가의 현황

##### 1) 연도별 독립가 현황

독립가 육성정책은 1972년 최초로 201명의 독립가가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연도별 독립가의 변동 추이를 <표 3-2>를 통해 살펴보면, 1980년 전체 독립가 숫자는 573명에서 1989년 현재 471명으로 감소하여 1980~89년까지 연평균 2.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가 유형별로 볼 때 모범 독립가의 연평균 감소율( $\triangle 1.1\%$ )에 비해 우수 독립가( $\triangle 2.5\%$ )나 자영 독립가( $\triangle 2.3\%$ )의 감소율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 2) 도별 독립가 현황

1989년 현재 전체 독립가 471명의 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3-3>, 경남이 97명(20.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81명(17.2%), 강원도 63명(13.4%), 전북 62명(13.2%), 경북 57명(12.1%), 충북 51명(10.8%), 경기도와 충남이 각각 29명(6.2%), 제주도가 2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가 유형별로 볼 때 모범 독립가의 경우 강원도가 17명(24.6%)

표 3-2 연도별 독립가 현황

단위: 명, %

연 도	계	모 범	법 인	우 수	자 영
1980	573	76	13	227	257
1985	514	71	12	201	230
1986	484	71	12	192	209
1987	492	72	13	191	216
1988	477	70	12	183	212
1989	471	69	12	181	209
연평균 증감률	$\triangle 2.2$	$\triangle 1.1$	-	$\triangle 2.5$	$\triangle 2.3$

자료: 산림청 기술지도과, 1990.

으로 가장 많고, 우수 독립가의 경우 전남이 33명(18.2%), 자영 독립 가의 경우 경남이 67명(32.1%)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연령별 독립가 현황

연령별 독립가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3-4〉, 전체 응답자 459명의 과반수인 238명(51.9%)이 60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다

표 3-3 도별 독립가 현황

단위: 명

	계	모 범	법 인	우 수	자 영
경 기	29	8	-	13	8
강 원	63	17	-	30	16
충 북	51	4	2	24	21
충 남	29	2	-	20	5
전 북	62	7	3	25	27
전 남	81	16	1	33	31
경 북	57	8	4	13	32
경 남	97	7	2	21	67
제 주	2	-	-	2	-
합 계	471	69	12	181	209

자료: 산림청 기술지도과, 1990.

표 3-4 연령별 독립가 현황

단위: 인, %

	계	모 범	우 수	자 영
20 ~ 39세	20 (4.3)	1	10	9
40 ~ 59	201 (43.8)	30	78	93
60세 이상	238 (51.9)	38	93	107
합 계	459 (100.0)	69	181	209

자료: 산림청 기술지도과, 1990.

음으로 40~59세가 전체 독립가의 43.8%인 201명으로 나타났으며, 20~39세의 청장년층은 전체 독립가의 4.3%인 20명에 불과하였다.

#### 4) 임야 소유규모별 독립가 현황

1989년 현재 전체 독립가 471명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임야면적은 137,004ha로써 1인당 평균 195.8ha의 대규모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임야 소유규모별 독립가 분포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표에서 보면 전체 독립가 459명의 47.0%인 216명이 100~300ha의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100ha가 116명(25.3%), 300ha 이상이 87명(19.0%), 그리고 5~50ha의 임야를 소유한 독립가가 40명(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임야 소유규모별 독립가 현황

단위: 인, %

소유 규모	독립가			
	합계	모범	우수	자영
5 ~ 50ha	40 (8.7)	-	4	36
50 ~ 100	116 (25.3)	-	17	99
100 ~ 300	216 (47.0)	14	138	64
300ha 以上	87 (19.0)	55	22	10
합계	459 (100.0)	69	181	209

자료: 산림청 기술지도과, 1990.

### ⑤ 독립가에 대한 지원사항

독립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독립가로 지정되었을 경우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군수는 독립가의 산림사업 실행시 아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① 양묘, 조림, 육림, 보호, 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우선적 용자 또는 일부 보조
- ② 종묘, 농약, 비료, 기계 등 기자재의 우선적 알선 및 지원
- ③ 독립가 영림계획 작성 인가시 사유림 영림계획 운영요강 제17조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상 사업계획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
- ④ 산림법 시행규칙 제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사업신고만으로 실행
- ⑤ 산림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일반 개별지역 대집행 자격 부여
- ⑥ 영림계획 집행에 있어 사유림 영림계획 운영요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 배정
- ⑦ 산림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독립가로서 특수개발 지역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우선 지정
- ⑧ 국유림 분수권 설정시 우선권 부여

### 나.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의 현황

#### ① 임업후계자 육성의 목적

산림청 '임업후계자 육성지침'에 의하면 임업후계자 육성의 목적은 농산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내 산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 ②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1990년 현재 임업후계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고 40세 미만인 소유산림<sup>4)</sup> 소재지 관내 거주자로서, 산림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독립가의 자녀로서 임업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자
- ② 1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③ 고등학교 이상 교육기관에서 임업을 전공한 자로서 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한 기선정된 농어민후계자 중에서도 위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임업후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임업후계자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은 <표 3-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배점 기준에 따라 통상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게 된다.

## ③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고자 할 때의 선정절차를 나타낸 것이 <그림 3-2>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군수(산림조합장 및 농업계 고등학교장의 협조)는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산림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임업후계자 심의회”에 회부한다. 다만, 후계자에 대한 신청과 발굴은 거주지 해당 군으로 한다.

둘째로, 임업후계자 심의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임업후계자 선발시 선발기준과 합당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점한다.

셋째로, 군수는 임업후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 배점이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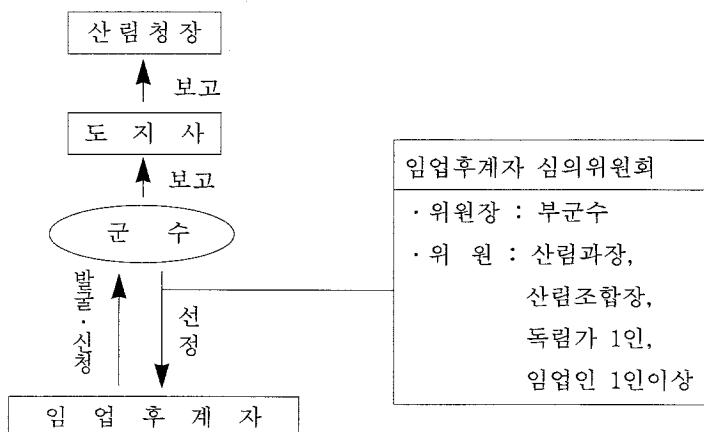
4) 여기서 “소유산림”이라 함은 당해 거주지 도관내에 소유한 산림(직계존속 소유산림 포함)이거나 국가로부터 대부 또는 분수계약한 대부림이나 분수림도 포함하며, “소유산림 소재지 관내”라 함은 산림이 소재한 도관내(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제외)를 말한다.

표 3-6 임업후계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표

구 분	세 부 사 항	배 점 *
① 정착의욕 및 지역사회 기여도 (40점)	i ) 정착의욕 (20점)	상 : 20점 중 : 10점 하 : 5점
	ii )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유 : 10점 무 : 0점
	iii) 사업계획 타당성 (10점)	적정: 10점 부적: 0점
② 산림경영 능력 (60점)	i ) 산림경영 경력 (30점)	5년 이상: 30점 2 ~ 5년: 20점 2년 미만: 10점
	ii ) 농림업계 종업자 (30점)	농림업계: 30점 비농업계: 20점
합 계	100점	100점

\* 단, 현재 농어민후계자 및 영림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10점 가산.

그림 3-2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 ④ 임업후계자의 현황

##### 1) 도별, 연령별 임업후계자 현황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은 1989년 시작되어 현재 89명의 임업후계자가 선정되어 있다. 임업후계자들의 도별 분포 현황을 <표 3-7>에서 살펴보면, 강원도와 충남이 각각 13명 (1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과 충북이 각각 12명 (13.5%), 경남과 전남이 각각 11명 (12.4%), 전북이 10명 (11.2%), 경기도 6명 (6.7%), 그리고 제주도 1명 (1.1%)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임업후계자 89명 중 55명 (62%)이 30대이고, 34명 (38%)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임야 소유규모별 임업후계자 현황

1989년 현재 전체 89명의 임업후계자가 소유한 총 임야면적은 7,225ha로써 1인당 평균 83.1ha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임야 소유규모별 임업후계자 분포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표에서 보면 20~50ha의 임야를 소유한 임업후계자가 35명으로 전체의 39%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1~100ha를 소유한 임업후계자가 19명 (22%), 10~20ha를 소유한 임업후계자가 16명 (18%), 그리고 100ha 이상을 소유한 임업후계자가 19명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도별, 연령별 임업후계자 현황

단위: 명, %

	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 ~ 30세	34 (38.0)	2	6	3	4	4	5	4	6	-
31 ~ 40세	55 (62.0)	4	7	9	9	6	6	8	5	1
합 계	89 (100.0)	6 (6.7)	13 (14.6)	12 (13.5)	13 (14.6)	10 (11.2)	11 (12.4)	12 (13.5)	11 (12.4)	1 (1.1)

자료: 산림청 기술지도과, 1990.

표 3-8 임야 소유규모별 임업후계자 현황

단위: 명, %

	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 ~ 20ha	16(18.0)	-	4	2	3	5	1	-	1	-
20 ~ 50	35(39.0)	2	-	5	6	4	4	7	6	1
51 ~ 100	19(22.0)	-	5	3	4	1	2	3	1	-
101 ~ 200	9(10.0)	2	-	1	-	-	2	2	2	-
200ha이상	10(11.0)	2	4	1	-	-	2	-	1	-
합 계	89(100.0)	6	13	12	13	10	11	12	11	1

자료: 산림청 기술지도과, 1990.

표 3-9 임업후계자에 대한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조건

융자 조건		융자한도	융자 지원 사업 내용
이자율	융자기간		
3%/년	10년(3년거치 7년상환)	1인당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목 생산사업 : 별채 및 반출</li> <li>- 임업기계화사업 : 임업용 기구장비 구입 및 운영</li> <li>- 환경 임업사업 : 휴양림, 수렵장, 수목원 등</li> <li>- 부산물생산사업 : 각종 부산물 생산·운반·가공 등</li> <li>- 목재 이용사업 : 목공예 및 임산물 가공 등 소득사업</li> </ul>

#### ⑤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사항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업후계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시장·군수는 산림사업 실행시 아래사항에 대해 타인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첫째로,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둘째로,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산림개발기금의 융자 및 지원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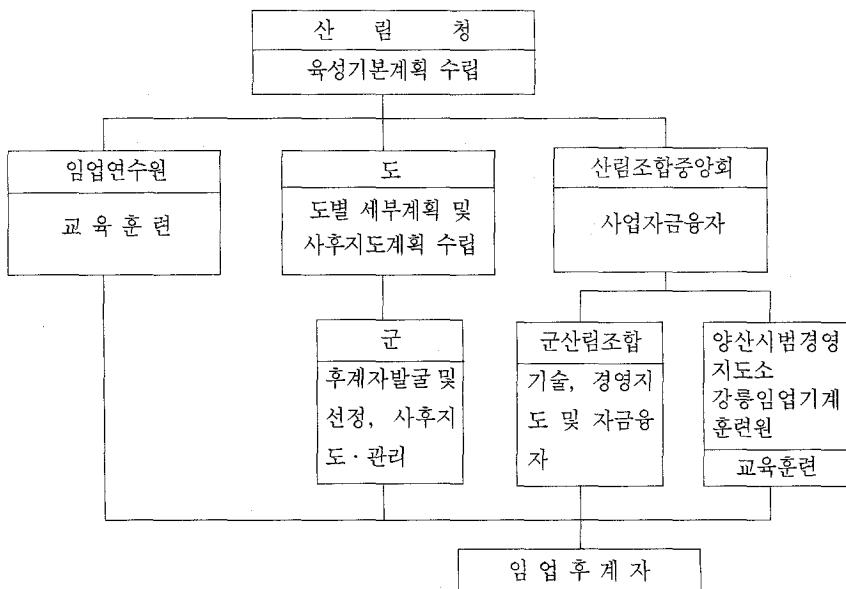
한다. 1990년 현재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은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의 이자율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1인당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단, 후계자에 대한 자금융자 지원은 1인 1건 1회에 한하나, 현금상환이 끝난 경우에는 반복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임목 생산사업, 임업기계화사업, 부산물 생산사업, 목재이용사업 등이 포함된다.

셋째로, 임업후계자가 실시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자율경영이 되도록 지원한다.

#### ⑥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3-3>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인 산림청, 도, 군은 기본계획 수립 및 후계자 선정, 사후지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군산림조합은 기술지도 및 자금융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업후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그림 3-3 임업후계자 사업의 추진체계



임업연수원 및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그리고 양산 시범 협업경영지도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 다.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의 현황

##### ① 민유림 작업단 육성의 목적

산림청 '민유림 작업단 관리운용지침' (안)에 의해 민유림 작업단 육성의 목적을 살펴보면,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여 민유림 작업단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산주자력 및 정부보조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전문적 산림작업 실행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민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자원화 촉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 ② 민유림 작업단의 기능

민유림 작업단은 첫째로, 조림, 육림, 간벌, 주별, 병충해 방제사업 등 산주 위탁 산림사업(정부보조사업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며, 둘째로, 훼손지 복구, 조경, 양묘사업 등 기타 산림조합 특수사업을 실행한다. 이들 민유림 작업단이 실행하는 산림사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 ① 양묘, 조림, 육림, 벌채, 보호 등의 산림작업
- ② 임도,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사방 등 산림토목의 시공
- ③ 가로수 식재, 경관수 식재 등 경관조성사업의 시공
- ④ 기타 조합목적사업 및 부대사업

##### ③ 민유림 작업단의 자격기준

1990년 현재 민유림 작업단 작업단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① 관내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산림계원, 특수조합원, 기능인 자격 보유자 우선)

- ② 군필 또는 면제자
- ③ 작업단에서 5년 이상 종사 가능한 자
- ④ 각종 산림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④ 민유림 작업단의 조직

1990년에 최초로 시작된 민유림 작업단은 현재 전국 8개도, 20개 군 산림조합에 20개의 작업단이 조직되어 있다(표 3-1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 민유림 작업단의 인원은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체 20개 민유림 작업단의 경우 300명의 작업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민유림 작업단은 각 군당 1개씩 조직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유림 작업단의 선정기준은 임업진흥촉진지역, 임야면적 및 산림작업 물량, 협업경영 확대지역, 산림조합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다.

#### ⑤ 민유림 작업단의 현황

##### 1) 연령별 민유림 작업단 현황

연령별 민유림 작업단원들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표 3-11), 전체

표 3-10 민유림 작업단의 조직

단위: 個

도(道)	作業團數	組合名	備考
京畿	2	加平, 廣州	* 1團 15名 基準組織
江原	3	洪川, 三陟, 麟蹄	選定基準 : 林業振興促進地域,
忠北	2	永同, 槐山	面積, 事業量, 道別配分, 協業
忠南	2	錦山, 保寧	經營 擴大地域, 組合運營能力
全北	2	長水, 完州	등을勘案選定
全南	3	寶成, 和順, 長興	
慶北	4	英陽, 聞慶, 青松, 安東	
慶南	2	居昌, 固城	
合計	20		

작업단원수 300명의 32%인 95명이 40대이다. 다음으로 30대가 전체의 27%인 81명, 50대 이상이 전체의 24%인 72명, 그리고 20대가 전체 작업단원수의 17%인 5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40대 이상이 과반수인 56%를 점하고 있어 민유림 작업단원들의 노령화를 반영하고 있다.

## 2) 학력별 민유림 작업단 현황

학력별 민유림 작업단원들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표 3-12〉, 전체 작업단원수 300명의 45%인 134명이 국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졸이 전체의 35%인 105명, 고졸 이상이 전체 작업단원수의 20%인 6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졸 이하 학력이 거의 대다수인 80%를 점하고 있어 민유림 작업단원들의 낮은 교육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표 3-11 연령별 민유림 작업단 현황

단위: 인, %

	20~30세	31~40세	41~50세	51세이상	합 계
작업단원수	52	81	95	72	300
비 율	(17.0)	(27.0)	(32.0)	(24.0)	(100.0)

자료: 산림청 기술지도과, 1990.

표 3-12 학력별 민유림 작업단 현황

단위: 인, %

	국 졸 이 하	중 졸 이 하	고 졸 이 상	합 계
작업단원수	134	105	61	300
비 율	(45.0)	(35.0)	(20.0)	(100.0)

자료: 산림청 기술지도과, 1990.

## 2. 임업인 육성정책의 문제점

앞 절에서 독립가 육성정책, 임업후계자 육성정책, 그리고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의 현황에 대해 각각 검토해 본바, 이 절에서는 이들 임업인 육성정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독립가 육성정책의 문제점

독립가 육성정책의 경우 1972년 201명의 독립가가 선정된 이래, 1978년 583명으로 최정점에 달했다가 1982년 572명, 1989년 현재 471명으로 매년 2% 이상씩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독립가를 사유림의 경영주체로 육성할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행 독립가 육성제도는 산림 보유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산주들이 형식적으로 조직되어 있을 뿐, 이를 산주들의 임업경영 의욕을 제고시킬 만큼의 유인책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 나.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의 문제점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의 경우, 농산촌 정착 의사가 강한 농림가 육성이 라는 차원에서 임업후계자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

〈표 3-13〉은 현행 임업후계자 육성제도의 현황을 농어민후계자 육성제도, 그리고 일본의 임업후계자 육성제도와 비교한 내용이다. 표에서 보면 1989년 말 현재 우리 나라 임업후계자 전체수는 89명으로서, 일본의 임업후계자 51천명, 그리고 우리나라 농어민후계자 총인원 45천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며, 제반 용자조건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1990년 현재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상 실질적인 지원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산림개발기금 용자제도로서 3%의 이자율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용자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개발기금의 1인당 용자한도액이나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용자조건들은 임업자체의

표 3-13 韓國의 林業後繼者와 農漁民後繼者, 日本의 林業後繼者 育成制度 比較

	林業後繼者	農漁民後繼者	日本 林業後繼者
○ 資格要件			
· 年齡	· 40歲 未滿	· 35歲 以下	· 滿 35歲 未滿(一部 懸은 上限年齡 制限 없음)
· 土地所有	· 林野 10ha以上 (但, 林科專攻者 5ha)	· 制限 없음	· 林野 10ha以上 (年間 150日 以上 自家農林業從事者)
· 居住地	· 市, 郡 地域	· 邑, 面 地域	· 市町村地域
○ 選定節次	· 評點制 (定着意慾, 山林經營經歷, 專攻與否 등勘案)에 의해 審議會에서 審議	· 評點制 (定着意慾, 營農經歷, 訓練, 專攻 4-H活動 등勘案)에 의해 協議會에서 審議	· 市町村推進議會 (15名內外 構成)에서 決定
○ 認定權者	· 市長, 郡守	· 市長, 郡守 ('91년부터 農漁村 指導所長)	· 市町村長(核心 林業後繼者인 青年林業士는 知事が任命)
○ 融資條件			
· 資金名	· 山林開發基金	· 農漁村發展基金, 農地購入資金	· 林業後繼者 養成資金
· 用 途	· 林木生產, 副產物生產, 機械裝備 購入, 環境林業 等	· 農地購入 및 農事施設物 設置	· 研修教育, 複合經營開始(林地取得包含)
· 限度額(人當)	· 1,000萬원	· 1,000~1,100萬원	· 教育資金 20萬円 (韓貨 약 100萬원) 經營資金 260萬円 (韓貨 약 1,300萬원)
· 期 間	· 3년 据置 7년 償還	· 2년 居置 18년 償還 (但, 特作分野 : 3/4, 水產分野 : 3/7)	· 1년 居置 4년 償還(但, 教育資金 3年 以內)
· 利子率	· 年 3%	· 年 5%	· 無利子
· 融資方法	· 信用貸付	· 信用貸付	· 信用貸付
○ 育成人員	· 100名 ('89末 現在 89名)	· 2,000名 ('89末 現在 45,444名)	· 核心後繼者 2千名 ('89末 現在 51千名)

특수성을 감안한 임업후계자들의 농산촌정착을 유도할 만큼 충분치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지원조건의 불리성을 <표 3-14>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농지구입 자금의 융자기간이

표 3-14 林業後繼者와 農漁民後繼者의 支援條件 比較

單位: %, 年, 百萬원

	支援資金	支 援 事 業		融 資 條 件		1人當 限度額	事 業 內 容
		種 目	事 業 作 目	利 率	融資期間		
農漁民 後繼者	農地購入 資 金	農業	水 稻 作	5	20 (2, 18)	11	農地購入
			複合營農	5	20 (2, 18)	11	農地購入
			園 藝	5	20 (2, 18)	11	農地購入
			果樹	—	20 (2, 18)	11	農地購入
		團體 特作	—	5	20 (2, 18)	11	農地購入
			人 豸	5	7 (4, 3)	10	農地購入, 施設物 設置
			기 타	5	7 (3, 4)	10	農地購入, 施設物 設置
		畜產	酪 農	5	7 (3, 4)	10	家畜入殖, 畜舍新築, 草地造成 等
			기 타	5	7 (3, 4)	10	
		水產	—	5	10 (3, 7)	10	漁船購入, 漁船改補修, 漁船建造, 稚苗購入 等
林 業 後繼者	山林開發 基 金	—	—	3	10 (3, 7)	10	林木生產, 副產物生產, 機械購入, 環境林業 等
			—	—	—	—	
			—	—	—	—	
一 般 山 林 事 業	山林開發 基 金	造林	長期樹 기타	3 3	35 (15, 20) 15 (10, 5)	50 50	長期樹 造林 速成樹, 有實 樹, 特用樹
		間伐	—	3	3 (2, 1)	50	當該年度 間伐 事業費
		機械 購入	—	3	3 (2, 1)	10	林業機械裝備 購入

20년(2년 거치, 18년 분할상환)인 점, 그리고 일반 산림사업 중 장기수 조림의 산림개발기금 융자기간이 35년(1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인 점 등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후의 사후 관리대책이나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 다.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의 문제점

현행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의 문제점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민유림 작업단 소속 단원들의 연간 적정 임업노동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연간 임업노동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산림작업단원들의 임업노동 노임을 높이거나 또는 작업단원들이 연중 작업 가능한 작업물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유림 작업단이 실시하는 산림작업의 정부노임 단가는 하루 8,600원으로써 현실노임 15,000~20,000원 수준의 43%~5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적으로 농한기인 12월~2월 사이에 작업 가능한 산림작업 물량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로, 1990년 처음 민유림 작업단이 시작되어 8개도 20개 작업단, 300명의 작업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작업단 조직이 균당 1개 작업단, 1개 작업단당 15명의 단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림자원의 여건 및 작업물량 등이 각기 다른 지역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작업단원들의 성격상 전업노동이 가능한 전업작업단, 또는 겸업노동이 가능한 겸업작업단 등 작업단 성격에 적합한 지원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현행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어 각종 안전사고대책,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노무관리대책 등의 임업노동조건 개선대책이나 사회보장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 4 장

###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

#### 1.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

##### 가. 설문조사의 개요

전장에서 현행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러면 실제 이들 정책의 수용자인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영의식 및 경영실태는 어떠한 것일까? 또한 이들 정책의 실제 담당자인 산림과 공무원이나 산림조합 지도원의 경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본장에서는 정책수용자들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와 정책담당자인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산조지도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는 향후 임업인 육성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표 4-1 林業經營人 設問調查의 概要

單位:人, %

調査對象	調査人員	設問調査內容	
		大分類	小分類
林業經營人	篤林家	106 (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林業經營人의 一般概況</li> <li>· 林業經營人의 山林經營意識</li> <li>· 林業經營人의 山林經營實態</li> <li>· 篤林家 및 林業後繼者 育成政策</li> </ul>
	林業後繼者	54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林野所有動機(부업 I-6)</li> <li>· 林野購入目的(부업 I-7)</li> <li>· 林野所有規模擴大意向(부업 I-8)</li> <li>· 所有規模擴大後 用途(부업 I-9)</li> <li>· 林野所有規模縮小理由(부업 I-10)</li> <li>· 林業經營委託意向(부업 I-11)</li> <li>· 林業經營의 隘路事項(부업 I-12)</li> <li>· 林業勞動力의 問題點(부업 I-13)</li> <li>· 부족한 技術分野(부업 I-14)</li> <li>· 시급한 자금지원 분야(부업 I-15)</li> <li>· 산림작업별 시행률(부업 I-16)</li> <li>· 임업기계 보유율(부업 I-17)</li> </ul>
	其他山主	7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指定動機(부업 I-18)</li> <li>· 實質的인 支援內容</li> <li>· 育成의 隘路點</li> <li>· 向後 改善事項</li> </ul>
	小計	167 (100.0)	
林業經營人育成政策關聯業務擔當者	郡廳山林課	15 (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篤林家 業務擔當者</li> </ul>
	郡山林組合	36 (7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林業後繼者 業務擔當者</li> </ul>
	小計	51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篤林家의 減少理由(부업 I-19)</li> <li>· 政策效果에 대한 認識(부업 I-20)</li> <li>· 非效率적인 政策의 理由(부업 I-21)</li> <li>· 實質的인 篤林家 支援內容(부업 I-22)</li> <li>· 向後 改善事項</li> <li>· 林業後繼者 育成政策의 必要性</li> <li>· 林業後繼者 育成의 隘路點</li> <li>· 實質的인 支援內容(부업 I-23)</li> <li>· 適正 融資規模 및 融資條件</li> <li>· 融資金 貸出方案</li> <li>· 向後 改善事項</li> </ul>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크게 ‘임업경영인 설문조사표’(부록 2 참조)와 ‘임업경영인 관련업무 담당자 설문조사표’(부록 4 참조)의 두 가지로 시행되었다. 임업경영인은 독립가 106명, 임업후계자 54명, 기타 산주 7명 등 총 167명이 조사대상자이다. 관련업무 담당자는 군청 산림과 공무원이 15명, 군 산림조합 지도원이 36명으로 총 51명이 조사대상자이다.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 및 항목은 〈표 4-1〉과 같다. 표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임업경영인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임업경영인의 일반 개황〈부표 I-1 ~ I-5〉, 산림경영 의식 〈부표 I-6 ~ I-11〉, 산림경영 실태〈부표 I-12 ~ I-17〉, 그리고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 실태〈부표 I-18 ~ I-23〉의 4가지로 대분류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4가지 대분류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임업경영인의 일반 개황

현행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수용자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구성, 총부양가족수, 경지 및 임야 소유 현황 등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임업경영인의 연령 구성

임업경영인의 연령은 전체 응답자의 32.7%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노령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부표 I-1). 특히 독립가의 경우 50세 이상이 전체의 84.6%로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 40세 미만이 전체의 83.3%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독립가의 경우 자신의 산림을 계승시킬 수 있는 후계자 육성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래 사유림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임업후계자 육성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임업경영인의 학력 구성

임업경영인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4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졸 이하가 37.2%, 중졸 이하가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I - 2>. 독립가의 경우 대졸 이상이 전체의 49.5%로서 고학력 수준을 반영하며, 임업후계자의 경우 고졸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③ 임업경영인의 직업 구성

임업경영인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임업이 전체 응답자의 3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이 26.5%, 상업이 12.1%, 회사원과 자유업이 각각 7.2%, 기타 공업의 순으로 응답했다<부표 I - 3>. 독립가의 경우에 임업이 3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이 16.2%, 상업이 13.3%, 변호사 등의 자유업이 10.5%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농업이 46.3%, 임업이 37.0%로 전체의 83.3%가 농림업에 편중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 ④ 임업경영인의 총부양가족수

임업경영인의 총부양가족수는 전체 응답자의 52.1%가 5명 이상이고, 33.5%가 3~4명의 부양가족을 가진 것으로 응답했다<부표 I - 4>. 임업후계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도 5.6% 있으며, 전체적으로 독립가보다 부양가족수가 약간 적게 나타나고 있다.

## ⑤ 임업경영인의 경지 및 임야 소유 현황

임업경영인의 1인당 평균 임야 소유면적은 197ha이고, 이 중 인공조림면적은 106.2ha로서 인공조림률이 53.9%인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I - 5>. 이와 같이 1인당 평균 임야 소유면적이 넓게 나타난 이유는 임업후계자의 경우 평균 소유규모가 70.6ha인데 비해, 독립가의 경우

평균 소유규모가 267.5ha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임업후계자의 1인당 평균 임야 소유규모는 독립가의 26.4%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지 소유면적의 경우도 임업후계자가 독립가보다 낮게 나타나, 논의 경우 78.2%, 밭의 경우 4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임업경영인의 산림경영 의식

##### ① 임업경영인의 임야 소유 동기

임업경영인의 임야 소유 동기는 본인의 직접 구입이 전체 응답자의 4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속이 24.3%, 일부 상속 및 일부 구입이 21.8%, 기타 분수대부림의 순으로 응답했다(부표 I - 6).

독립가의 경우는 구입이 전체의 62.3%로 매우 높고, 상속이 14.2%로 낮은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 상속이 43.2%로 가장 높고, 일부 상속 및 일부 구입이 32.1%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임업후계자에 독립가의 자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유산으로 상속된 임야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임업경영인의 임야 구입 목적

임업경영인에 대한 임야 구입 목적의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6.3%가 임업경영이 목적이라고 응답했다(부표 I - 7). 초지 및 개간 등의 농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은 4.8%, 분묘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은 2.7%에 불과하였다. 독립가의 경우 임업경영 목적이 94.0%로 특히 높은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임업경영 목적(67.5%)뿐만 아니라 농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1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와 같이 임야 구입 목적이 임업경영이라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대상자들인 임업경영인의 임야 소유면적이 넓고 임업경영 의욕이 강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③ 임업경영인의 임야 소유규모 확대 의향

향후 임업경영인의 임야 소유규모 확대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1%가 확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부표 I - 8). 현재의 규모를 유지(43.6%)하거나 축소 의향(24.3%)이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7.9%로 높게 나타났다.

독립가의 경우 현재 규모를 유지(53.8%)하거나 축소 의향(32.1%)이 있다라는 응답이 85.9%로 높은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확대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71.2%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독립가의 평균 임야 소유규모가 임업후계자의 3배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업후계자의 적극적인 임업경영 의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④ 임야 소유규모 확대 후의 용도

전항에서 임야 소유규모 확대 의향이 있는 임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가를 조사하였다. 목재생산을 위한 임업경영 용지가 전체 응답자의 4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표고 및 약초 등의 임산물 재배용지가 22.0%, 초지 및 개간을 위한 농용지가 15.4%, 기타 재산증식용의 순으로 응답했다(부표 I - 9). 이러한 응답비율은 독립가나 임업후계자兩者 모두 비슷하지만, 임업후계자의 경우 표고 및 약초 등의 임산물 재배용지가 30.0%로 나타나 임산부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임야 소유규모 축소 이유

향후 임야 소유규모 축소 의향이 있는 임업경영인에 대해 축소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74.4%가 임업경영의 낮은 수익성으로 향후 장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임업노동력 부족 및 임업경영을 담당할 후계자가 없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11.6%, 임야 매각 자금을 놓지 매입, 가계비 등의 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부표 I-10〉.

이와 같이 임업경영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장래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은 독립가나 임업후계자의 경우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작금 사유림 경영의 어려운 현실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

#### ⑥ 임업경영인의 경영 위탁 의향

향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조림, 육림, 벌채작업을 포함한 일체의 산림작업을 대행해주는 위탁 임업경영단체(가칭)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I-11〉이다. 전체 응답자의 46.3%가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38.1%로 비교적 높으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탁 임업경영의 가능성은 시사하고 있으나, 아직 위탁 임업경영이 무엇인지를 대다수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라. 임업경영인의 산림경영 실태

#### ① 임업경영인의 경영상 애로사항

현재 임업경영인이 산림경영을 할 경우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I-12〉이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5.6%가 임업노동력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임업경영자금 부족이 21.0%, 임업경영규모의 영세성이 9.3%, 행정적인 허가절차의 복잡성이 8.6%, 임업경영기술 부족이 2.5%의 순으로 응답했다. 독립 가의 경우 임업노동력 부족 현상이 전체 응답자의 66.6%로 높게 나타난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임업노동력 부족(37.7%) 및 임업경영자금 부족(37.7%) 문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하에서는 임업경영인들이 지적한 임업노동력 부족, 임업경영자금

부족, 임업경영기술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② 임업노동력의 문제점

임업경영인이 산림경영을 할 경우 임업노동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3%가 임업노동자의 절대적 부족현상이라고 응답했다〈부표 I - 13〉. 다음으로 임업노동자에 대한 노임상승이 31.5%, 임업노동자의 부녀화 및 노령화가 13.0%, 전문적인 임업노동기술자 부족이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업노동자의 절대적 부족현상 및 임업노동 노임의 상승 현상은 독립가나 임업후계자에게 공통으로 높게 나타나, 농산촌 인구유출에 따른 노임상승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③ 임업경영인의 부족한 기술분야

임업경영인이 산림경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분야의 기술부족을 강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I - 14〉이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5.7%가 영림계획 편성 및 임업경영기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육림기술 부족이 16.1%, 벌채기술 부족이 9.4%, 조림기술 부족이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모두 영림계획 편성 등 임업경영기술과 육림기술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과거의 조림 위주 기술지도에서 향후 육림, 벌채, 영림계획 편성 등을 포괄하는 임업경영기술 지도로의 전환이 요망된다.

#### ④ 임업경영인에게 시급한 자금지원 분야

임업경영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임업경영자금 중에서 어떤 분야의 자금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I - 15〉이다. 임도시설자금 및 임산물 생산자금이 전체 응답자의 3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림 및 벌채자금 33.5%, 임지구입 및 임업후계자 자

금 14.6%, 양묘 및 조림자금이 12.7%의 순으로 응답했다.

독립가의 경우 육림 및 별채자금이 44.0%, 임도시설 및 임산물 생산 자금이 36.0%로 높은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임도시설 및 표고 등 임산물 생산자금이 43.4%, 임지구입 및 임업후계자 자금이 32.1%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가의 경우 육림 및 별채에 관심이 있는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표고 등의 임산물 재배, 임지규모 확대 및 임업후계자 자금 등에 보다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임업경영인의 산림작업 시행 실태

임업경영인이 지금까지 산림경영을 해오면서 자신의 산림에 조림, 육림, 별채 등의 각종 산림작업을 어느 정도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I - 16>이다. 총 14가지 산림작업 중에서 시행률이 70% 이상인 산림작업은 풀베기작업(93.9%),鄧, 제거 작업(86.0%), 간벌작업(81.1%), 추비작업(79.3%), 지존작업(76.2%), 가지 치기 작업(76.2%), 묘목 식재작업(75.0%), 지장목 제거 작업(72.6%), 보식작업(71.3%)의 9가지이다.

다음으로 산림작업 시행률이 50% 이상인 산림작업은 치수가꾸기 작업(67.1%), 임도개설 작업(60.4%), 주벌작업(58.5%), 천연림 보육 작업(54.3%)의 4가지이며, 나머지 방제(수간주사) 작업은 시행률이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가의 경우 묘목 식재, 방제, 주벌의 3가지 작업을 제외한 모든 산림작업에서 임업후계자보다 산림작업 시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오랜 산림경영에 따른 풍부한 경험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 ⑥ 임업경영인의 기계보유 실태

현재 임업경영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I - 17>이다. 각종 임업기계 중에서 기계톱의 보유율이 72.1%, 육림용 낫이 52.7%, 가지치기 톱이 4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운반용 차량(33.9%), 예불기(23.6%), 집재기(3.6%) 등의 보유율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독립자가 임업후계자보다 임업기계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임업경영인의 기계 보유율은 낮게 나타나 향후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정책 수용 실태

전절에서는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자인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들의 일반 개황, 산림 경영의식 및 경영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절에서는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들의 현행 정책에 대한 수용 실태와 이들 정책담당자들의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지정 동기,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필요성, 필요한 이유, 육성상의 애로점, 실질적인 지원내용 등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①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지정 동기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수용자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들에 대한 지정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9%가 군청 등의 행정관서 추천에 의해서라고 응답했다(<부표 I - 18>). 다음으로 본인 스스로 희망에 의해서 지정된 경우가 27.9%, 산림조합 추천에 의한 지정이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가의 경우 행정관서 추천에 의한 지정이 71.0%로 높고, 본인 의사에 의한 지정이 21.0%로 낮은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행정관서 추천이 53.7%, 본인의 희망이 40.7%로 비교적 높게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임업후계자 지정에 따른 유인력이 독립가 지정에 따른 유인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인 희망에 의한 지정 동기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필요성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독립가, 임업후계자, 그리고 관련업무 담당자 각각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표 4-2>이다. 표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72.9%가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24.6%, 필요없다라는 응답이 2.4%로 나타났다.

임업경영인 육성정책 담당자의 경우 독립가나 임업후계자에 비해 육성정책의 필요성은 있으나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률(37.2%)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된다.

표 4-2 林業經營人 育成政策의 必要性

單位:人, %

項 目	篤 林 家	林業後繼者	林業經營人 育成政策擔當者	合 計
매 우 필 요 함	58 (56.9)	33 (61.1)	21 (41.2)	112 (54.1)
필 요 함	19 (18.6)	10 (18.5)	10 (19.6)	39 (18.8)
必要性은 있으나 어려울 것임	22 (21.6)	10 (18.5)	19 (37.2)	51 (24.6)
필 요 없 음	3 (2.9)	1 (1.9)	1 (2.0)	5 (2.4)
合 計	102 (100.0)	54 (100.0)	51 (100.0)	207 (100.0)

### ③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이유

전향에서 본 바와 같이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표 4-3>이다. 표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0.6%가 일정규모 이상 산주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서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독립가의 산림을 자녀 및 후계자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18.8%, 농산촌 임업노동의 유출 및 임업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

독립가의 경우 자신의 산림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률(28.4%)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데 비해, 관련업무 담당자의 경우는 관내 임업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16.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표 4-3 林業經營人 育成政策이 필요한 理由

單位:人, %

項 目	篤林家	林業後繼者	林業經營人 育成政策擔當者	合 計
一定規模이 상 山主의 集中的인 育成을 위해	61 (64.2)	42 (80.8)	36 (72.0)	139 (70.6)
林業勞動力 不足을 解抉하기 위해	3 (3.2)	1 (1.9)	8 (16.0)	12 (6.1)
篤林家의 山林을 繼承시키기 위해 기 타	27 (28.4)	7 (13.5)	3 (6.0)	37 (18.8)
	4 (4.2)	2 (3.9)	3 (6.0)	9 (4.6)
合 計	95 (100.0)	52 (100.0)	50 (100.0)	197 (100.0)

#### ④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이 어려운 이유

현행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독립가, 임업후계자, 관련업무 담당자 각각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표 4-4>이다. 표에 의하면 임업경영인 육성이 어려운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69.6%가 명목상으로 지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4.7%, 임업경영인 지정대상자의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인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별로 볼 때,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경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각각 20.7%, 1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데 비해, 관련업무 담당자의 경우 대상자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인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27.7%로

표 4-4 林業經營人 育成政策이 어려운 理由

單位:人, %

項 目	篤 林 家	林業後繼者	林業經營人 育成政策 擔 當 者	合 計
對象者 資格條件이 까다롭기 때문	2 (2.3)	3 (6.0)	13 (27.7)	18 (9.8)
實質的 支援內容이 未洽하기 때문	64 (73.6)	31 (62.0)	33 (70.2)	128 (69.6)
行政機關의 積極的인 支援 未洽	18 (20.7)	9 (18.0)	—	27 (14.7)
기 타	3 (3.5)	7 (14.0)	1 (2.1)	11 (6.0)
合 計	87 (100.0)	50 (100.0)	47 (100.0)	184 (100.0)

높게 나타나 각자의 입장이 묵시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

특히,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가 육성정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적 지원내용의 미흡은 독립가 숫자의 연차적인 감소(부표 I - 19 참조), 독립가 육성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표 I - 20 참조), 그리고 독립가 육성정책의 비효율성(부표 I - 21 참조) 등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임업경영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에 의해 독립가나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후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표 4-5>이다. 표에서 보면 독립가나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후 실질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5%가 산림개발기금의 융자 및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영림계획 편성 및 산림시업시 자율성 부여라는 응답이 17.3%, 최신 임업기술 정보, 산림지, 임산물 판매유통정보 등의 간행물 제공이라는 응답이 15.7%, 국고보조 산림사업의 우선적 지원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라는 응답이 14.1%, 선진지 견학 및 산림경영 기술지도 등 임업교육훈련 실시라는 응답이 9.4%, 국유림 분수권 설정시 우선권 부여라는 응답이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독립가의 경우 영림계획 편성 및 산림시업시 자율성 부여라는 응답률이 34.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지원(32.7%), 최신 임업기술 정보, 산림지 등 간행물 제공(24.5%)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표 4-5 林業經營人에 대한 實質的인 支援內容

單位:人, %

項 目	篤 林 家	林業後繼者	林業經營人 育成政策 擔 當 者	合 計
山林開發基金의 融資支援	16 (16.5)	16 (32.7)	32 (71.1)	64 (33.5)
國庫補助山林事業의 優先的 支援	14 (14.4)	6 (12.2)	7 (15.6)	27 (14.1)
先進地 見學 등 林業教育訓練 實施	10 (10.3)	7 (14.3)	1 (2.2)	18 (9.4)
最新 林業技術情報, 山林誌 등 刊行物 提供	13 (13.4)	12 (24.5)	5 (11.1)	30 (15.7)
營林計劃編成 및 山林施業時 自律性 賦與	33 (34.0)	—	—	33 (17.3)
國有林 分收權 設立時 優先權 賦與	3 (3.1)	3 (6.1)	—	6 (3.1)
기 타	8 (8.3)	5 (10.2)	—	13 (6.8)
合 計	97 (100.0)	49 (100.0)	45 (100.0)	191 (100.0)

특히,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업경영인 육성정책 담당자의 경우 산림개발기금의 용자 및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림개발기금의 용자지원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높은 응답률은 독립가 육성정책(부표 I-22 참조)이나 임업후계자 육성정책(부표 I-23 참조)에서도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임업노동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

### 가. 설문조사의 개요

제3장에서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바 있다. 그러면 실제 이들 정책의 수용자인 임업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어떠하며, 지원정책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임업노동자들의 조직체인 산림작업단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운영상의 애로점은 무엇일까? 나아가 실제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의 정책을 담당하는 군청 산림과 공무원이나 군 산림조합 지도원, 그리고 협업경영지도소 지도원들은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인식하고 있을까? 본장에서는 이러한 제반 의문점들은 해결하기 위해 정책수용자인 임업노동자와 산림작업단, 그리고 정책담당자인 일선 공무원, 산림조합 및 협업경영지도소의 지도원들이 각각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행 임업노동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 실태는 향후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의 수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크게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 설문조사표’(부록 3 참조)와 ‘임업노동자 관련업무 담당자 설문조사표’(부록 4 참조)의 두 가지로 시행되었다. 이들 두 가지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 대상자 및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의 설문조사 개요를 나타낸 것이 <표 4-6>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업노동자의 조사대상은 산림조합 소속 민유림 작업단원이 67명, 협업체소속 협업작업단이 56명, 기타 산림조합, 군청 산림과, 목상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개별노동자로 존재하는 자생작업단(이하에서는 ‘기타 자생작업단’으로 약칭)이 84명으로 총 207명이 조사되었다. 한편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 관련

업무 담당자의 조사대상은 군청 산림과 공무원이 14명, 군 산림조합 지도원이 35명, 협업경영지도소 지도원이 11명으로 총 60명이 조사되었다.

이들 조사대상자들인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 그리고 관련업무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 및 항목은 <표 4-6>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임업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임업노동자의 일반 개황<부표 II-1 ~ II-5>, 임업노동자의 노동 실태<부표 II-6 ~ II-9>, 산림작업단의 운영 실태<부표 II-10 ~ II-16>, 지역내 산림작업단 운영 실태<부표 II-17 ~ II-20>, 그리고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실태의 5가지로 대분류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5가지 대분류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임업노동자의 일반 개황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임업노동자들은 크게 산림조합소속 민유림 작업단, 협업체소속 협업작업단, 기타 개별 임업노동자를 포함하는 기타 자생작업단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항에서는 3 가지 형태별 임업노동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구성, 총 부양가족수 그리고 경지 및 임야 소유 현황 등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임업노동자의 연령 구성

임업노동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3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29.1%, 50대가 28.2%, 20대가 7.7%, 그리고 60대가 전체 응답자의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II-1>.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협업체소속 협업작업단이 산조소속 민유림 작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에 비해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고 노년층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6 林業勞動者 設問調査의 概要

單位:人, %

調査對象	調査人員	設問調査內容	
		大分類	小分類
林業勞動者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67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林業勞動者의 一般概況</li> <li>· 林業勞動者의 勞動實態</li> <li>· 山林作業團의 運營實態</li> <li>· 山林作業團의 問題點 및 改善事項</li> </ul>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56 (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作業團 加入動機(부표 II-10)</li> <li>· 作業團 脫退意向(부표 II-11)</li> <li>· 作業團 加入前 山林作業 實施經驗 (부표 II-12)</li> <li>· 作業團이 施行하는 山林作業種類 (부표 II-13)</li> <li>· 作業團員들의 檢林技能土 資格 有無(부표 II-14)</li> <li>· 作業團員들의 技能人 養成敎育 參與回數(부표 II-15)</li> <li>· 山林作業團에서의 職責(부표 II-16)</li> <li>· 山林作業團 運營上의 問題點</li> <li>· 山林作業 違行時 隘路事項</li> <li>· 適正 規模 및 人員</li> <li>· 向後 改善事項</li> </ul>
	其他山組 契 郡廳 自生 作業團	84 (40.6)	
	小計	207 (100.0)	
山林 作業團 業務 擔當者	郡廳 山林課	14 (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域內 山林作業團 運營實態</li> </ul>
	郡 山林組合	35 (5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山林作業團 運營實態 및 問題點</li> <li>· 山林作業團 育成政策 의 改善方案</li> </ul>
	協業經營 指導所	11 (18.3)	
	小計	60 (100.0)	

## ② 임업노동자의 학력 구성

임업노동자의 학력 구성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4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졸 이하가 36.6%, 고졸 이하가 17.1%, 무학이 3.4%, 그리고 대졸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2.0%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Ⅱ-2).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1.0%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임업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임을 반영하고 있다.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협업체 작업단이 민유림 작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임업노동자의 직업 구성

임업노동자의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농업이 전체 응답자의 5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업이 31.2%, 임업이 7.3%, 기타 6.8%, 상업이 0.5%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Ⅱ-3).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2.7%가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업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농산촌에 거주하며 농림업에 종사하는 현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3가지 형태가 모두 농림업에 편중 분포되어 있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특히 협업체 작업단의 경우 전부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 ④ 임업노동자의 총 부양가족수

임업노동자의 총 부양가족수를 살펴보면 5명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5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4명이 33.0%, 1~2명이 12.6%, 그리고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Ⅱ-4).

소속 형태별로 볼 때 협업체 작업단의 임업노동자가 민유림 작업단이나 자생작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임업노동자의 경지 및 임야 소유 현황

임업노동자 총 조사대상자수 207명 중에서 논, 밭, 그리고 임야를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74.4%, 66.7%, 그리고 30.0%로 나타났다<부표 II-5>.

임업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야 소유규모는 4ha로 낮게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경지 소유규모도 논의 경우 1,881평, 밭의 경우 1,455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임업노동자의 노동 실태

#### ① 임업노동자의 연간 산림작업 참여 일수

임업노동자의 경우 연간 산림작업에 참여하는 일수가 몇일 정도 되는가라는 설문조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8%가 60일 이하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60일~120일이라는 응답이 28.2%, 120일~240일이라는 응답이 20.4%, 그리고 240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II-6>.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산림조합 소속 민유림 작업단이 협업체 작업단이나 자생작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간 산림작업 참여 일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 조직된 민유림 작업단만이 유일하게 장비지원 및 행정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임업노동자의 하루 평균 현실노임

임업노동자의 경우 산림작업 시행시 하루 평균 현실노임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9%가 1만원~1만 5천원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1만5천원~2만원이라는 응답이 24.6%, 2만원~2만5천원이라는 응답이 19.2%, 2만5천원~3만원이라는 응답이 8.9%, 그리고 3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Ⅱ-7)。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기타 자생작업단 소속의 임업노동자가 민유림 작업단이나 협업체 작업단에 비해 1만원 이하의 응답률(9.9%) 및 2만5천원 이상이라는 응답률(19.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유림 작업단이나 협업체 작업단의 경우 정부보조 산림작업을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현실노임이 비슷하지만, 기타 자생작업단의 경우는 조림 등의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저임금 단순노동자(여자 포함)와 별채 등의 복잡작업을 수행하는 고임금 전문노동자의 차이가 뚜렷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임업노동자의 연간 임업노동 소득

임업노동자의 경우 연간 산림작업 실시에 따른 임업노동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설문조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2%가 50~10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27.3%, 100~250만원이라는 응답이 23.4%, 250~500만원이라는 응답이 10.7%,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9%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Ⅱ-8)。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산림조합 소속 민유림 작업단의 임업노동자가 협업체 작업단이나 자생작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간 임업노동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유림 작업단의 경우 연간 산림작업 참여일수가 높고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임업노동자의 주된 소득원

임업노동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주 소득원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8%가 농업소득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농업노동 소득이라는 응답이 33.3%, 임업노동 소득이라는 응답이 22.1%,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는 응답이 8.8%이었다(부표 Ⅱ-9)。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보면, 협업체 작업단의 경우 농업소득에 대한 응답률(57.1%)이 비교적 높은데 비해, 민유림 작업단 소속 임업노동자의 경우는 임업노동 소득에 대한 응답률(34.9%)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된다.

### 라. 산림작업단의 운영 실태

#### ① 산림작업단의 가입 동기

임업노동 육성정책의 수용자인 임업노동자가 산림작업단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10>이다. 임업노동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림조합의 권유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36.5%, 군청 등의 행정관서 권유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산림조합 소속 민유림 작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의 경우 산림조합의 권유에 의해서라는 응답률이 각각 49.3%, 41.6%로 비교적 높은데 비해, 협업체소속 협업체작업단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가입률(62.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② 산림작업단원들의 작업 단 탈퇴 의향

산림작업단에 소속된 단원들에 대해 작업단에서 탈퇴 의향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11>이다. 탈퇴 의향이 없다라는 응답

이 전체 응답자의 4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탈퇴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29.7%, 어떻게 할지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27.6%로 나타났다.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민유림 작업단이나 협업체 작업단 소속 임업노동자들의 탈퇴 의사에 비해 기타 자생작업단 소속 임업노동자들의 탈퇴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주목된다.

### ③ 산림작업단 가입 전 산림작업 실시 경험

산림작업단에 가입한 임업노동자의 경우 작업단에 가입하기 전에 산림작업을 실시한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II-12>이다. 전체 응답자의 31.2%가 5년 이상의 풍부한 산림작업 실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1~2년 정도의 산림작업 실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8.2%, 3~4년 정도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8%, 그리고 전혀 산림작업 실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보면, 협업체 작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의 경우 전혀 산림작업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률이 각각 30.4%, 20.0%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비해, 민유림 작업단 소속 작업단원들의 경우 5년 이상 산림작업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률(39.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④ 산림작업단이 시행하는 산림작업 종류

산림작업단에 소속된 작업단원들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어떤한 산림작업을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II-13>이다. 지금까지 조림, 육림, 벌채작업을 포함한 모든 산림작업을 실시해 왔다는 응답률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로 벌채작업을 실시해 왔다는 응답이 16.8%, 주로 육림작업을 실시해 왔다는 응답이 6.9%, 그리고 주로 조림작업을 실시해 왔다는 응답이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업노동자의 소속 형태별로 보면, 민유림 작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의 경우 주로 별채작업을 실시해왔다는 응답률이 각각 16.4%, 22.8%로 비교적 높은데 비해, 협업체 작업단의 경우 모든 산림작업을 실시해왔다는 응답률이 8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⑤ 산림작업단원들의 영림기능사 자격소지 유무

산림작업단에 소속된 산림작업단원들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14>이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7.6%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작업단원들의 자격증 소지율은 12.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작업단원들의 소속 형태별로 살펴보면 협업체 작업단 소속 작업단원들의 자격증 소지율이 2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유림 작업단원들의 자격증 소지율이 10.6%, 기타 자생작업단원들의 자격증 소지율이 4.9%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 산림작업단의 자격증 소지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 향후 자격증 획득을 위한 임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⑥ 산림작업단원들의 기능인 양성교육 참여 횟수

전문적인 임업노동자 육성을 위해 강릉의 임업기계훈련원에서 기능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기능인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산림작업단에 소속된 작업단원의 경우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교육 및 기능인 양성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15>이다. 전체 응답자의 70.1%가 1~2회 정도의 기능인 양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3~4회 정도의 교육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3%, 전혀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3%, 4회 이상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작업단원들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협업체 작업단이 민유림 작

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에 비해 4회 이상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24.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⑦ 산림작업단에서의 직책

산림작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산림작업단원의 경우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16>이다. 전체 응답자의 63.6%가 일반단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작업단장이라는 응답이 19.2%, 총무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응답이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작업단 형태별로 볼 때, 협업체 작업단의 경우 민유림 작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에 비해 작업단장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응답률(25.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와 같이 산림작업단원들의 직책이 분화되어 있는 결과는 향후 산림작업단원 육성시 직책별로 적합한 교육훈련 등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마. 지역내 산림작업단 운영 실태

전절에서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의 수용자인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원들의 일반 개황, 노동 실태, 그리고 산림작업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의 실제 업무담당자인 군청 산림과 공무원, 군 산림조합 및 협업체영지도소 지도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 관내의 임업노동력 여건, 관내 산림작업단 조직의 필요성 및 필요한 이유, 관내 작업단 운영상의 애로점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역내 임업노동력 여건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지도원을 대상으로 관내 연간 산림작업을 담당할 임업노동력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설

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17>이다. 전체 응답자의 50.0%가 관내 임업노동력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43.3%, 적당하다는 응답이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3.3%가 관내 연간 산림작업을 담당할 임업노동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관내 임업노동력이 공급과잉이라는 응답은 전혀 없어 지역내 임업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함을 반영해 주고 있다.

업무담당자의 소속 형태별로 볼 때, 협업경영지도소 지도원들이 군청 산림과 공무원이나 산림조합 지도원에 비해 관내 임업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률(18.2%)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유림 협업경영 구역내의 산림작업에 대해 협업체 작업단이 비교적 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② 지역내 산림작업단 조직의 필요성

임업노동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지도원들의 관내에서 산림작업단을 조직,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18>이다.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3.2%가 관내 산림작업단의 조직 및 육성이 매우 필요(47.4%)하거나 필요(45.8%)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수준이 적당(1.7%)하다거나 전혀 필요없다(5.1%)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향에서 살펴본 관내 임업노동력의 절대 부족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지역내 산림작업단 조직이 필요한 이유

임업노동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지도원들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산림작업단의 조직 및 육성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19>이다. 관내 산림작업단의 조직이 필요한 이유로서 전체 응답자의 64.3%가 숙련된 임업노동자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산림작업 실시를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농산촌 노임상승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이 전체의 25.0%, 중앙 행정관서에서 할당된 연간 산림사업량의 실행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9%, 그리고 농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의 소속 형태별로 살펴보면, 협업경영지도소 지도원들의 경우 숙련노동자 육성을 통한 효율적 산림작업의 실시를 위해서라는 응답률(90.9%)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군 산림조합 지도원들은 경우에는 노임상승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37.5%)이, 그리고 군청 산림과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배정된 산림사업량의 실시를 위해서 산림작업단 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률(23.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④ 지역내 산림작업단 운영시 애로점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지도원들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산림작업단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부표 Ⅱ-20>이다. 관내 산림작업단 운영시 가장 큰 애로점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62.5%가 산림작업단원들에 대해 월평균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점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산림작업단원들이 연간 작업 가능한 산림작업 물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9.6%, 산림작업단원들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및 혜택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10.7%, 그리고 산림작업단원들의 탈퇴가 많고 가입희망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의 소속 형태별로 살펴보면, 3가지 소속 형태 모두 월 적정소득 미보장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군 산림조합 지도원의 경우 연간 산림작업이 가능한 작업물량 부족에 대한 응답률(26.5%)이, 그리고 협업경영지도소 지도원의 경우는 각종 안전사고 대책 미흡에 대한 응답률(36.3%)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산림작업단 육성시 월 적정소득의 보장, 연간 작업 가능한 산림작업 물량의 확보, 각종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바. 임업노동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

지금까지 임업노동자의 일반 개황, 노동 실태, 산림작업단의 운영 실태, 그리고 전절에서 지역내 산림작업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이에 본절에서는 현행 임업노동 육성정책의 대상자인 임업노동자와 이들 정책의 담당주체인 업무담당자들이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산림작업단 운영상의 문제점 및 수용 실태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3가지 산림작업단 형태별 임업노동자와 산림작업단 업무담당자가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산림작업단원들의 작업단 탈퇴이유, 월평균 임업노동 소득이 낮은 이유, 산림작업단의 연간 작업 가능한 산림작업 물량이 부족한 이유, 산림작업단이 별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실제 산림작업단 운영시 가장 큰 애로점, 산림작업 수행시 애로사항의 6가지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산림작업단원들의 작업단 탈퇴 이유

현재 3가지 산림작업단 형태별 임업노동자와 산림작업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작업단원들이 작업단을 탈퇴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표 4-7>이다. 표에 의하면 산림작업단원들이 작업단을 탈퇴하는 주된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66.8%가 월 평균 적정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고된 작업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는 응답이 16.2%, 임금수준이 높은 타산업 부문으로 이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山林作業團員들의 作業團 脫退 理由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 計
月適正所得未保障	49 (75.4)	37 (71.2)	42 (56.8)	37 (66.1)	165 (66.8)
고된 作業 및 열악한 勤勞條件	9 (13.8)	6 (11.5)	18 (24.3)	7 (12.5)	40 (16.2)
高賃金水準의 他產 業部門으로 移職	-	1 (1.9)	2 (2.7)	10 (17.8)	13 (5.3)
其 他	7 (10.8)	8 (15.4)	12 (16.2)	2 (3.6)	29 (11.7)
合 計	65 (100.0)	52 (100.0)	74 (100.0)	56 (100.0)	247 (100.0)

응답자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임업노동자나 업무담당자 모두 산림작업단원들의 탈퇴 이유로써 월 적정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 기타 자생작업단 소속 임업노동자의 경우, 작업단원들의 탈퇴 이유가 고된 작업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24.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② 월평균 임업노동 소득이 낮은 이유

전항에서 산림작업단원들의 주된 탈퇴이유가 월평균 적정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산림작업단원들의 월평균 적정소득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임업노동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산림작업단원들에게 매월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내용이 <표 4-8>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작업단원들

에게 매월 적정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써, 전체 응답자의 62.3%가 산림작업 실시에 대한 정부의 임금 지급단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연간 작업이 가능한 산림작업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3%, 산림작업단원들이 별채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작업기술이 부족하여 일당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3.5%, 기타 산림작업단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 등의 응답이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3가지 형태의 산림작업단에 소속한 임업노동자들의 경우 모두 산림작업 실시에 따른 임금 지급단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산림작업단 업무 담당자의 경우는, 산림작업단원들 자체의 전문작업기술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일당 때문이라는 응답률(38.6%)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山林作業團員들의 月平均 林業勞動 所得이 낮은 理由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 計
年間 作業可能한 山林作業物量 不足	9 (13.4)	14 (25.5)	12 (14.8)	10 (17.5)	45 (17.3)
山林 作業에 대한 賃金 支給單費가 낮기 때문	50 (74.6)	34 (61.8)	58 (71.6)	20 (35.1)	162 (62.3)
伐採 等의 專門作 業技術이 不足하여 일당이 낮기 때문	4 (6.0)	1 (1.8)	8 (9.9)	22 (38.6)	35 (13.5)
其 他	4 (6.0)	6 (10.9)	3 (3.7)	5 (8.8)	18 (6.9)
合 計	67 (100.0)	55 (100.0)	81 (100.0)	57 (100.0)	260 (100.0)

### ③ 산림작업단의 연간 작업가능한 산림작업 물량 부족 이유

전향에서 월평균 적정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서 낮은 정부노임 단가, 연간 작업가능 물량 부족, 전문작업기술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 중에서 첫째로, 낮은 정부노임 단가 문제는 임업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예산부서와 연계된 정책변수이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해결될 성질이다. 둘째로, 작업단원들의 전문작업기술 부족 문제는 작업단원들에 대한 별채 등의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결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산림작업단원들이 연간 작업가능한 물량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본향에서는 임업노동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산림작업단의 연간 작업가능한 작업물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표 4-9). 표에 의하면 산림작업단의 연간 작업가능한 작업물량이 부족한 이유로서, 전체 응답자의 30.0%가 산림작업 물량이 시기적으로 3월~11월 사이에 집중 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산림작업단이 농한기(12월~2월)에 작업가능한 별채 작업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1%, 지역내 할당된 전체 산림작업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2%, 그리고 전체 산림작업 물량 중에서 작업단에서 작업가능한 보조사업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산림작업단 업무담당자의 경우 지역자체내의 산림작업 물량 부족(36.4%) 및 보조사업 물량 부족 때문(36.4%)이라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협업체 작업단과 기타 자생작업단의 경우 농한기(12월~2월) 별채작업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각각 40.0%, 4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유림작업단의 경우 연간 불균등한 작업물량 배분 때문이라는 응답률(41.1%)이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표 4-9 山林作業團의 年間 作業可能 物量이 不足한 理由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 計
地域內 전체 山林 作業物量 自體가 적기 때문	8 (14.3)	11 (22.0)	19 (27.5)	20 (36.4)	58 (25.2)
全體 物量 중 作業團 에서 作業可能한 補助 事業物量 不足 때문	8 (14.3)	6 (12.0)	2 (2.9)	20 (36.4)	36 (15.7)
行政機關의 不適切한 作業物量配定 때문 (3월~11월사이 集中配定)	23 (41.1)	13 (26.0)	19 (27.5)	14 (25.5)	69 (30.0)
山林作業團이 農閑期 (12~2월) 伐採作業을 못하기 때문	17 (30.4)	20 (40.0)	29 (42.1)	1 (1.7)	67 (29.1)
合 計	56 (100.0)	50 (100.0)	69 (100.0)	55 (100.0)	230 (100.0)

## ④ 산림작업단이 벌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전항에서 산림작업단의 연간 작업 가능한 물량 부족 이유로서 연간 부적절한 작업물량 배분, 농한기 벌채작업 비참여, 지역 자체의 작업 물량 부족, 보조사업 물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4가지 요인들 중에서 첫째로, 연간 부적절한 작업물량 배정 및 보조사업 물량 부족 문제는 행정적인 지원에 의해 산림작업 물량을 연중 균등히 배분하거나 보조산림사업 물량의 확대가 가능한 정책변수들이다. 둘째로, 지역 자체내의 전체 산림작업 물량 부족 문제는 산림작업단

적정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인근 지역의 산림작업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등에 의해 해결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산림작업단이 농한기(12월~2월)에 작업 가능한 벌채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본항에서는 산림작업단 업무담당자인 공무원 및 지도원을 대상으로, 산림작업단이 벌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다(표 4-10). 표를 통해 보면 현재 산림작업단이 벌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전체 응답자의 64.2%가 벌채작업 물량의 대부분이 木商組織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작업단의 벌채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산림작업단 자체내에 벌채기술자 및 벌채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벌채작업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5%, 산림작업단에서 벌채한 임목의 판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 그리고 현재의 제도 및 규정상 작업단이 벌채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山林作業團이 伐採過程에 參與하지 못하는 理由

單位:人, %

項 目	郡 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協業經營 指導所	合 計
現行 規程上 參與할 수 없기 때문	1 (8.3)	1 (2.9)	—	2 (3.8)
山林作業團의 伐採作業能力 不足 때문	4 (33.3)	7 (20.6)	2 (28.6)	13 (24.5)
伐採作業物量의 대부분이 木商에 의해 施行되기 때문	7 (58.4)	24 (70.6)	3 (42.8)	34 (64.2)
作業團에서 伐採한 林木의 판로確保가 어렵기 때문	—	2 (5.9)	2 (28.6)	4 (7.5)
合 計	12 (100.0)	34 (100.0)	7 (100.0)	53 (100.0)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산림작업단의 별채작업 물량 및 판로 확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산림작업단 자체내의 별채작업 능력을 제고시킨다면 별채과정에 상당 부분 참여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산림작업단의 별채과정 참여는 농한기(12~2월) 산림작업 물량 확보라는 측면이외에, 獨立採算制 등을 통한 작업단 자체의 수익증대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실제 산림작업단 운영상 애로점

본항에서는 3가지 산림작업단 형태별 산림작업단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산림작업단의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표 4-11>. 표에 의하면 산림작업단을 운영할 때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52.0%가 작업단에 대한 기계톱, 차량, 숙박시설 등의 장비지원이 미흡한 점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산림작업 실행시 작업감독, 임금정산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표 4-11 山林作業團 運營時 隘路點

單位 : 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 有 林 作 業 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 業 團	合 計
기계톱, 車輛, 宿泊施設 등의 裝備支援 未洽	23 (35.9)	48 (85.7)	32 (41.0)	103 (52.0)
유류대, 식비 등의 運營費 支援未洽	11 (17.2)	1 (1.8)	13 (16.7)	25 (12.6)
作業團 内部 團員間 摩擦	2 (3.1)	2 (3.6)	5 (6.4)	9 (4.6)
作業監督, 賃金精算 등 行政 機關의 協調 未洽	22 (34.4)	2 (3.6)	23 (29.5)	47 (23.7)
其 他	6 (9.4)	3 (5.4)	5 (6.4)	14 (7.1)
合 計	64 (100.0)	56 (100.0)	78 (100.0)	198 (100.0)

응답이 23.7%, 작업단에 대한 유류대, 식비 등의 운영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12.6%, 그리고 작업단 내부 단원들간의 마찰이라는 응답이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작업단 형태별로 살펴보면, 1990년에 조직되어 약 2천만원의 장비를 지원받은 바 있는 민유림 작업단의 경우 장비지원 미흡문제를 35.9%로 응답한데 비해, 지금까지 장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협업체작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의 경우는 장비지원 문제를 각각 85.7%, 41.1%로 높게 응답하고 있어 주목된다.

#### ⑥ 실제 산림작업 수행시 애로사항

전항에서 산림작업단 운영상의 애로점으로서 장비지원 부족, 행정기관 협조 미흡, 운영비 지원 미흡, 기타 작업단 내부 단원간 마찰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항에서는 산림작업단 소속 작업단원들이 실제 산림작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표 4-12). 표를 통해 살펴보면 실제 산림작업 수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51.2%가 작업의 고통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농한기(12월~2월) 작업 가능한 산림작업 물량 부족이라는 응답이 32.8%, 안전장비 및 안전교육 등의 안전대책 미흡이라는 응답이 10.0%, 그리고 벌채, 하산 등의 작업이 가능한 전문임업기술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작업단의 형태별로 볼 때, 민유림 작업단이나 기타 자생작업단 소속 임업노동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60.6%, 54.4%로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협업체 작업단원들의 경우는 농한기 산림작업 물량 부족(42.9%)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주목된다.

표 4-12 산림작업 수행시 애로사항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合 計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의 안전대책 미비	4 (6.1)	8 (14.3)	8 (10.1)	20 (10.0)
농한기 (12~2월)의 산림 작업물량 부족	21 (31.8)	24 (42.9)	21 (26.6)	66 (32.8)
작업의 고통도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40 (60.6)	20 (35.7)	43 (54.4)	103 (51.2)
멸채, 하산 등 전문 임업 기술부족	1 (1.5)	2 (3.6)	3 (3.8)	6 (3.0)
기 타	—	2 (3.6)	4 (5.1)	6 (3.0)
합 계	66 (100.0)	56 (100.0)	79 (100.0)	201 (100.0)

## 제 5 장

###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지금까지 사유림 경영의 문제점과 임업인 육성의 필요성,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면 향후 바람직한 임업인 육성방향은 무엇일까? 미래 임업인 육성방향에 적합한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규명해 보고자 본장에서는 임업경영인의 육성방향과 임업노동의 육성방향을 고찰한 다음,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임업경영인의 육성방향

사유림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특히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포괄하는 임업경영인을 선택적으로 육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유림 경영주체인 산주는 고령화하고 후계자의 확보가 어려운 현재 상황下에서, 미래의 임업을 이끌어 나갈 임업경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지원자금이 제

한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경영인을 선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임업경영인이라는 개념은 그 구체적인 기준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의 임업여건으로 보아 임업경영인의 육성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도 불분명하다.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타당성 여부가 규명된 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과연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대상은 어떤 산주인가, 육성정책의 목표는 어디에다 설정해야 할 것인가,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첫째로,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는 산주를 규명하기 위해 산주 구분의 지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로 산주 구분지표에 따른 산주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육성방향을 모색한 다음, 셋째로 임업경영인 육성의 의의와 정책변수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가. 산주 구분지표와 기준

농업의 경우 축산, 시설원예 등 토지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경영경지) 이외에 농산물 판매액이라는 가치의 규정이 필요하다(二元的 標識). 그러나 임업의 경우는 최종 생산물인 임산물은 모두 산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산림 보유규모별 분류가 가장 기본적인 분류단위(一元的 標識)이다(산림·임업행정연구회, 1982, p. 6).

따라서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구분지표와 기준으로 임야 소유규모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임가경제조사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야 소유규모별 산주의 임업경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산주 소유규모별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1989년 19,477명에 대해 산림청에서 표본조사한 보고서이다(산림청, 1990). 동 보고서에 의해 산주 임야 소유규모별 임업경영 실태를 요약, 재정리한 내용이

<표 5-1>이다. 표에 의하면 전체 산주 19,477명의 평균치 ( $\bar{M}$ ) 보다 임업경영 실태가 양호한 임야 소유규모는 30~50ha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山主의 林業經營 實態에 따른 區分

單位:名, %

區 分		合 計	0.5~ 5ha	5~ 20ha	20~ 30ha	30~ 50ha*	50~ 100ha	100~ 500ha	500ha 以上
總調查	人	19,477	5,249	6,018	1,559	2,213	2,920	1,381	137
對象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非農林家 比率		41.6	31.2	35.9	39.9	45.8	54.4	64.6	76.7
過去5年間林木販賣比率		42.4	26.5	38.4	41.6	49.7	49.3	56.3	73.8
林產物 販賣 貸金의 林業 經營 再投資比率		19.2	8.7	13.9	16.8	23.8	24.6	39.9	54.8
林業 收入에 의한林業 經營 資金調達比率		9.0	2.8	7.2	9.2	9.5	12.9	23.5	34.4
林業經營目的의山林 所 有 比 率		7.8	2.9	6.0	7.9	9.9	10.9	20.3	36.6
年間 150日以上 林業 勞動 投下比率		4.4	0.6	1.6	2.8	5.1	7.4	21.2	41.2
林業用機械保有率	機 械 昵	10.6	3.8	8.7	10.3	13.6	15.5	26.7	51.9
	플레기用 機 械	3.1	2.1	2.3	2.3	3.6	3.6	8.9	22.5
	가지치기 機 械	0.7	0.2	0.4	0.4	0.7	0.8	3.3	15.6
	集材機	0.2	-	-	-	0.1	0.2	1.9	9.8

\*고덕체는 全體 山主의 平均值 ( $\bar{M}$ ) 보다 큰 경우임.

資料:山林廳, 「山林所有規模 및 經營實態調查 結果報告書」, 1990.

## 나. 산주의 유형 구분과 육성방향

본항에서는 전술한 산주 구분지표로서 임야 소유규모 30ha를 기준으로 하여 산주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육성방향을 모색하였다.

### ① 산주의 유형 구분

임야 소유규모 30ha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 전체 산주 1,979천명을 4가지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가 <표 5-2>이다.

표를 통해보면 임업경영 의식이 강하여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로 주로 육성가능 대상인 중·대규모 + 소재 산주수는 8천명으로 전체 산주수의 0.4%에 불과하나, 산림 보유면적은 573천ha로서 전체 산림면적의 11.7%를 점하고 있다. 중·대규모 + 부재 산주수는 9천명(0.4%)이며, 산림 보유면적은 741천ha로서 전체 산림면적의 1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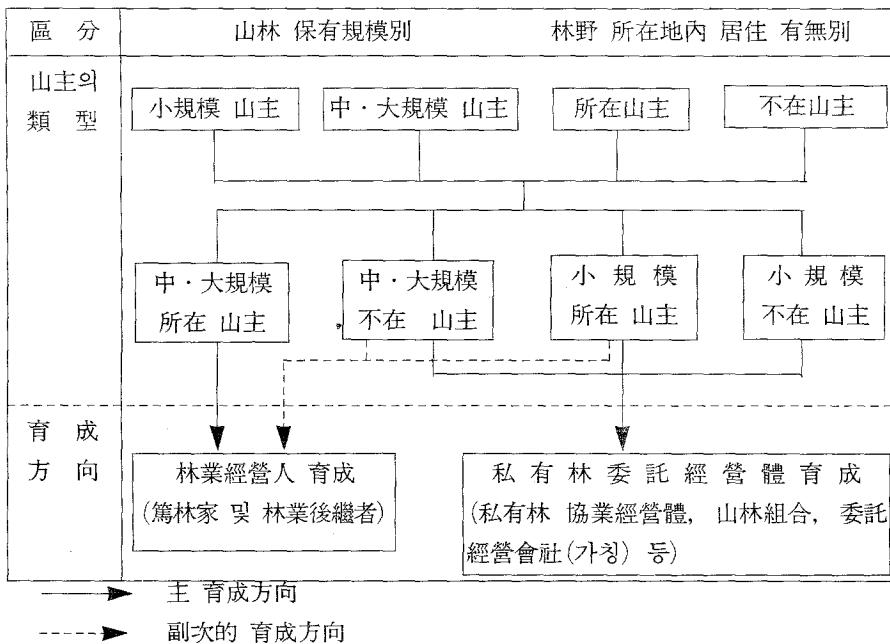
표 5-2 山主 類型 區分

單位:千人, 千ha, %

山主 類型	山主數		山林 保有面積		B/A	비 고
	人員A	%	面積B	%		
中·大規模* + 所在	8	0.4	573	11.7	75.7	篤林家·林業後繼者主育成對象
小規模 + 所在	1,275	64.4	2,239	45.8	1.8	林業後繼者副次的育成對象
小規模 + 不在	688	34.8	1,334	27.3	1.9	—
中·大規模 + 不在	9	0.4	741	15.2	87.0	篤林家副次的育成對象
合 計	1,979	100.0	4,887	100.0	2.5	—

\*中·大規模와 小規模 山主의 區分은 山林 保有面積 30ha를 基準.

그림 5-1 山主 類型別 育成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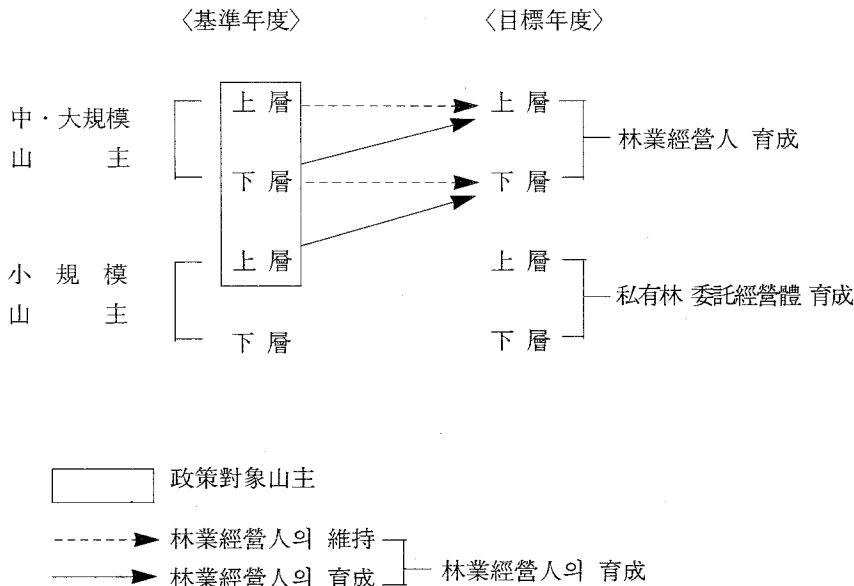
## ② 산주 유형별 육성방향

앞에서의 4가지 산주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임업경영인 육성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 산주수의 99.2%, 그리고 전체 산림면적의 73.1%를 점하고 있는 30ha 이하의 소규모+소재 및 소규모+부재 산주들의 경우, 현재 상태로서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에 의한 위탁경영체로의 育成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림 5-1).

특히, 중·대규모 소재산주의 경우 독립가 및 임업경영인의 主 育成對象으로, 그리고 중·대규모 부재산주 및 소규모 소재산주의 경우 副次的 育成對象으로 향후 임업경영인 育成方向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임업경영인 육성방향은 산림 보유규모별, 임야 소재지내 거주 유무별 산주의 유형에 따라 접근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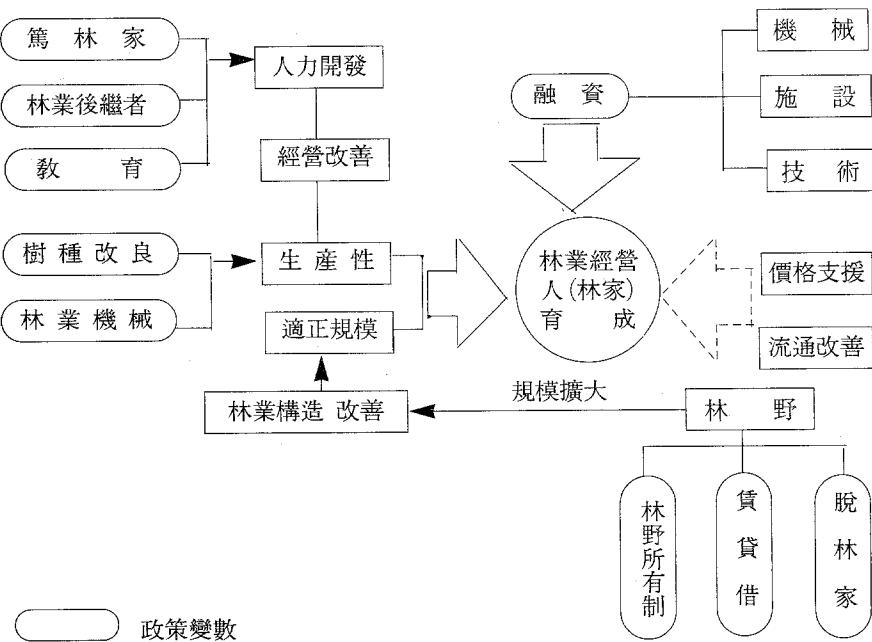
그림 5-2 임업경영인 육성의 의의



#### 다. 임업경영인 육성의 의의

임업경영인 육성이란 이미 자립적 임업경영이 가능한 임야 소유규모를 가진 임업경영인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새로운 임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도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림 5-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업경영인의 육성은 중·대규모 산주를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산주 중에서 자립적 임업경영이 가능한 새로운 임업경영인으로 육성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림 5-3 임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변수 및 관련분야



#### 라. 임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변수

정책목표로서 임업경영인 육성이 추구될 때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임업소득의 절대액을 늘리기 위해서 경영규모가 크면 그 만큼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규모가 작더라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와 경영규모가 크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업경영인 육성은 적정규모의 달성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임업경영인의 육성을 위한 관련요인을 체계화한 것이 <그림 5-3>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생산성 향상과 적정규모의 달성이외에, 간접적인 육성요인으로서 가격지원 및 유통개선이 포함되고 있다. 이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임업경영인의 자금수요에 대한 응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임업경영인의 육성은 직접적으로는 임업구조 개선, 자본재 공급의 원활화, 인력개발 등과 관련되어 있고, 간접적으로는 가격정책 및 유통정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방안도 이러한 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 임업노동의 육성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산림은 현재 Ⅱ영급 이하의 유령림이 전체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育林期에 있기 때문에, 育林作業을 담당할 손(手)으로서의 전문 임업노동자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임업노동은 농업노동과는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영림기능인으로 구성된 산림작업단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면 임업노동의 경우 농업노동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임업노동의 특성에 기인한 임업노동의 문제점과 육성방향은 무엇인가? 향후 전문 임업노동자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첫째로, 임업노동이 농업 및 타산업 노동과 다른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로 임업의 특성에 기인한 임업노동의 문제점과 육성방향을 살펴본 다음, 셋째로 전문 임업노동자의 수급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임업노동의 특성<sup>1)</sup>

일반적으로 임업노동은 育林勞動(育苗, 地存, 식부, 하예, 덩쿨 제거, 除伐 등), 伐出勞動(벌목, 造材, 集運材 등), 土木勞動(임도 및

1) 森林・林業行政研究會 (編), 「森林・林業と行政」, 1982, pp. 179-181.

林業勞動研究會 (編), 「林業勞動問題を考之る」, 1976, pp. 17-22.

작업도의 개설, 사방시설 설치 등)의 3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이러한 林業勞動을 他產業의 노동과 비교해 보면〈표 5-3〉, 自然現象 및 작업의 장소인 地形 등에 左右된 결과, 勞動의 內容, 勞動의 連續性, 就業의 形態 등에 있어서 타산업과 다른 다양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임업노동의 특징을 첫째로, 노동의 내용 측면에서 이동성과 重筋性의 특징, 둘째로 노동의 연속성 측면에서 계절성과 이동성의 특징, 셋째로 취업 형태 측면에서 겸업성과 취업구조의 복잡성의 특징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① 노동의 내용에서 본 특징

##### 1) 移動性

소위 作業의 移動性에 있어서 林業勞動은 일반적으로 급준하고 복잡한 地形에 있는 林地를 上下, 左右로 이동하면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

##### 2) 重筋性

임업노동은 林地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機械力의 도입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일반적으로 重筋勞動으로 되어 있다.

한편, 苗木生產 등 비교적 輕勞動으로 실행 가능한 작업에 있어서도 연령 및 筋力의 차이에 따라 각각에 맞는 작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 ② 노동의 연속성에서 본 특징

##### 1) 季節性

일반적으로 育林過程은 林木이라는 植物의 生長過程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適期·適作業이 요구된다. 除伐 및 技打 등은 自然的 條件에 의한 제약이 비교적 적으며, 植付, 下刈는 一定時期에 노동이 집중된다.

한편, 伐出過程에 있어서는 林木生理에 제약 받는 것이 비교적 적다. 集

표 5-3 林業勞動과 農業勞動의 特性 比較

區 分	林 業 勞 動	農 業 勞 動
基本性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有機的 生產過程</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有機的 生產過程</li> </ul>
時間的特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非連續性(季節性)</li> <li>- 農業보다는 작지만 季節性이 存在</li> <li>- 育林(植付, 不刈過程에서 適期, 適作業이 要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非連續性</li> <li>- 自然의 影響을 매우 크게 받음. (農繁期와 農閑期가 뚜렷)</li> <li>- 季節性이 매우 큼.</li> </ul>
勞動種類的特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勞動의 異質性</li> <li>- 育林勞動과 伐出勞動간에 뚜렷한 生產技術 差異가 存在(專業勞動者 育成이 어려움)</li> <li>- 農業보다 長期間(30~50年)에 걸쳐 異質의 勞動이 要求됨. (例: 植付→施肥→下刈→伐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勞動의 異質性</li> <li>- 異質의 前後交替勞動이 불가피</li> <li>- 農業機械化를 가로막는 要因</li> <li>- 時間의 間隔이 깊게(1年 안에서) 異質의 勞動이 不斷히 交替 (예: 벼농사의 경우, 시비→경운→播種→耥→除草 및 收穫)</li> </ul>
作業場所的特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勞動의 移動性</li> <li>- 作業場의 移動範圍가 极히 넓음.</li> <li>- 險峻한 山地를 上下, 左右로 移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勞動의 移動性</li> <li>- 作業場所가 農地에 따라 移動的</li> </ul>
就業形態上의 特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勞動監督이 极히 困難</li> <li>- 作業이 粗放의</li> <li>- 作業結果가 极히 長期間 후에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勞動監督의 困難性</li> <li>- 作業完了後 作業結果가 서서히 나타남.</li> </ul>
就業構造의複雜性(從事者之雇傭關係, 就業期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林業勞動의 兼業性</li> <li>- 所有規模의 零細性, 作業의 季節性 등으로 인해 兼業의 性格이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專業+兼業</li> </ul>
勞動의 苦痛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 複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比較的 簡單</li> </ul>
機械化可能 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 큼(作業危險度가 높음)</li> <li>- 重勞動 要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큼</li> </ul>
勞動市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 적음 (人力依存度 매우 높음)</li> <li>閉鎖性</li> <li>- 兼業의 農林家의 관행적인 勞動需要</li> <li>- 農山村에서 經驗의 으로 習得된 林業勞動 供給</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음</li> <li>比較的 開放</li> </ul>

材機 및 林道 등 집운재기술의 발달에 따라 季節的 제약을 받는 경우도 적어졌지만, 氣候 및 天候에 의해 作業能率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임업노동에는 一年을 통해 연속하여 就勞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 2) 移動性

소위 作業場의 移動性에 있어서, 임업은 생산품인 林木의 育成期間이 극히 길기 때문에 生育段階가 다른 森林을 勞動對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봄에 어떤 산의 植付를 행하고, 여름에는 다른 산의 下刈를 행하는 등 勞動場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廣域의으로 생산단계가 다른 森林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移動性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 [3] 취업의 형태에서 본 특징

### 1) 兼業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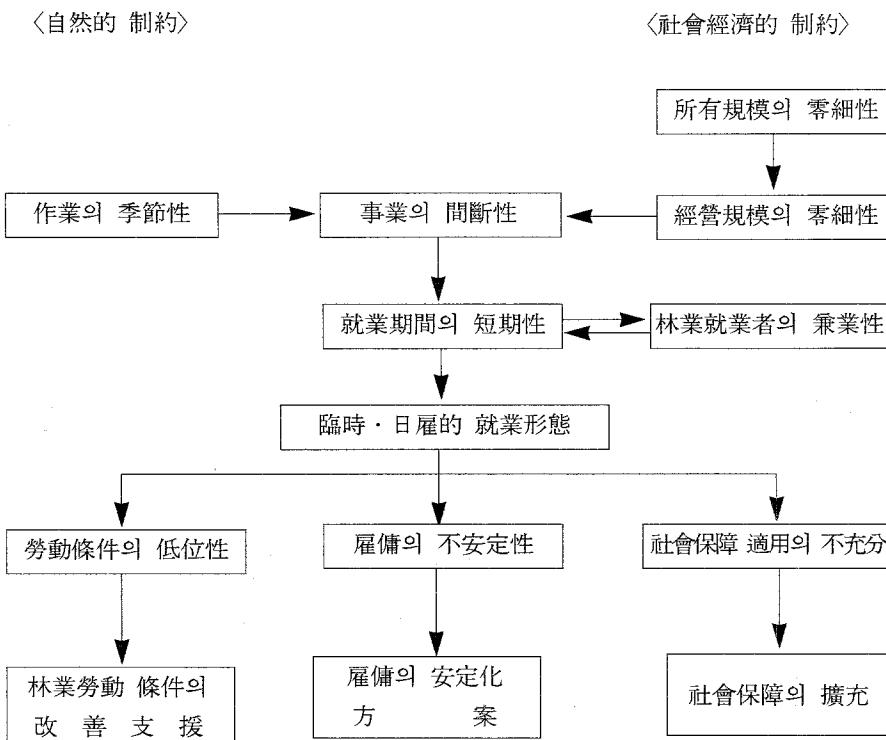
임업노동의 경우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업노동 등과 계절적으로 조합해 가면서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伐出勞動에 비해 育林勞動에 있어서는 고도의 專門的 技能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낮으며, 또한 作業形態가 農業勞動과 유사한 것도 있어서 兼業勞動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은 합리적인 農·林業 經營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취업구조의 복잡성

취업구조란 어떤 산업 또는 어떤 事業場 등에 대해서, 거기에 취업한자의 연령별, 성별, 종업상의 지위별, 취업기간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취업자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5-4 임업의 특성에 기인한 임업노동의 문제점 및 육성방향



資料：林業労動研究會 編，林業労動問題を考之る，1976，p. 94에서 再作成。

임업노동은 노동장소가 山間部에 광범위하게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며,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노동 등과 밀접한 관계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고용관계, 취업기간의 長短 등 그 취업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업노동이 농업노동 등 타산업 노동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후술하려는 전문 임업노동자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노동재해 및 사회보장제도 등의 측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임업노동의 문제점과 육성방향

전술한 임업노동의 특성이외에 임업의 자연적 제약 및 사회적·경제적 제약, 즉 소위 임업의 특성에 기인한 일반적인 임업노동의 문제점 및 그 육성방향을 도식화한 내용이 〈그림 5-4〉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먼저 자연적 제약요인인 작업의 계절성으로 인해 임업취업자의 연간 취업일수가 감소하게 되고, 취로형태는 임시적, 일고적 형태가 된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제약요인인 임업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취업자의 겸업성으로 인하여 연간 취업일수가 감소하게 되고, 임시적·일고적 취로형태가 되어진다.

이와 같이 임업노동의 문제점은 임업의 사회·경제적 및 자연적 제약으로 인해 결국 임업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고, 임금 등의 노동조건이 저위에 있게 되며, 사회보장의 적용이 불충분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임업노동의 육성방향은 고용의 안정화, 노동조건의 개선, 사회보장 적용의 확충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전문 임업노동자 조직으로서의 산림작업단 육성방안도 이러한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임업노동의 수급전망

##### ① 임업노동 수요전망

본절에서는 우리 나라 전체 사유림 중 영림계획이 편성된 사유림 사업면적 355만ha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임업노동의 수요량을 추산하였다 〈표 5-4〉. 표에서 살펴보면, 2000년대 사유림 사업면적 355만ha를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임업노동자수는 代案 I의 경우 25,560명, 代案 II의 경우 42,600명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추정된 연간 임업노동 수요량을 임업노동자(labour)와 임업경영자(manager)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요량을 추산한 내용이 <표 5-5>이다. 표에서 보면 2000년대 사유림 355만ha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代案 I (전업노동 250日/人 기준)의 경우 연간 13,175명의 營林技能人과 2,635명의 林業經營者, 그리고 代案 II (전업노동 150日/人 기준)의 경우 21,959명의 영림기능인과 4,392명의 임업경영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임업노동의 수급전망

1989년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산지자원화계획(1988~97) 및 민유림 작업단 육성계획(1990)에 의거하여 2000년대 임업노동의 공급량을 추산한 내용이 <표 5-6>이다. 표에 의하면 2000년대 사유림의 산림작업을 담당할 영림기능인의 수는 7,500명, 임업경영자의 수는 1,240명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5-4 林業勞動 需要量 推算

單位: 千ha, 人

區 分	私有林 施業面積 <sup>1)</sup>	年 間 작업면적 <sup>2)</sup>	日當 所要林業 勞動者數 <sup>3)</sup>	年間所要林業勞動者數 <sup>4)</sup>	
				代 案 I	代 案 II
育林作業	2,840	284	4,260,000	17,040	28,400
間伐作業	710	71	2,130,000	8,520	14,200
合 計	3,550	355	6,390,000	25,560	42,600

1) 全體 私有林 施業面積 중 Ⅱ 영급이하(80%)는 育林作業對象, Ⅲ 영급이상(20%)은 間伐作業對象面積으로 計算.

2) 年間作業面積=私有林施業面積÷10年 (管林計劃周期)

3) 育林作業은 ha當 15人/日, 間伐作業은 ha당 30人/日 基準.

4) 代案 I : 專業勞動을 年間 林業勞動日數 250日 基準  
(馬相圭, 1988)

代案 II : 專業勞動을 年間 林業勞動日數 150日 基準  
(日本, 農林業セン서스 區分, 1970)

표 5-5 林業勞動 類型別 需要量

單位:人

區 分		年間 林業勞動 需要量	
		代案 I	代案 II
林業勞動者 (labour)	一般勞動者	25,560	42,600
	營林機能人 <sup>1)</sup>	13,175	21,959
林業經營者 (manager) <sup>2)</sup>		2,635	4,392

- 1) 一般勞動者 대비 營林技能人의 作業能率이 平均 1.94倍인 것으로 計算  
(KREI 研究報告 201, 1989, p. 29 參조)
- 2) 營林技能人 5인당 林業經營者 1인 基準(林業機械訓練院 資料)

표 5-6 林業勞動 供給量 推算

單位:個所, 人

區 分		供給 現況 및 計劃		비 고
		'89년 現在	2,000年	
營 林 技能人	民有林 作業團	作業團 數	20	民有林作業團 育成計劃 (1990)
		技能人 數 <sup>3)</sup>	300	
	私有林協業	作業團 數	27	民有林作業團 育成計劃 예 包含
	體作業團	技能人 數	282	
林 業 經營者	私 有 林 協業經營	指導所 數 (協 業 系)	25	山地資源化計劃 (1988 ~ 97)
		指導員 數 <sup>4)</sup>	76	
			1,240	

1) 1개 作業團當 20人 基準

2) 1개 指導所當 4人 基準

표 5-7 林業勞動의 需給構造 展望, 2000

單位:人, %

區 分	需 要(A)		供 給		代案I의 경우	代案II의 경우		
	代案 I	代案 II	'89現在(B)	2,000年(C)	B/A	C/A	B/A	C/A
營林機能人	13,175	21,959	582	7,500	4.4	56.9	2.7	34.2
林業經營者	2,635	4,392	76	1,240	2.9	47.1	1.7	28.2

이러한 임업노동 공급량을 수요량과 대비시켜 볼 때,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림기능인은 1989년 현재 2.7 ~ 4.4% 수준에서 2000년대 34.2 ~ 56.9% 수준으로, 임업경영자의 경우 현재 1.7 ~ 2.9% 수준에서 28.2 ~ 47.1% 수준으로 각각 증가될 전망이다.

### 3.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 가. 사유림 경영 조직체계의 정비

##### ① 사유림 경영 조직체계 개선방향

지금까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유주로서의 산주는 있으나, 사유림 경영주체로서의 임업인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산주 중심의 사유림 조직이, 임업 경영주체 및 임업노동자가 연계된 조직체계로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유림 경영 조직체계의 개선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私有林 經營主體(Manager) 와 林業勞動(Labour) 組織의 體系 確立
- ② 私有林 經營主體는 小規模 零細山主 및 不在山主의 林業經營 活性化를 위한 委託經營體 育成과 中·大規模 自立的 林業經營이 가능한 林業經營人 育成의 2가지 방향에서 접근
- ③ 林業勞動組織은 私有林 經營主體와 연계하여 政策支援이 가능한 組織으로 陽性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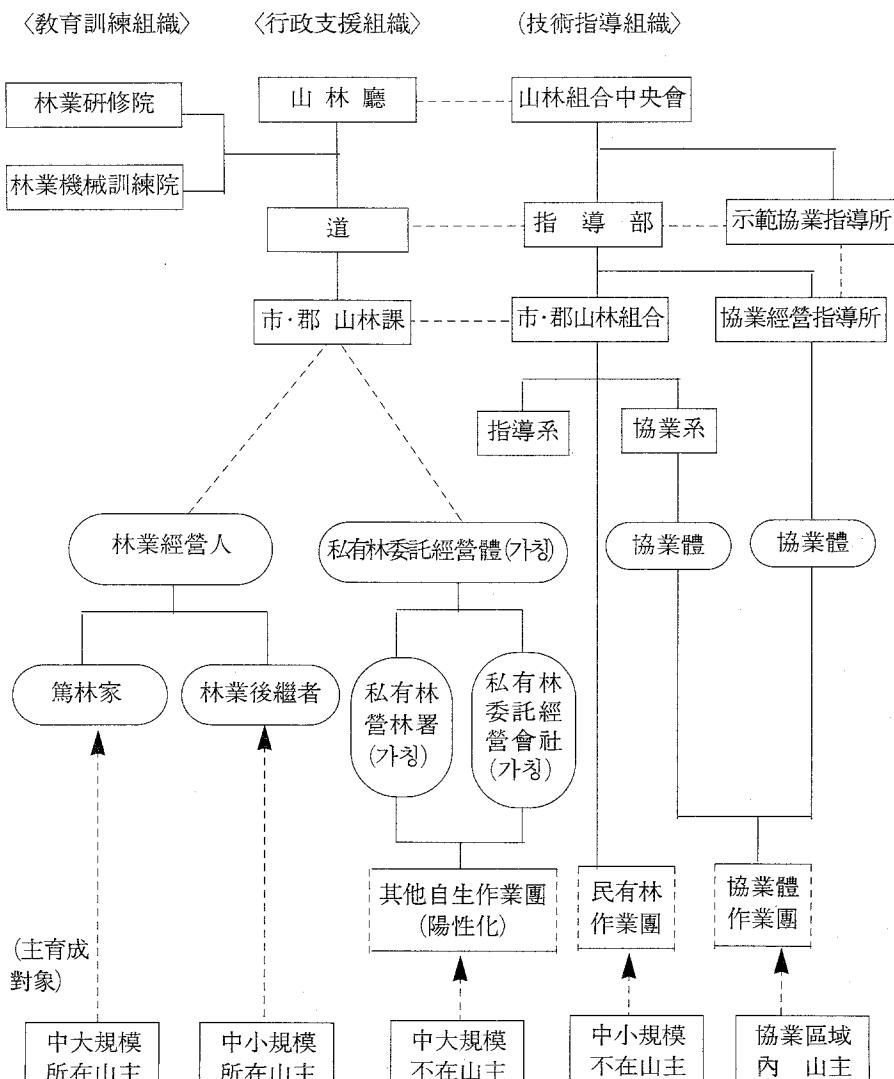
##### ② 사유림 경영 조직체계 개선방안

사유림 경영조직 형태별 현황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요

표 5-8 사유림 경영조직 형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직형태	현况과 문제점	改善方案	備 考
私有林 經營主 體組織 (Manager)	<p>私有林 協業經營體</p> <p>私有林 協業經營體 山林組合</p> <p>私有林 委託經營體(가칭) 〈林業經營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篤林家</li> <li>· 林業後繼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形態上 協業區域內 一定 山林을 委託經營하는 유 일한 委託經營體 性格 - 8개도 34개 協業體</li> <li>· 現在 不在山主 山林作業 代執行 및 協業系에서 일 부 委託經營性格 内포 - 17개군 44개 協業系</li> <li>· 현재 없음 - 洪川郡 委託經營人 事 例(不在山主 山林 1,000ha 經營)</li> <li>· 指定에 따른 實質的 支援 內容 未治 - 篤林家 減少趨勢</li> <li>· 初期段階 (1989년 실시: 89명) - 篤林家 育成과 支援內 容이 비슷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各 道別 示範協業經營體豆 育成</li> <li>· 山林組合의 委託經營體로서 役割必要(協業系 擴大)</li> <li>· 私有林委託經營會社(가칭) 또는 私有林營林署(가칭) 新設</li> <li>· 自立的 林業經營可能林家 育成</li> <li>· 農山村 定着意欲이 강한 農 林家 育成 - 農漁民後繼者 育成政策과 連繫</li> </ul>
林業勞 動組織 (Lab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山林組合 所 屬 民有林 作 業團</li> <li>· 協業經營體 所屬 協業作業 團</li> <li>· 其他 自生作 業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初期段階(1990년 실시: 20 개 作業團) - 裝備購入資金 支援</li> <li>· 協業經營指導所 11개 作 業團, 山林組合 協業系所 屬 17개 作業團 - 支援惠澤 없음</li> <li>· 木商組織 및 자체적으로 조직된 作業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財政的, 行政的 支援擴大</li> <li>· 民有林 作業團 支援政策과 連繫 實施</li> <li>· 作業團組織의 陽性化 및 支 援政策對象에 포함</li> </ul>

그림 5-5 私有林 經營 組織體系 改善方案



：私有林 經營主體(Manager)組織

: 林業勞動(Labour)組織

약·정리한 내용이 <표 5-8>이다, 표에서 살펴보면 사유림 경영주체 (manager) 조직은 크게 위탁경영체로의 육성과 임업경영인으로의 육성으로 나뉜다.

현재 위탁경영체로서는 사유림 협업경영체가 있으나 완전한 위탁경영체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군 산림조합에서 향후 위탁경영체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 이외에 실질적인 사유림 위탁경영체로서의 사유림 위탁경영회사(가칭) 또는 사유림 영림서<sup>2)</sup>(가칭) 등의 신설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독립가는 전업임가 육성차원에서, 그리고 임업후계자는 농산촌 정착가능한 농림가 육성차원에서 명확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업노동(labour) 조직은 전문 임업노동자 육성측면에서 실질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유림 경영조직 형태별 조직체계 개선방안을 도식화한 내용이 <그림 5-5>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유림 경영조직을 경영주체조직, 노동조직, 행정지원조직, 기술지도조직, 교육훈련조직으로 체계화하여 林業人の育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나. 임업경영인의 육성방안

##### ① 임업경영인 육성정책 개선사항: 설문조사 결과

향후 林業經營人 육성을 위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서 전체 設問調查 응답자의 53.9%가 林業經營 意慾과 農山村 定着 意思가 강한 대상자 선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林業 金融支援 擴大(16.2%), 山

2) 사유림 영림서(가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馬相圭, '사유림경영제도의 발전책' (上), (下). 농수축산신보, (1990. 5. 14), (1990. 5. 18) 참조.

林施業時 自律性 保障(11.3%), 行政機關의 協調(9.3%), 林業 教育機會 擴大(8.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5-9).

林業後繼者의 경우 林地購入資金 等의 金融支援 擴大에 대한 응답률(26.4%)이 비교적 높고, 業務擔當者의 경우 山林施業의 自律性 保障에 대한 응답률(26.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②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개선방향

임업경영인 육성정책 개선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私有林 經營의 實質적인 主體로서 林業經營 意識이 강하고 自立的 林業經營이 가능한 林家를 選別的 集中 育成
- ② 現行 篤林家 및 林業後繼者 育成政策의 경우 林業經營人 및 業務擔當者的 設問調查 結果 나타난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중심으로 育成方案 摸索

표 5-9 向後 林業經營人 育成을 위해 時急한 事項

單位:人, %

項 目	篤 林 家	林業後繼者	林業經營人 育成 業 務 擔 當 者	合 計
林業經營意慾과 農山村 定着意思가 강한 對象者選定	53 (52.5)	34 (64.2)	21 (46.7)	110 (53.9)
行政機關의 積極的인 支援	16 (15.8)	3 (5.7)	-	19 (9.3)
林地購入資金 等 金融 支援 擴大	12 (11.9)	14 (26.4)	7 (15.6)	33 (16.2)
先進地 見學 等 林業 教育 機會擴大	9 (8.9)	2 (3.8)	5 (11.1)	18 (8.8)
營林計劃 編成등 山林 施業時 自律性 最大限 保障	10 (9.9)	-	12 (26.7)	23 (11.3)
其 他	1 (1.0)	-	-	1 (0.5)
合 計	101 (100.0)	53 (100.0)	45 (100.0)	204 (100.0)

### [3] 독립가 육성방안

#### 1) 독립가 지정대상자의 선별적 육성

林業經營 意識이 강하고 自立的 林業經營이 가능한 專業林家 육성측면에서 실제 林業經營을 담당하는 中·大規模 所在山主를 주 육성대상으로, 中·大規模 不在山主를 부차적 육성대상으로 하여 육성한다.

#### 2) 독립가 지정에 따른 집중적인 지원시책

독립가 지정대상자로 선별된 독립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① 專業林家로서 성립 가능하도록 林業 經營規模 擴大를 위한 林地 購入資金, 生產性 增大를 위한 機械購入資金 등의 林業金融 擴大 및 長期低利融資

② 營林計劃 編成, 造林 및 育林段階의 施業自律性 뿐만 아니라 伐採時 賣木調查 省略, 許可節次의 簡素化 등 伐採費用 節減을 위한 林業經營의 自律性 保障

③ 특히, 伐採 후 商品化된 篤林家 生產木材의 販路 確保 및 價格情報 提供 등 流通支援體制 強化

④ 篤林家 林業經營 林地의 경우 土地綜合保有稅 免除, 相續稅 및 財產稅 減免 惠澤, 林地賣買證明의 省略 등 間接的인 林業稅制 支援

⑤ 林業經營技術 習得을 위한 林業教育訓練 實施 및 林業研修機會 擴大

### [4] 임업후계자 육성방안

#### 1) 임업후계자 지정대상자의 범위 확대

農山村 定着意思가 강하고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農林家 육성측면에서 林業後繼者 指定對象者를 일정규모 이상의 山林所有者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用材生產事業, 林產副產物 生產事業, 農林業

兼業事業, 專門 林業勞動 等의 從事者도 포함하도록 확대가 필요하다.

### 2) 임업후계자 유형별 육성방안

임업후계자들의 각각에 대한 재정적, 기술 및 행정적 지원도 후계자들의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표 5-10).

### 3) 임업후계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검토

현행 ‘山林開發基金’의 林業後繼者에 대한 融資條件은 1人當 限度額이 1,000만원으로 年利 3%의 利子率과 3년 거치 7년 分割 償還의 融資期間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基金의 규모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林業後繼者에 대한 財源調達方法으로써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의 支援對象에 林業分野를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5-10 임업후계자 類型別 支援方案

林業後繼者의 類型	支 援 方 案
用材生產後繼者 (篤林家子女後繼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營林計劃 編成, 造林 및 育林, 伐採 등 山林施業 및 林業經營의 自律性 賦與</li> <li>- 山林施業技術 및 林業經營教育訓練 實施</li> <li>- 長期低利 木材生產 金融支援</li> <li>- 林業經營林地의 相續稅 免除 등 林業稅制 支援</li> </ul>
林產副產物(豆) 生產 後繼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林產副產物 生產技術 指導</li> <li>- 短期 林產副產物 生產金融 支援</li> <li>- 林產副產物 販路確保 및 各種 流通情報 提供</li> </ul>
農林業 兼業 後繼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藥草栽培 등 農林業 兼業 所得增大方案 講究</li> <li>- 農閑期 副業的 林業所得增大 技術教育 實施</li> </ul>
專門林業勞動從事後繼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長期低利 林地購入資金 및 短期 林產副產物 生產資金 支援</li> <li>- 林產副產物 生產技術 指導 및 林業經營教育訓練 實施</li> </ul>

#### 4) 임업후계자에 대한 1인당 응자규모의 확대

林業後繼者에 대한 1人當 融資限度額의 適正水準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37.5%가 3,000만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2,000만원(30.8%), 1,500만원(17.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11〉.

한편, 현행 규정상 1인당 融資限度額 1,0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임업후계자에 대한 적정한 응자조건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의 融資期間을 아래와 같은 農漁民後繼者 支援 融資條件 및 一般 山林事業의 融資條件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 ① 農漁民後繼者 支援 農地購入資金: 2년 거치 18년 상환
- ② 一般 山林事業 造林(長期樹) 資金: 15년 거치 20년 상환
- ③ 一般 山林事業 造林(其他 樹種) 資金: 10년 거치 5년 상환

표 5-11 林業後繼者에 대한 適正 融資規模

單位:人, %

項 目	林業後繼者	林業後繼者育成業務擔當者	合 計
1,000萬원	5 (9.4)	5 (9.8)	10 (9.6)
1,500萬원	8 (15.1)	10 (19.6)	18 (17.3)
2,000萬원	12 (22.6)	20 (39.2)	32 (30.8)
3,000萬원	26 (49.1)	13 (25.5)	39 (37.5)
其 他	2 (3.8)	3 (5.9)	5 (4.8)
合 計	53 (100.0)	51 (100.0)	104 (100.0)

設問調査 結果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범위에서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33.3%가 10년 거치 20년 상환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행 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12)。

#### 6) 임업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대출방법 개선

林業後繼者에 대한 融資金 貸出方法으로써 현행처럼 사업에 대한 融資方法과 함께, 對人信用貸出을 병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6.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

표 5-12 林業後繼者에 대한 適正 融資條件

單位:人, %

項 目	林業後繼者	林業後繼者育成 業務擔當者	合 計
• 現行 條件	1	5	6
(3년 거치7년 상환)	(1.9)	(9.8)	(5.7)
• 5년 거치,	6	11	17
10년 상환	(11.1)	(21.6)	(16.2)
• 5년 거치,	13	7	20
15년 상환	(24.1)	(13.7)	(19.1)
• 10년 거치,	14	8	22
10년 상환	(25.9)	(15.7)	(21.0)
• 10년 거치,	17	18	35
20년 상환	(31.5)	(35.3)	(33.3)
• 其 他	3	2	5
	(5.6)	(3.9)	(4.8)
合 計	54	51	105
	(100.0)	(100.0)	(100.0)

## 7) 임업후계자 교육훈련 강화

## ① 現行 教育訓練 機關

- 林業研修院- 林業識 公務員 및 林業指導士 教育(理論 및 精神教育 中心)
- 林業機械訓練院- 林業勞動者 및 作業團 教育(技術 및 實技教育 中心)

## ② 林業後繼者 養成 教育訓練 強化

첫째, 既存 林業 教育訓練 機關인 林業研修院과 林業機械訓練院에 林業後繼者 各 類型別 教育訓練 課程을 體系的으로 포함한다.

둘째, 農高, 農專, 農大의 林學科와 連繫하여 林業後繼者 養成 教育 을 實施한다.

## 8) 임업후계자의 사후관리방안

## ① 林業後繼者の 自律的 모임이나 組織을 育成

표 5-13 林業後繼者에 대한 融資金 貸出方法

單位 : 人, %

項 目	林業後繼者	林業後繼者育成 業務擔當者	合 計
現行대로 事業에 대한 融資	6 (11.1)	14 (27.5)	20 (19.1)
個人에 대한 無擔保 對人信用貸出	18 (33.3)	5 (9.8)	23 (21.9)
事業에 대한 融資와 對人信用貸出 累用	28 (51.9)	31 (60.8)	59 (56.2)
其 他	2 (3.7)	1 (2.0)	3 (2.9)
合 計	54 (100.0)	51 (100.0)	105 (100.0)

- ② 定期的인 研修教育 實施
- ③ 最新 技術情報, 市場流通情報 등 刊行物 提供
- ④ 林業後繼者 婦人教育 實施
- ⑤ 林業後繼者 專擔指導士制度을 採擇하여 事後管理體制를 確立

#### 다. 임업노동의 육성방안

##### ① 임업노동자 육성정책 개선사항: 설문조사 결과

향후 林業勞動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써 각종 安全事故對策(37.3%), 月平均 適正 所得水準의 保障(28.2%),  
事業單費의 現實化 등 各種 行政的 支援(20.6%), 그리고 子女  
教育對策 및 老後對策(13.9%)의 순으로 응답했다(표 5-14)。

특히 林業勞動者들의 경우, 安全裝備 支給 등 各種 安全事故對策  
(45.6%), 月平均 適正 林業勞動 所得의 保障(22.8%)의 순으로 응답  
한 데 비해,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의 경우에는 月平均 適正 所得의  
保障(45.8%), 山林 事業單費의 現實化 등 各種 行政的 支援(37.3%)  
의 순으로 응답하여 주목된다.

이는 실제로 作業現場에서 고되고 위험한 山林作業을 수행하고 있는  
林業勞動者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安全裝備 支給 및 產業災害保險 加入  
등의 각종 安全事故對策과 적정한 林業勞動 所得 保障對策이 시급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의 개선방향

우리 나라의 현재 林業勞動者 問題는 林業 自體만의 문제가 아니라 農山村 人口流出에 의한 勞動力 不足 및 賃金 上昇趨勢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互視的인 觀點에서 農山村 勞動力 育成을 위한 直·間接의 정책과 병용하여 林業 內部의 勞動者 育成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林業勞動者 育成의 基本方向을 크게 勞動條件의 改善, 屉傭의 安定化, 社會保障 擴充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現行 山林作業團 育成政策의 경우 作業團員 및 業務擔當者 調查上 나타난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중심으로 育成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③ 산림작업단 육성방안

### 1) 산림작업단 조직체계의 정비 및 체계적인 육성

표 5-14 向後 林業勞動者 育成을 위해 時急한 改善事項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 計
安全裝備支給 등 각종 安全事故對策	32 (50.8)	21 (38.2)	35 (46.7)	6 (10.2)	94 (37.3)
月平均 適正所得의 保障	14 (22.2)	16 (29.1)	14 (18.7)	27 (45.8)	71 (28.2)
事業單費의 現實化 등 각종 行政的 支援	9 (14.3)	8 (14.6)	13 (17.3)	22 (37.3)	52 (20.6)
子女學資金 補助 등 子女教育對策	3 (4.8)	7 (12.7)	8 (10.7)	2 (3.4)	20 (7.9)
退職金共濟制度 등 老 後對策	5 (7.9)	3 (5.5)	5 (6.7)	2 (3.4)	15 (6.0)
合 計	63 (100.0)	55 (100.0)	75 (100.0)	59 (100.0)	252 (100.0)

### (가) 산림작업단 조직체계의 정비

현재 山林作業團의 경우 山組所屬의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所屬의 協業體 作業團, 일부 郡廳所屬의 機動作業團, 기타 木商所屬의 自生作業團 등으로 多元化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支援惠澤은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의 경우에만 約 2,000만원 정도의 裝備購入資金이 주어졌을 뿐, 기타 作業團의 경우 支援政策의 範疇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山林作業團 組織을 行政組織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陽性化된 組織에 대해 運營上의 資金 및 行政的 支援과 事後 管理側面에서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現在 所屬이 불명확하여 山林作業團 育成政策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木商所屬의 自生作業團 및 個別 林業勞動者에 대해서는 山林組合 所屬의 民有林 作業團 형태로 적극적인 흡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山林作業團의 바람직한 所屬 形態로서 전체 응답자의 41.9% 가 郡 山林組合 所屬 形態를 응답하여 주목된다(표 5-15).

표 5-15 山林作業團의 바람직한 所屬 形態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 計
郡廳山林課 所屬	28 (42.0)	6 (11.5)	17 (21.0)	2 (3.3)	53 (20.4)
郡山林組合 所屬	24 (36.0)	1 (1.9)	39 (48.1)	45 (75.0)	109 (41.9)
協業經營體 所屬	4 (6.0)	36 (69.2)	5 (6.2)	8 (13.3)	53 (20.4)
委託林業經營會社(가칭) 所屬	4 (6.0)	1 (1.9)	7 (8.6)	4 (6.7)	16 (6.2)
獨立된 法人體	7 (10.0)	8 (15.4)	13 (16.0)	1 (1.7)	29 (11.2)
合 計	67 (100.0)	52 (100.0)	81 (100.0)	60 (100.0)	260 (100.0)

## (나) 산림작업단의 형태에 따른 체계적 육성

- － 專業 山林作業團 : 青壯年層, 專業 山林作業이 가능한 組織體(複雜勞動 作業 遂行)
- 〈支援方案〉 : 年中 事業物量 確保  
 勤勞基準法 적용 등 職業意識 鼓吹  
 勞務管理制度 導入  
 退職金 및 社會保障制度 導入  
 專門 技術教育 實施
- － 兼業 山林作業團 : 老齡層, 兼業 山林作業이 可能한 組織體(單純勞動 作業 遂行)
- 〈支援方案〉 : 農閑期 事業物量 確保  
 兼業 技術教育 實施

## (다) 한 개 산림작업단의 적정 조직규모 및 적정 인원

한 개 山林作業團의 組織規模는 각 地域의 林業與件 및 山林作業 物量이 각기 다르므로, 現行처럼 1개 郡當 1개 作業團의 劃一的 規程보다는 地域 實情에 맞는 적절한 組織規模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5-16)。

표 5-16 山林作業團의 適正한 組織規模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 計
· 1개 里當 1개 作業團	4 (6.1)	-	7 (8.6)	-	11 (4.2)
· 1개 面當 1개 作業團	16 (24.2)	19 (33.9)	17 (21.0)	10 (16.7)	62 (23.6)
· 1개 郡當 1개 作業團	22 (33.3)	13 (23.2)	20 (24.7)	22 (36.7)	77 (29.3)
· 地域實情에 맞게 任意로	19 (28.8)	23 (41.1)	36 (44.4)	26 (43.3)	104 (39.5)
· 기타	5 (7.6)	1 (1.8)	1 (1.2)	2 (3.3)	9 (3.4)
合 計	66 (100.0)	56 (100.0)	81 (100.0)	60 (100.0)	263 (100.0)

각 地域別 適正 組織規模에 比例하여 한 개 作業團의 適正 人員도 現行 처럼 15인으로 指定하는 것보다는 地域實情에 따라 5~15인의 範圍내에서 自律的으로 組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7)。

## 2) 월평균 적정 임업노동 소득 확보방안

$$\cdot \text{Max } Y = W \uparrow \times Q \uparrow$$

단, Y : 林業勞動 所得

W : 山林作業 單費 (林業勞動 勞賃)

Q : 山林作業 物量

### (가) 산림작업 단비의 현실화

林業勞動의 苦痛度, 山林作業의 惡條件 이외에 附加的으로 요구되는 林業勞動의 專門性(특히 育林 및 伐採過程)을 감안한 單費의 現實化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표 5-18)。

표 5-17 한 개 山林作業團의 適正 人員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 計
5~10명	27 (40.3)	37 (66.1)	30 (36.1)	18 (30.0)	112 (42.1)
11~15	30 (44.8)	18 (32.1)	38 (45.8)	36 (60.0)	122 (45.9)
16~20	7 (10.4)	1 (1.8)	9 (10.8)	5 (8.3)	22 (8.3)
20명 이상	3 (4.5)	-	6 (7.2)	1 (1.7)	10 (3.8)
合 計	67 (100.0)	56 (100.0)	83 (100.0)	60 (100.0)	266 (100.0)

특히 一般人夫賃 單價의 引上은 政府 豫算部處의 전체 賃金引上과 연결된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山林作業의 特性을 감안한 複雜勞動의 경우, 즉 間伐, 伐採, 가지치기 作業 등의 경우에는 特殊人夫賃 單價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民有林 作業團의 경우 一般人夫賃 8,600원이 적용되고 있으나, 營林署 技能人 作業團의 경우 特殊人夫賃 12,870원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의해 민유림 작업단도 특수인부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연중 작업가능한 산림작업 물량의 확보

市·郡 行政機關에서는 3월~10월사이에 集中配定되는 山林作業 物量을 山林作業團에게 年中 均等施業이 가능하도록 안배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간벌, 택벌, 천연림 보육사업 등은 동절기에도 시행가능하도록 하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農閑期(12월~2월)에 山林作業團이 높은 노임을 취득할 수 있는 伐採作業 參與機會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管內 樹種更新, 被害木 伐採, 主伐 등의 伐採作業 物量을 作業團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표 5-18 임업노동 종류별 현실노임

林業勞動의 種類	政策單費	現實勞賃
單純勞動: 造林作業 下刈作業	8,600원 (一般人夫賃)	15,000원 水準 (女子 基準)
複雜勞動: 間伐作業 伐採作業 天然林保育 가지치기	12,870원 (特殊人夫賃)	25,000원 水準 (男子 基準)

## (다) 월평균 적정 임업노동 소득의 보장

山林作業團員들의 月平均 適正 林業勞動 所得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6%가 40~6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응답했다(표 5-19)。

現行 山林作業團의 경우 政府補助 山林事業 수행에 따른 賃金支給 시기가 事業完了 후에 정산됨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천연림 치수 가꾸기 보조사업의 경우 연 중 임금정산 시기가 6월, 12월 2회 뿐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한 수입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山林開發基金 중에서 “技能人 支援資金(案)”등의 事業項目을 신설하여 作業團에 대한 賃金滯拂時 매월 一定 月給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9 山林作業團員들의 月平均 適正 林業勞動 所得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 計
20~30만원	7 (10.5)	7 (12.3)	11 (13.6)	-	25 (9.5)
30~40	7 (10.5)	5 (8.9)	8 (9.9)	14 (23.7)	34 (12.9)
40~50	10 (14.9)	13 (23.2)	12 (14.8)	33 (55.9)	68 (25.9)
50~60	24 (35.8)	16 (28.6)	26 (32.1)	12 (20.4)	78 (29.7)
60만원 이상	19 (28.4)	15 (26.8)	24 (29.6)	-	58 (22.1)
合 計	67 (100.0)	56 (100.0)	81 (100.0)	59 (100.0)	263 (100.0)

## (라) 합리적인 임금지불 형태

林業勞動은 作業面積이 廣大하고 作業監督이 곤란한 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完全月給制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합리적인 임금지불 형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0.9%가 월기본급 + 능률급제를 응답하고 있어, 山林作業團의 경우 月基本級制 + 能率級制 方法의 적용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표 5-20>.

## 3) 각종 안전사고대책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山林作業을 행하는 作業團의 경우 가장 시급한 改善事項이 各種 安全事故에 대한 대책이다.

安全事故對策에는 產業災害保險 加入(48.3%), 安全服·安全帽·安全靴 등 各種 安全裝備 支給(18.4%), 危險手當의 新設(17.4%), 醫療

표 5-20 山林作業團에 대한 合理的인 賃金支拂 形態

單位:人, %

項目	山組 所屬 民有林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山林作業團 業務擔當者	合計
完全月給制	21 (31.8)	14 (26.4)	25 (30.9)	9 (15.3)	69 (26.6)
完全能率給制	8 (12.1)	-	4 (4.9)	3 (5.1)	15 (5.8)
月基本給 + 能率給制	19 (28.8)	22 (41.5)	25 (30.9)	40 (67.8)	106 (40.9)
都給制	12 (18.2)	10 (18.9)	8 (9.9)	7 (11.9)	37 (14.3)
日當制	6 (9.1)	7 (13.2)	19 (23.4)	-	32 (12.4)
合計	66 (100.0)	53 (100.0)	81 (100.0)	59 (100.0)	259 (100.0)

保險加入(7.5%), 安全事故豫防教育의 實施(6.0%) 등의 方法이 있다(표 5-21).

勞動者 災害保險은 雇傭中의 負傷에 대해서는 醫療費用과 收入喪失에 대한 보호를 받고, 동시에 雇傭中 負傷에 기인한 労動者 死亡의 경우 遺族保護를 규정한 내용이다. 日本 및 다수 유럽諸國에서는 保險料를 전부 雇傭主에게 부담시키는 強制災害保險制度가 國家的 規模로서 法制化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全北 山林組合中央會 道支部의 “退役給與 및 災害補償共濟會 約款(林業技能作業團)”의 내용에 災害補償이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부록 1 참조).

#### 4) 기타 산림작업단 육성방안

(가) 강릉 林業機械訓練院 등을 통한 基本 林業 技術教育 및 巡迴 教育訓練 強化

표 5-21 山林作業 遂行時 가장 時急한 安全對策

單位:人, %

項 目	山組 所屬 民有林作業團	協業體所屬 協業作業團	其他自生 作業團	合 計
· 安全裝備 支給	6 (9.2)	5 (8.9)	26 (32.5)	37 (18.4)
· 安全事故 防止 教育 實施	2 (3.1)	4 (7.1)	6 (7.5)	12 (6.0)
· 產業災害保險加入	42 (64.6)	25 (44.6)	30 (37.5)	97 (48.3)
· 醫療保險 加入	5 (7.7)	4 (7.1)	6 (7.5)	15 (7.5)
· 危險手當 新設	10 (15.4)	16 (28.6)	9 (11.3)	35 (17.4)
· 其 他	-	2 (3.6)	3 (3.7)	5 (2.5)
合 計	65 (100.0)	56 (100.0)	80 (100.0)	201 (100.0)

- ① 作業團長의 경우 山林作業의 總括 監督이 가능하도록 脱도 教育 訓練 課程 新設
  - ② 作業團 教科課程 中 伐採 等 專門 技術教育, 機械裝備 利用 및 機械整備 技術教育 強化
- (나) 스스로 자생 가능한 作業團의 경우 私有林 委託 經營主體와 直接 山林作業 契約締結이 가능하도록 法人格 賦與方案 모색
- (다) 先進 林業國에서 시행중인 失業保險制度, 健康保險制度, 年金共濟 및 退職金 共濟制度 등 기타 社會保障 擴充方案 검토
- (라) 其他 子女學資金 補助, 油類貸·宿泊施設 등의 運營裝備 支給, 技能士資格證 所持者에 대한 兵役特例 및 昇進機會 提供 등에 의한 作業團의 士氣 賦與 및 지속적인 事後管理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1) 본연구에서는 전체 산림의 72%를 점하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미래 임업을 담당할 중요한 주체로서 임업경영인과 임업노동자를 포괄하는 임업인의 육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2) 우리 나라의 사유림은 전체 면적의 83.2%가 Ⅱ영급 이하로 구성된 育林期이므로, 실제 육림사업의 담당자인 林業人 育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영세 산주의 사유림 경영유도를 위한 위탁경영체 및 임업경영인 육성이 시급하며, 사유림 경영을 실제 담당할 손(手)으로서 전문 임업노동자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

(3)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에는 독립가 육성정책, 임업후계자 육성정책, 그리고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이 검토되었다. 독립가의 경우 1972년 최초로 지정되어 1989년 현재 471명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인하여 1982년 572명이후 매년 2% 이상씩 감소추세에 있다.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의 경우 1989년에 시작되어 현재 89명의 임업후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로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은 1990년에 시작되어 현재 8개도, 20개 작업단, 300명의 작업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작업단 운영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단계이다.

(4)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가 106명, 임업후계자 54명, 기타 산주 7명과 군청 산림과 공무원 15명, 군 산림조합 지도원 3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의 내용은 크게 임업경영인의 일반 개황〈부표 I-1 ~ I-5〉, 임업경영 의식 및 경영 실태〈부표 I-6 ~ I-17〉, 임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수용 실태〈부표 I-18 ~ I-23〉의 3가지로 분류된다.

(5) 임업노동자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민유림 작업단원 67명, 협업체 작업단원 56명, 기타 자생 작업단원 84명, 그리고 산림작업단 업무담당자 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임업노동자의 일반 개황〈부표 II-1 ~ II-5〉, 임업노동자의 노동 실태〈부표 II-6 ~ II-9〉, 산림 작업단의 운영 실태〈부표 II-10 ~ II-20〉, 그리고 산림작업단 육성정책 수용 실태의 4가지로 분류하여 임업노동의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6) 미래 바람직한 임업경영인 육성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첫째로, 임업경영인의 규명을 위한 산주 구분지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로 구분지표에 따른 산주 유형 구분과 유형별 육성방향을 제시한 다음, 셋째로 임업경영인 육성의 의의와 임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변수들을 체계화하였다.

그 결과 임업경영인 육성은 직접적으로 임업구조 개선, 자본재 공급의 원활화, 인력개발 등과 관련되어 있고, 간접적으로는 가격정책 및 유통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7) 향후 바람직한 임업노동의 육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첫째로, 임업노동이 농업노동 등과 다른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로 임업의 특성에 기인한 임업노동의 문제점과 육성방향을 검토한 다음, 셋째로 2000년대 전문 임업노동자의 수급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사유림 시업면적 355만 ha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간 총 임업노동자수는 代案 I (전업노동 250人/ha 기준)의 경우 연간 25,560명의 일반노동자 또는 13,175명의 영농기능인이, 그리고

代案Ⅱ(전업노동 150日/人 기준)의 경우 연간 42,600명의 일반노동자 또는 21,959명의 영림기동인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8)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산주 중심의 사유림 조직체계에서, 향후 임업 경영주체와 임업노동자가 연계된 조직체계로의 개선이 선결요건이다.

우선 사유림 경영주체(manager) 조직은 크게 위탁경영체로의 육성과 임업경영인으로의 육성으로 나뉜다. 현행 사유림 협업경영체가 형태상 위탁경영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시·군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사유림 위탁경영회사(가칭) 및 사유림 영림서(가칭) 등의 신설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임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독립가는 자립적 임업경영이 가능한 전업임가 육성측면에서, 그리고 임업후계자는 농산촌 정착가능한 농림가 육성측면에서 명확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업노동(labour) 조직은 전문 임업노동자 육성측면에서 실질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사유림 경영 조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5-5 참조).

(9) 임업경영인의 육성방안은 설문조사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임업경영인 육성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접근되었다. 독립가 육성방안은 지정 대상자의 선별적 집중지원 측면에서 강구되었다.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은 지정대상자의 범위 확대, 유형별 육성, 재정지원 및 융자규모 확대, 융자조건 개선, 대출방법 개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해 검토되었다.

(10) 임업노동의 육성방안은 임업노동자 및 업무담당자의 설문조사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임업노동자 육성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현행 산림작업단 육성방안은 크게 산림작업단 조직체계의 정비, 월평균 적정 임업노동 소득 확보방안, 각종 안전사

고 대책, 그리고 기타 산림작업단 육성방안의 4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되었다.

첫째로, 산림작업단 조직체계의 정비방안으로서 산림작업단의 바람직한 소속 형태, 작업단의 형태에 따른 육성, 작업단의 적정 조직규모 및 적정 인원 등이 분석되었다.

둘째로, 월평균 적정 소득의 확보방안으로서는 산림작업 단비의 현실화, 연중 작업가능한 산림작업 물량의 확보, 월평균 적정 임업노동 소득의 보장, 합리적인 임금지불 형태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로, 각종 안전사고대책으로서 산업재해보험, 안전장비 지급, 위험수당 신설 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기타 산림작업단 육성방안으로서 임업 교육훈련 강화, 작업단의 법인격 부여 방안, 사회보장 확충 방안, 그리고 작업단의 사기부여책 및 사후관리 등을 모색하였다.

(11) 지금까지 살펴본 바, 우리 나라 사유림은 조림단계에서 육림단계로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향후 수확단계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실질적 경영주체인 임업경영인과 산림작업 담당자인 전문 임업노동자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래 새로운 임업의 창출은 이들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 여하에 달려 있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부표 I-1 林業經營人의 年齡 構成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29세 이하	-	10 (18.5)	-	10 (6.1)
30~39세	2 (1.9)	35 (64.8)	-	37 (22.4)
40~49세	14 (13.5)	7 (13.0)	1 (14.3)	22 (13.3)
50~59세	36 (34.6)	2 (3.7)	4 (57.1)	42 (25.5)
60세 이상	52 (50.0)	-	2 (28.6)	54 (32.7)
合計	104 (100.0)	54 (100.0)	7 (100.0)	165 (100.0)

부표 I-2 林業經營人의 學歷 構成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無學	-	-	-	-
國卒以下	5 (4.9)	1 (1.9)	-	6 (3.7)
中卒以下	16 (15.5)	9 (16.7)	2 (28.6)	27 (16.5)
高卒以下	31 (30.1)	26 (48.2)	4 (57.1)	61 (37.2)
大卒以上	51 (49.5)	18 (33.3)	1 (14.3)	70 (42.7)
合計	103 (100.0)	54 (100.0)	7 (100.0)	164 (100.0)

부표 I-3 林業經營人의 職業 構成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농업	17 (16.2)	25 (46.3)	2 (28.6)	44 (26.5)
임업	37 (35.2)	20 (37.0)	1 (14.3)	58 (34.9)
상업	14 (13.3)	4 (7.4)	2 (28.6)	20 (12.1)
공업	5 (4.8)	-	-	5 (3.0)
회사원	9 (8.6)	2 (3.7)	1 (14.3)	12 (7.2)
유관단체 임직원	3 (2.9)	1 (1.9)	-	4 (2.4)
자유업	11 (10.5)	1 (1.9)	-	12 (7.2)
기타	9 (8.6)	1 (1.9)	1 (14.3)	11 (6.6)
合計	105 (100.0)	54 (100.0)	7 (100.0)	166 (100.0)

부표 I-4 林業經營人의 總扶養家族數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없음	-	3 (5.6)	-	3 (1.8)
1~2명	15 (14.2)	5 (9.3)	1 (14.3)	21 (12.6)
3~4명	33 (31.1)	21 (38.9)	2 (28.6)	56 (33.5)
5명 이상	58 (54.7)	25 (46.2)	4 (57.1)	87 (52.1)
合計	106 (100.0)	54 (100.0)	7 (100.0)	167 (100.0)

부표 I-5 임업경영인의 경지 및 임야 소유현황

單位:ha, 평, %, 인

	독립가(C)	임업후계자(D)	기타산주	전 체	D/C
평균임야소유면적(A)	267.5	70.6	119.0	197.0	26.4
평균인공조림면적(B)	140.0	42.6	30.8	106.2	30.4
畠面積	4,149	3,244	3,200	3,790	78.2
田面積	7,645	3,662	4,200	6,093	47.9
인공조림률(B/A)	52.3	60.3	25.9	53.9	-
총 응답자 수	103	54	7	164	-

부표 I-6 林業經營人의 林野 所有動機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상속	15 (14.2)	23 (43.4)	2 (33.3)	40 (24.3)
구입	66 (62.3)	9 (17.0)	3 (50.0)	78 (47.3)
일부상속 및 일부구입	19 (17.9)	17 (32.1)	-	36 (21.8)
분수대부림	5 (4.7)	2 (3.8)	-	7 (4.2)
기타	1 (0.9)	2 (3.8)	1 (16.7)	4 (2.4)
합계	106 (100.0)	53 (100.0)	6 (100.0)	165 (100.0)

부표 I-7 林業經營人의 林野 購入目的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墳墓用地	3 (3.0)	1 (2.5)	-	4 (2.7)
地價上昇 期待	-	1 (2.5)	1 (16.7)	2 (1.4)
林業經營	94 (94.0)	27 (67.5)	5 (83.3)	126 (86.3)
農用地利用 (草地 墓開墾)	-	7 (17.5)	-	7 (4.8)
其 他	3 (3.0)	4 (10.0)	-	7 (4.8)
合計	100 (100.0)	40 (100.0)	6 (100.0)	146 (100.0)

부표 I-8 향후 林野 所有規模 擴大 意向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擴大意向	15 (14.2)	37 (71.2)	1 (14.2)	53 (32.1)
現在 規模 量維持	57 (53.8)	12 (23.0)	3 (42.9)	72 (43.6)
縮小意向	34 (32.1)	3 (5.8)	3 (42.9)	40 (24.3)
合計	106 (100.0)	52 (100.0)	7 (100.0)	165 (100.0)

부표 I-9 林野 所有規模 擴大 用途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木材 生産(林業經營)用地	24 (49.1)	20 (50.0)	-	44 (48.4)
林產物(豆豆 药草)栽培用地	6 (12.2)	12 (30.0)	2 (100.0)	20 (22.0)
農用 地 (草地 및 開墾)	8 (16.3)	6 (15.0)	-	14 (15.4)
財產 增殖用	1 (2.0)	1 (2.5)	-	2 (2.2)
其 他	10 (20.4)	1 (2.5)	-	11 (12.1)
合計	49 (100.0)	40 (100.0)	2 (100.0)	91 (100.0)

부표 I-10 向後 林野 所有規模 縮小 理由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林業經營의 낮은 收益性으로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47 (75.8)	12 (66.7)	5 (83.3)	64 (74.4)
林業勞動力 不足 및 經營을 담당할 後繼者가 없기 때문에	8 (12.9)	2 (11.1)	-	10 (11.6)
林野 매각자금을 他用途로 活用하기 위해서	5 (8.1)	1 (5.6)	-	6 (7.0)
其　　他	2 (3.2)	3 (16.7)	1 (16.7)	6 (7.0)
合　　計	62 (100.0)	18 (100.0)	6 (100.0)	86 (100.0)

부표 I-11 委託林業經營團體(가칭)에 대한 林業經營 委託 意向

單位: 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있　　다	40 (39.2)	19 (37.3)	2 (28.6)	61 (38.1)
없　　다	48 (47.1)	23 (45.1)	3 (42.9)	74 (46.3)
모르겠다	13 (12.8)	4 (7.8)	2 (28.6)	19 (11.9)
其　　他	1 (1.0)	5 (9.8)	-	6 (3.8)
合　　計	102 (100.0)	51 (100.0)	7 (100.0)	160 (100.0)

부표 I-12 現在 林業經營의 가장 큰 隘路事項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林業勞動力不足	68 (66.0)	20 (37.7)	2 (33.3)	90 (55.6)
林業經營技術不足	3 (2.9)	1 (1.9)	-	4 (2.5)
林業經營資金不足	14 (13.6)	20 (37.7)	-	34 (21.0)
林業經營規模의 零細性	6 (5.8)	7 (13.2)	2 (33.3)	15 (9.3)
行政許可節次의 複雜性	8 (7.8)	5 (9.4)	1 (16.7)	14 (8.6)
其 他	4 (3.9)	-	1 (16.7)	5 (3.1)
合 計	103 (100.0)	53 (100.0)	6 (100.0)	162 (100.0)

부표 I-13 現在 林業勞動力의 問題點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林業勞動者의 不足現象	51 (49.5)	23 (43.4)	1 (16.7)	75 (46.3)
林業勞動力의 婦女化 및 高齡化	14 (13.6)	7 (13.2)	-	21 (13.0)
專門的의 林業勞動 技術者 不足	8 (7.8)	2 (3.8)	1 (16.7)	11 (6.8)
林業勞動勞賃의 上昇	27 (26.2)	21 (39.6)	3 (50.0)	51 (31.5)
其 他	3 (2.9)	-	1 (16.7)	4 (2.5)
合 計	103 (100.0)	53 (100.0)	6 (100.0)	162 (100.0)

부표 I - 14 現在 林業經營人에게 가장 不足한 技術分野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造林技術	10 (10.8)	3 (6.0)	-	13 (8.7)
育林技術	14 (15.1)	10 (20.0)	-	24 (16.1)
伐採技術	9 (9.7)	5 (10.0)	-	14 (9.4)
營林計劃編成 및 林業經營技術	50 (53.8)	28 (56.0)	5 (83.3)	83 (55.7)
其 他	10 (10.8)	4 (8.0)	1 (16.7)	15 (10.1)
合 計	93 (100.0)	50 (100.0)	6 (100.0)	149 (100.0)

부표 I - 15 현재 임업경영인에게 시급한 자금지원 분야

單位:인,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임도시설 및 임산물 생산자금	36( 36.0)	23( 43.4)	2( 40.0)	61( 38.6)
육림 및 별채자금	44( 44.0)	7( 13.2)	2( 40.0)	53( 33.5)
양묘 및 조림자금	15( 15.0)	5( 9.4)	-	20( 12.7)
임지구입 및 임업후계자 자금	5( 5.0)	17( 32.1)	1( 20.0)	23( 14.6)
기 타	-	1( 1.9)	-	1( 0.6)
合 計	100(100.0)	53(100.0)	5(100.0)	158(100.0)

부표 I - 16 임업경영인의 산림작업별 시행률

單位: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지존작업	85.6	60.4	57.1	76.2
묘목 식재작업	75.0	75.5	71.4	75.0
보식작업	78.9	60.4	42.9	71.3
풀베기 작업	96.2	90.6	85.7	93.9
추비 작업	83.7	71.7	71.4	79.3
덩쿨 제거작업	89.4	79.3	85.7	86.0
가지치기 작업	77.9	73.6	71.4	76.2
치수 가꾸기작업	74.0	54.7	57.1	67.1
지장목 제거작업	79.8	58.5	71.4	72.6
천연림 보육작업	60.6	43.4	42.9	54.3
방제 (수간주사) 작업	13.5	15.1	-	13.4
간벌 작업	87.5	71.7	57.1	81.1
벌채 (주벌) 작업	53.9	66.0	71.4	58.5
임도개설작업	66.4	52.8	28.6	60.4
총 응답자수	인	104	53	7
	%	(100.0)	(100.0)	(100.0)

부표 I - 17 임업경영인의 임업기계 보유율

單位: 인, %

	篤林家	林業後繼者	其他山主	合計
가지치기 톱	52( 50.0)	21( 38.9)	1( 14.3)	74( 44.9)
육 림 용 낫	63( 60.6)	22( 40.7)	2( 28.6)	87( 52.7)
기 계 톱	77( 74.0)	36( 66.7)	6( 85.7)	119( 72.1)
예 불 기	24( 23.1)	14( 25.9)	1( 14.3)	39( 23.6)
집 재 기	4( 3.9)	2( 3.7)	-	6( 3.6)
운반용 차량	35( 33.7)	20( 37.0)	1( 14.3)	56( 33.9)
기 타	13( 12.5)	5( 9.3)	-	18( 10.9)
총 응답자수	104(100.0)	54(100.0)	7(100.0)	165(100.0)

부표 I-18 林業經營人의 指定動機

單位:人, %

	篤林家	林業後繼者	合計
行政官廳(郡) 推薦	71( 71.0)	29( 53.7)	100( 64.9)
山林組合 推薦	8( 8.0)	2( 3.7)	10( 6.5)
스스로 希望	21( 21.0)	22( 40.7)	43( 27.9)
其 他	-	1( 1.9)	1( 0.6)
合 計	100(100.0)	54(100.0)	154(100.0)

부표 I-19 篤林家의 年次的인 減少 理由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合計
指定에 따른 實質的 惠澤 未洽	2 (15.4)	17 (68.0)	19 (50.0)
林野賣買 등으로 인한 篤林家 資格의 壽失	6 (46.2)	6 (24.0)	12 (31.6)
疾病 및 死亡 등 自然減少	3 (23.1)	1 (4.0)	4 (10.5)
其 他	2 (15.4)	1 (4.0)	3 (7.9)
合 計	13 (100.0)	25 (100.0)	38 (100.0)

부표 I-20 篤林家 育成政策의 效果에 대한 認識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合計
效果가 크다	3( 21.4)	11( 33.3)	14( 29.8)
效果가 별로 없다	10( 71.4)	19( 57.6)	29( 61.7)
效果가 전혀 없다	1( 7.2)	2( 6.1)	3( 6.4)
모르겠다	-	1( 3.0)	1( 2.1)
合 計	14(100.0)	33(100.0)	47(100.0)

부표 I-21 篤林家 育成政策의 非效率의인 理由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合 計
指定에 따른 實質的 支援의 未沿	7 (58.3)	14 (50.0)	21 (52.5)
指定對象者の 林業 經營意識 缺乏	4 (33.3)	9 (32.1)	13 (32.5)
林業金融資金 支援 등의 政策手段 缺乏	1 (8.4)	4 (14.3)	5 (12.5)
其 他	-	1 (3.6)	1 (2.5)
合 計	12 (100.0)	28 (100.0)	40 (100.0)

부표 I-22 實質의인 篤林家 支援內容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合 計
各種 山林補助金 및 融資金의 優先的 支援	4 (33.3)	9 (31.0)	13 (31.7)
行政機關의 積極的 支援	4 (33.3)	8 (27.6)	12 (29.3)
山林施業時 自律性 賦與	2 (16.7)	8 (27.6)	10 (24.4)
先進地 見學 등 林業教育 實施	1 (8.3)	4 (13.8)	5 (12.2)
其 他	1 (8.3)	-	1 (2.4)
合 計	12 (100.0)	29 (100.0)	41 (100.0)

부표 I-23 林業後繼者에 대한 實質의인 支援內容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合 計
山林開發基金의 融資 및 支援	10 (71.4)	22 (71.0)	32 (71.1)
國庫補助 山林事業 의 優先的 支援	3 (21.4)	4 (12.9)	7 (15.6)
先進地 見學 등 林業教育訓練 實施	-	1 (3.2)	1 (2.2)
最新 林業技術情報, 山林誌 등의 刊行物 提供	1 (7.1)	4 (12.9)	5 (11.1)
合 計	14 (100.0)	31 (100.0)	45 (100.0)

부표 II-1 林業勞動者의 年齡 構成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29세 이하	2 (3.0)	7 (12.5)	7 (8.3)	16 (7.7)
30~39세	21 (31.8)	23 (41.1)	21 (25.0)	65 (31.6)
40~49세	17 (25.8)	17 (30.4)	26 (31.0)	60 (29.1)
50~59세	23 (34.9)	9 (16.1)	26 (31.0)	58 (28.2)
60세 이상	3 (4.6)	-	4 (4.7)	7 (3.4)
合 計	66 (100.0)	56 (100.0)	84 (100.0)	206 (100.0)

부표 II-2 林業勞動者의 學歷 構成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無 學	1 (1.5)	-	6 (7.2)	7 (3.4)
國卒 以下	26 (39.4)	14 (25.0)	35 (42.2)	75 (36.6)
中卒 以下	25 (37.9)	28 (50.0)	31 (37.4)	84 (41.0)
高卒 以下	14 (21.2)	12 (21.4)	9 (10.8)	35 (17.1)
大卒 以上	-	2 (3.6)	2 (2.4)	4 (2.0)
合 計	66 (100.0)	56 (100.0)	83 (100.0)	205 (100.0)

부표 II-3 林業勞動者의 職業 構成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農 業	26 (40.0)	35 (62.5)	50 (59.5)	111 (54.2)
林 業	7 (10.8)	1 (1.8)	7 (8.3)	15 (7.3)
農業 + 林業	27 (41.5)	20 (35.7)	17 (20.3)	64 (31.2)
商 業	1 (1.5)	—	—	1 (0.5)
其 他	4 (6.2)	—	10 (11.9)	14 (6.8)
合 計	65 (100.0)	56 (100.0)	84 (100.0)	205 (100.0)

부표 II-4 林業勞動者의 總扶養家族數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없 음	1 (1.5)	—	1 (1.2)	2 (1.0)
1 ~ 2명	9 (13.4)	7 (12.5)	10 (12.1)	26 (12.6)
3 ~ 4명	26 (38.8)	15 (26.8)	27 (32.5)	68 (33.0)
5명 이상	31 (46.3)	34 (60.7)	45 (54.2)	110 (53.4)
合 計	67 (100.0)	56 (100.0)	83 (100.0)	206 (100.0)

부표 II-5 임업노동자의 경지 및 임야 소유현황

單位:인, 평, ha, %

	총 조사자 수(A)	소유자 수(B)	평균소유규모	소유자 비율(B/A)
논	207	154	1,881	74.4
밭	207	138	1,445	66.7
임야	207	62	4	30.0

부표 II-6 임업노동자의 年間 山林作業 參與日數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業團	合 計
전혀 없음	-	1 (1.8)	5 (6.0)	6 (2.9)
60일 이하	17 (25.4)	32 (57.1)	35 (42.2)	84 (40.8)
60~120일	21 (31.3)	17 (30.4)	20 (24.1)	58 (28.2)
120~240일	21 (31.3)	5 (8.9)	16 (19.3)	42 (20.4)
240일 이상	8 (11.9)	1 (1.8)	7 (8.4)	16 (7.8)
合 計	67 (100.0)	56 (100.0)	83 (100.0)	206 (100.0)

부표 II-7 임업노동자의 하루 平均 現實勞賃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10,000원 以 下	2 (3.0)	2 (3.6)	8 (9.9)	12 (5.9)
10,000~ 15,000원	25 (37.3)	20 (36.4)	32 (39.5)	77 (37.9)
15,000~ 20,000원	16 (23.9)	19 (34.6)	15 (18.5)	50 (24.6)
20,000~ 25,000원	16 (23.9)	13 (23.6)	10 (12.4)	39 (19.2)
25,000~ 30,000원	5 (7.5)	-	13 (16.1)	18 (8.9)
30,000원 以 上	3 (4.5)	1 (1.8)	3 (3.7)	7 (3.5)
合 計	67 (100.0)	55 (100.0)	81 (100.0)	203 (100.0)

부표 II-8 임업노동자의 年間 林業勞動 所得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전혀 없음	2 (3.0)	1 (1.8)	8 (9.8)	11 (5.4)
50萬 원 以下	11 (16.4)	19 (33.9)	26 (31.7)	56 (27.3)
50~100萬 원	16 (23.9)	24 (42.9)	22 (26.8)	62 (30.2)
100~250萬 원	24 (35.8)	8 (14.3)	16 (19.5)	48 (23.4)
250~500萬 원	11 (16.4)	3 (5.4)	8 (9.8)	22 (10.7)
500萬 원 以上	3 (4.5)	1 (1.8)	2 (2.4)	6 (2.9)
合 計	67 (100.0)	56 (100.0)	82 (100.0)	205 (100.0)

부표 II-9 林業勞動者의 主所得源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農業 所得	15 (22.7)	32 (57.1)	26 (31.7)	73 (35.8)
農業 勞動 所 得	24 (36.4)	15 (26.8)	29 (35.4)	68 (33.3)
林業 勞動 所 得	23 (34.9)	4 (7.1)	18 (22.0)	45 (22.1)
其他 所得	4 (6.1)	5 (8.9)	9 (10.9)	18 (8.8)
合 計	66 (100.0)	56 (100.0)	82 (100.0)	204 (100.0)

부표 II-10 山林作業團 加入動機

單位:人, %

項 目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行政官廳 (郡)勸誘	2 (3.0)	3 (5.4)	4 (5.2)	9 (4.5)
山林組合 勸 誘	33 (49.3)	8 (14.3)	32 (41.6)	73 (36.5)
스 스 로 希 望	26 (38.8)	35 (62.5)	33 (42.9)	94 (47.0)
其 他	6 (9.0)	10 (17.9)	8 (10.4)	24 (12.0)
合 計	67 (100.0)	56 (100.0)	77 (100.0)	200 (100.0)

부표 II-11 山林作業團員의 作業團 脫退 意向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있 다	23 (34.3)	21 (37.5)	15 (19.7)	59 (29.7)
없 다	28 (41.8)	21 (37.5)	36 (47.4)	85 (42.7)
모르겠다	16 (23.9)	14 (25.0)	25 (32.9)	55 (27.6)
合 計	67 (100.0)	56 (100.0)	76 (100.0)	199 (100.0)

부표 II-12 산림작업단 가입 전의 산림작업 실시 경험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전혀 경험이 없음	7 (10.6)	17 (30.4)	16 (20.0)	40 (19.8)
1 ~ 2년	17 (25.8)	18 (32.1)	22 (27.5)	57 (28.2)
3 ~ 4년	16 (24.2)	5 (8.9)	21 (26.3)	42 (20.8)
5년 이상	26 (39.4)	16 (28.6)	21 (26.3)	63 (31.2)
合 計	66 (100.0)	56 (100.0)	80 (100.0)	202 (100.0)

부표 II-13 山林作業團員들이 주로 實施한 山林作業 種類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造林 作業	2 (3.0)	2 (3.6)	6 (7.6)	10 (5.0)
育林 作業	6 (9.0)	2 (3.6)	6 (7.6)	14 (6.9)
伐採 作業	11 (16.4)	5 (8.9)	18 (22.8)	34 (16.8)
모든 山林 作 業	48 (71.6)	47 (83.9)	49 (62.0)	144 (71.3)
合 計	67 (100.0)	56 (100.0)	79 (100.0)	202 (100.0)

부표 II-14 山林作業團員들의 營林技能士資格證 所持 有無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有 다	7 (10.6)	14 (25.9)	4 (4.9)	25 (12.4)
缺 다	59 (89.4)	40 (74.1)	78 (95.1)	177 (87.6)
合 計	66 (100.0)	54 (100.0)	82 (100.0)	202 (100.0)

부표 II-15 山林作業團員들의 技能人 養成育成 參與 回數

單位:人,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전혀 없음	5 (7.5)	3 (5.6)	11 (13.4)	19 (9.3)
1 ~ 2회	52 (77.6)	32 (59.3)	59 (72.0)	143 (70.1)
3 ~ 4회	9 (13.4)	6 (11.1)	8 (9.8)	23 (11.3)
4회 以上	1 (1.5)	13 (24.0)	4 (4.9)	18 (8.8)
合 計	67 (100.0)	54 (100.0)	82 (100.0)	203 (100.0)

부표 II-16 산림작업단에서의 직책

單位:인, %

	山林組合 所屬 民有林 作業團	協業體 所屬 協業 作業團	其他 自生 作 業 團	合 計
작업단장	13 (19.4)	14 (25.0)	12 (15.0)	39 (19.2)
총 무	5 (7.5)	5 (8.9)	3 (3.8)	13 (6.4)
일반단원	44 (65.7)	35 (62.5)	50 (62.5)	129 (63.6)
기 타	5 (2.5)	2 (1.0)	15 (7.4)	22 (10.8)
合 計	67 (33.0)	56 (27.6)	80 (39.4)	203 (100.0)

부표 II-17 管內 山林作業을 擔當하는 林業勞動力 與件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協業經營 指導所	合計
매우 부족	7 (50.0)	21 (60.0)	2 (18.2)	30 (50.0)
부족함	6 (42.9)	13 (37.1)	7 (63.6)	26 (43.3)
적당함	1 (7.1)	1 (2.9)	2 (18.2)	4 (6.7)
供給過剩	-	-	-	-
合計	14 (100.0)	35 (100.0)	11 (100.0)	60 (100.0)

부표 II-18 管內 山林作業團 組織 및 育成의 必要性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協業經營 指導所	合計
매우 必要	6 (42.9)	16 (47.1)	6 (54.5)	28 (47.4)
必要함	6 (42.9)	16 (47.1)	5 (45.5)	27 (45.8)
현水準이 適當함	1 (7.1)	-	-	1 (1.7)
필요없음	1 (7.1)	2 (5.8)	-	3 (5.1)
合計	14 (100.0)	34 (100.0)	11 (100.0)	59 (100.0)

부표 II-19 管內 山林作業團 組織 및 育成이 필요한 理由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協業經營 指導所	合計
中央에서 割當된 年間 山林施業量 實行을 위해서	3 (23.1)	1 (3.1)	1 (9.1)	5 (8.9)
勞賃上昇에 따른 일손不足을 해결하기 위해서	2 (15.4)	12 (37.5)	-	14 (25.0)
熟練勞動育成을 통한 效率의 인 山林作業實施를 위해서	8 (61.5)	18 (56.3)	10 (90.9)	36 (64.3)
農山村 住民의 雇傭 및 所得增大를 위해서	-	1 (3.1)	-	1 (1.8)
合計	13 (100.0)	32 (100.0)	11 (100.0)	56 (100.0)

부표 II-20 管內 山林作業團 運營상 가장 큰 隘路點

單位:人, %

	郡廳 山林課	郡 山林組合	協業經營 指導所	合計
山林作業團員들의 脫退 및 加入希望者 不足	-	3 (8.8)	1 (9.1)	4 (7.1)
年間 作業可能한 山林作業物量 不足	2 (18.2)	9 (26.5)	-	11 (19.6)
山林作業團員들에 대한 月適正所得의 未保障	8 (72.7)	21 (61.8)	6 (54.6)	35 (62.5)
安全事故 對策 및 각종 惠澤 未洽	1 (9.1)	1 (2.9)	4 (36.3)	1 (10.7)
合計	11 (100.0)	34 (100.0)	11 (100.0)	56 (100.0)

## 附錄 1 退役給與 및 災害補償 共濟会 約款\* (林業技能 作業團)

### 林業技能 作業團 共濟会 約款

####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① 約款은 山林組合中央會 全羅北道 支部 傘下 林業技能作業團  
(以下 作業團이라 한다) 員의 退役給與와 作業中 負傷에 對한 病院治療 實費를 紿與함으로써 作業團員의 安定과 福祉向上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②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作業團員”이라 함은 所屬 郡 山林組合 또는 私有林 協業經營 指導所에서 “營林技能人 作業團 組織運用指針”에 의거 所定의 節次를 거쳐 組織된 사람을 말한다.
2. “基準報酬”라 함은 退役前 1年間의 支給된 總 賃金額을 月 平均한 金額을 말한다.

第3條(權利의 消滅) 1. ③ 이 約款에 依한 支給을 받을 權利는 그 權利가 發生한 때부터 2년간 行使하지 아니하는 때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한다.

---

\*資料:全羅北道·山林組合中央會 全羅北道 支部.

2. 時效의 中斷과 停止에 關하여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權利의 讓渡 및 擔保의 禁止) 이 約款에서 支給을 받을 權利는 讓渡하거나 擔保할 수 없다.

## 第2章 基金의 設置

第5條(基金의 設置) 作業團 退役 紙與給與金 口座와 災害補償 基金 口座로 區分 山林組合中央會 全羅北道 支部에 設置한다.

第6條(基金의 造成) 1. 退役基金은 事業別 勞務費에서 1.5% 該當額과 主體 附帶費에서 同率該當額을 負擔 造成한다.

2. 災害共濟基金은 前 1項 基金에서 5百萬원 限 別途造成 管理하고 補償支給額이 年 5百萬원을 超過할 경우는 翌年度에 補填한다.

第7條(會計의 設置 및 管理) 1. 本 基金의 運用을 爲하여 退役給與 및 災害補償基金會計("會計"라 한다)를 設置한다.

2. 本 會計의 會計年度는 山林組合 會計年度에 準한다.

3. 本 會計는 山林組合中央會 全羅北道 支部長이 管理하며 支部長은 管理에 關한 事務를 所屬 職員에게 委囑한다.

第8條(基金의 運用) 基金은 確實한 金融機關에 預置하여 運用한다.

第9條(基金運用 委員會) 1. 基金의 有效 適切한 管理와 運用을 期하기 위하여 基金運用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道支部에 둔다.

2.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委員 5人이상 10人 以內로 構成한다.

3. 委員長은 道支部長이 되고 幹事는 指導次長이, 委員은 山林組合長 2人, 作業團員 2人으로 構成한다.

4. 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고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5. 委員長은 第6條의 造成額을 每年 1月中에 主體別로 調整 · 賦課한다.

第10條(議決事項)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基金 負擔額의 決定

2. 基金의 運用計劃

3.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 收支 豫算과 決算의 承認

4. 欠損補填

5. 其他 基金의 管理와 運用에 關한 事項

第11條(委員會의 議決) 1.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委員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되며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는 決定權을 갖는다.

第12條(基金運用計劃) 1. 會長은 基金運用計劃을 作成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 1 月 以內에 委員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2. 前項의 基金運用計劃에는 事業計劃 收支豫算과 其他 必要한 書類를 添附 하여야 한다.

### 第3章 退役給與金

第13條(退役基金의 支給) 作業團員의 退役給與金의 支給은 別表와 같은 基準으로 實施한다.

第14條(退役給與金의 支給制限) 1. 禁錮以上의 刑을 받아 免職되었거나 作業團運營에 加害行爲를 하여 退役된 者는 退役給與基金中 自擔金만 支給한다.

第15條(出役期間의 計算) 1. 出役期間은 作業團員으로 指名된 날이 屬하는 月로부터 退役한 날이 屬하는 月까지의 年月數에 依한다.

2. 出役期間의 計算에 있어서 休役期間(作業中 傷病으로 因한 休役은 除外)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減한다.

第16條(給與金의 移管) 當初 指名받은 所屬 作業團에서 他 所屬 作業團으로 轉出入하여 勤績期間을 通算받고자 할 때는 이를 移管시킬 수 있다.

第17條(死亡退役時의 受領者) 1. 死亡 退役者에 對한 退役給與金은 그 遺族에게 支給한다.

2. 1項의 規定에 依한 遺族의 範圍와 順序는 勤勞基準法 施行令 第16條 내지 第6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8條(退役給與金의 支給猶豫) 一時에 多數 退役하는 境遇 이 約款에 依한 退役 給與金의 支給이 困難할 때에는 猶豫할 수 있다.

## 第4章 災害補償

**第19條(療養補償)** 1. 作業團員이 業務로 因한 負傷을 當할 때는 直接治療 實費를 支給한다. 但 1百萬원을 超過時는 使用 主體에서 負擔한다.

2. 本人의 過失로 災害가 發生하였을 때는 補償金을 支給하지 않는다.

**第20條(災害發生報告)** 災害가 業務로 因한 災害로 認定된 境遇는 所屬長은 最短時日內에 災害發生報告書를 支部長에게 提出한다.

**第21條(災害補償金의 支給)** 1. 災害補償金의 支給事由가 發生하였을 때는 受領權者의 請求와 所屬長의 要請에 依하여 本 約款에 定한 基準에 依하여 第22條의 災害補償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支部長이 決定 支給한다. 다만, 補償金이 10萬원 以下인 境遇에는 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支部長은 第1項의 議決이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修正할 수 있다.

3. 第1項의 災害補償金 請求時에는 다음의 書類를 具備하여 支部長에게 提出한다.

- 가. 災害 經緯 報告書
- 나. 災害補償金 計算書
- 다. 診斷書
- 라. 治療費 計算書(療養補償의 境遇)
- 마. 印鑒證明(受領權者의 印鑒)
- 바. 災害判定에 必要한 書類

**第22條(災害補償審議委員會 設置)** 1. 災害補償의 重要 事項을 公正히 審議하기 為하여 道支部에 災害補償審議委員會(以下“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2. 審議會議 委員은 道支部長, 次長 1人, 組合長 1人으로 構成한다

3. 審議會 議長은 道支部長이 된다.

**第23條(審議會議 議決事項)** 1. 審議會는 이 約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 가. 約款 第19條 내지 第21條의 約款에 依한 災害의 原因이 業務로 인한 것인지의 與否 및 因果關係

나. 第19條 2項의 過失 程度

다. 其他 災害補償에 關하여 議長이 附議하는 事項

2. 審議會는 第1項 各號의 災害補償金의 支給額을 議決한다.

第24條(審議會의 召集 및 議事) 1. 第21條에 依한 災害補償金 請求가 있을 境遇에 道支部長은 審議會를 召集하여 第23條의 各項을 議決한다.

2. 審議會의 議決은 委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3. 審議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關聯者の 陳述 또는 關係職員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이 約款은 山林組合中央會長의 承認日로부터 施行한다.

#### 退役給與金 支給率

出 役 期 間	支 給 率	備 考
1년	자부담 불입액	
2	"	
3	"	
4	4.5개월	
5	5.5 "	
6	7 "	
7	8.5 "	
8	10 "	
9	12 "	
10	14 "	

## 附錄 2

## 林業經營人 設問調查表

## I. 경영주 개황

## 1.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 2. 귀하의 학력은?

-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② 임업      ③ 상업      ④ 공업  
 ⑤ 공무원      ⑥ 회사원      ⑦ 유관단체 임직원  
 ⑧ 자유업      ⑨ 무직      ⑩ 기타( )

## 4. 귀하의 총 부양가족수는 몇명입니까?

- ① 없음      ② 1~2명      ③ 3~4명      ④ 5명 이상

## 5. 귀하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독립 가      ② 임업후계자      ③ 사유림 협업체 회원  
 ④ 산림계원      ⑤ 일반 산주      ⑥ 기타( )

## 6. 귀하의 경지 및 임야 소유현황은 어떠하십니까?

. 임야 소유 면적 : \_\_\_\_\_필지 \_\_\_\_\_ha

- 그 중에서 인공 조림면적 : \_\_\_\_\_ha

. 논 : \_\_\_\_\_평,      밭 : \_\_\_\_\_평

## II. 산림 경영의식 및 경영실태

1. 귀하가 임야를 소유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상 속
- ② 구 입
- ③ 일부 상속 및 일부 구입
- ④ 분수대부림
- ⑤ 기타( )

2. 귀하가 임야를 구입하셨을 때, 임야 구입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분묘 용지
- ② 지가상승 기대
- ③ 임업경영
- ④ 농용지 이용(초지 및 개간)
- ⑤ 기타( )

3. 귀하는 향후 임야 소유규모를 확대할 의향이 계십니까?

- ① 확대 의사가 있다
- ②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
- ③ 축소하겠다

3-1. 임야 소유규모 확대 의사가 계시다면,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 ① 목재 생산(임업경영) 용지
- ② 분묘 용지
- ③ 임산물(표고 및 약초) 재배 용지
- ④ 농용지(초지 및 개간)
- ⑤ 재산 증식용
- ⑥ 기타( )

3-2. 임야 소유규모 축소 의사가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임업경영의 낮은 수익성으로 장래성이 없기 때문
- ② 임업노동력 부족 및 경영을 담당할 후계자가 없기 때문
- ③ 임야 매각자금을 농지매입, 가계비 등 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 ④ 기타( )

4. 귀하는 현재 산림경영의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업노동력 부족
- ② 임업경영기술 부족
- ③ 임업경영자금 부족
- ④ 임업경영규모의 영세성
- ⑤ 행정적인 혼가절차의 복잡
- ⑥ 기타( )

5. 귀하는 현재 임업노동력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업노동자의 절대적 부족 현상
- ② 임업노동자의 부녀화 및 노령화
- ③ 전문적인 임업노동기술자 부족
- ④ 임업노동자에 대한 노임 상승
- ⑤ 기타( )

6. 귀하는 현재 산림경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분야의 기술부족을 강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 ① 조림기술      ② 육림기술      ③ 별채기술  
 ④ 영림계획 편성 및 임업경영기술      ⑤ 기타( )

7. 귀하의 경우 각종 임업경영자금중 어떤 분야의 자금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림자금      ② 육림자금      ③ 양묘자금      ④ 별채자금  
 ⑤ 임도시설자금      ⑥ 임산물(표고 등) 생산자금      ⑦ 임업후계자자금  
 ⑧ 임지구입자금      ⑨ 기타( )

8. 아래의 각종 산림사업중, 귀하의 산림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경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 실시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작업 내용	실시여부 < 실시:○ 미실시:x >	작업 내용	실시여부 < 실시:○ 미실시:x >
① 지존작업		⑨ 지장목제거작업	
② 묘목식재작업		⑩ 천연림보육작업	
③ 보식작업		⑪ 방제(수간주사) 작업	
④ 풀베기작업		⑫ 간벌작업	
⑤ 추비작업		⑬ 별채(주벌)작업	
⑥ 덩쿨제거작업		⑭ 임도개설작업	
⑦ 가지치기작업		⑮ 기타( )	
⑧ 치수가꾸기작업			

9. 귀하의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조림, 육림, 별채작업을 포함한 일체의 산림작업을 대행해주는 위탁임업경영단체(가칭)가 생긴다면, 귀하의 산림경영을 맡길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 Ⅲ.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1. 귀하께서 독립가(임업후계자)일 경우, 지정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행정관청(군) 추천      ② 산림조합 추천      ③ 스스로 희망  
 ④ 기 타( )

2. 귀하께서는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필요성은 있으나 어려울 것임  
 ④ 필요 없음

3. 귀하는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정규모 이상 임업경영 임가의 집중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② 농산촌 임업노동의 유출 및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③ 독립가의 산림을 자녀 및 후계자에게 계승시키기 위해  
 ④ 기 타( )

4. 귀하께서 독립가(농업후계자) 육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인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② 명목상으로 지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  
 ③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  
 ④ 기 타( )

5. 귀하가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지정된 후, 실질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산림개발기금의 용자 및 지원  
 ② 국고보조 산림사업의 우선지원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③ 영림계획 편성 및 산림시업시 자율성 부여  
 ④ 선진지 견학 및 산림경영기술 지도 등 임업 교육훈련 실시  
 ⑤ 국유림 분수권 설정시 우선권 부여  
 ⑥ 최신 임업기술정보, 산림지, 임산물 판매유통 정보 등의 간행물 제공  
 ⑦ 기 타( )

6. 현재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은 40세 미만으로써 1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보다 많은 임업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령 40세 이상, 소유규모

10ha 이하도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함

- ② 실제 임업경영을 영위하는 전업임가의 육성을 위해 연령을 40세 이하, 소유규모 10ha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함
- ③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당함
- ④ 기타( )

7. 현재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귀하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규모로써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00만원
- ② 1,500만원
- ③ 2,000만원
- ④ 2,500만원
- ⑤ 3,000만원
- ⑥ 기타( )

8.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조건은 현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에서 어느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가 적당
- ② 5년 거치 10년 상환
- ③ 5년 거치 15년 상환
- ④ 10년 거치 10년 상환
- ⑤ 10년 거치 20년 상환
- ⑥ 기타( )

9. 현재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금은 임업후계자 각각에 대한 대인신용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 응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사업에 대한 응자가 좋음.
- ② 임업후계자 개인에 대한 무담보 대인신용대출이 좋음.
- ③ 사업에 대한 응자와 임업후계자에 대한 대인신용을 병용하는 것이 좋음.
- ④ 기타( )

10. 귀하가 향후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중요한 순서대로 기입 요망) ( )

- ① 임업경영 의욕과 농산촌 정착의사가 강한 대상자의 선정
- ② 대상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 ③ 각종 산림보조금, 임지구입자금 등 응자금 지원 확대
- ④ 임업경영기술 지도 및 선진지 견학 등 임업 교육기회 확대
- ⑤ 영림계획 편성 및 벌채시 매목조사 생략 등 산림사업시 자율성 보장

## 附錄 3 林業勞動者 및 山林作業團 設問調查表

### I. 임업노동자 개황

#### 1.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 2. 귀하의 학력은?

-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② 임업      ③ 농업 + 임업  
 ④ 상업      ⑤ 기타( )

#### 4. 귀하의 총 부양가족수는 몇명입니까?

- ① 없음      ② 1~2명  
 ③ 3~4명      ④ 5명 이상

#### 5. 귀하는 다음중 어떠한 형태의 작업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 산림조합소속 민유림 작업단      ② 협업경영체소속 협업작업단  
 ③ 산림조합소속 자생작업단      ④ 군청소속 기동작업단  
 ⑤ 아무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⑥ 기타( )

#### 6. 귀하는 경지 및 임야를 어느정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 . 논 : \_\_\_\_\_ 평      . 밭 : \_\_\_\_\_ 평  
 . 임야 : \_\_\_\_\_ ha

## II. 임업노동 실태

1. 귀하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농업소득    | ② 농업노동 소득  |
| ③ 임업노동 소득 | ④ 기타 소득( ) |

2. 귀하의 경우 연간 산림작업 실시에 따른 임업노동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 |              |             |               |
|--------------|-------------|---------------|
| ① 없음         | ② 50만원 이하   | ③ 50~100만원    |
| ④ 100~250만원  | ⑤ 250~500만원 | ⑥ 500~1,000만원 |
| ⑦ 1,000만원 이상 |             |               |

3. 귀하의 경우 연간 산림작업에 참여하는 일수는 대략 몇일 정도 되십니까?

- |            |           |           |
|------------|-----------|-----------|
| ① 없음       | ② 60일 이하  | ③ 60~120일 |
| ④ 120~240일 | ⑤ 240일 이상 |           |

4. 귀하는 산림작업 실시에 따른 월평균 임업노동 소득이 대략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10~20만원 | ② 20~30만원 | ③ 30~40만원 |
| ④ 40~50만원 | ⑤ 50~60만원 | ⑥ 60만원 이상 |

5. 귀하는 현재 산림작업 실시에 따른 임업노동 소득이 높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연간 산림작업이 가능한 작업물량이 부족하기 때문            |  |
| ② 산림작업에 대한 정부의 임금지급 단가가 낮기 때문           |  |
| ③ 벌채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일당이 낮기 때문 |  |
| ④ 기타( )                                 |  |

6. 귀하의 경우 산림작업 시행시 하루 평균 현실노임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 |                  |                  |
|------------------|------------------|
| ① 10,000원 이하     | ② 10,000~15,000원 |
| ③ 15,000~20,000원 | ④ 20,000~25,000원 |
| ⑤ 25,000~30,000원 | ⑥ 30,000원 이상     |

### III. 산림작업단

1. 귀하가 작업단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행정관청(군) 권유 | ② 산림조합 권유 |
| ③ 스스로 희망     | ④ 기 타( )  |

2. 귀하는 작업단에 가입하기 전에 산림작업을 실시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 |             |         |
|-------------|---------|
| ① 전혀 경험이 없음 | ② 1~2년  |
| ③ 3~4년      | ④ 5년 이상 |

3. 귀하는 지금까지 주로 어떠한 산림작업을 실시해 오셨습니까?

- |        |           |
|--------|-----------|
| ① 조림작업 | ② 육림작업    |
| ③ 벌채작업 | ④ 모든 산림작업 |

4. 귀하가 산림작업단에서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작업단장 | ② 총 무    |
| ③ 일반단원 | ④ 기 타( ) |

5. 귀하는 현재 영림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있 다 | ② 없 다 |
|-------|-------|

6. 귀하는 지금까지 임업기술 및 기능인 양성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① 전혀없다   | ② 1~2회  |
| ③ 3 ~ 4회 | ④ 4회 이상 |

7. 귀하는 산림작업단에 지급되는 아래의 임금지불 방법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완전 월급제    | ② 완전 능률급제 |
| ③ 일당제       | ④ 도급제     |
| ⑤ 월기본급+능률급제 | ⑥ 기 타( )  |

8. 귀하는 산림작업단의 소속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군 산림과 소속 | ② 군 산림조합 소속       |
| ③ 협업경영체 소속 | ④ 위탁임업경영회사(가칭) 소속 |
| ⑤ 독립된 법인체  | ⑥ 기 타( )          |

9. 귀하는 산림작업단의 조직규모로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1개 리당 1개 작업단 | ② 1개 면당 1개 작업단 |
| ③ 1개 군당 1개 작업단 | ④ 지역실정에 맞게 임의로 |
| ⑤ 기 타( )       |                |

10. 귀하는 1개 산림작업단의 인원은 몇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5명 이하  | ② 5~10명  |
| ③ 11~15명 | ④ 16~20명 |
| ⑤ 20명 이상 |          |

11. 귀하의 경우 현재 소속된 산림작업단에서 탈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 다  | ② 없 다 |
| ③ 모르겠다 |       |

12. 귀하가 산림작업단에서 탈퇴하실 의향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월 적정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  |
| ② 고된 작업과 나쁜 근로조건 때문         |  |
| ③ 자녀교육, 직업관계상 도회지로 이사하기 위해서 |  |
| ④ 기 타( )                    |  |

13. 귀하는 실제 산림작업단의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작업단에 대한 기계톱, 차량, 숙박시설 등의 장비지원 미흡 |  |
| ② 작업단에 대한 유류비, 식비 등의 운영비 지원 미흡     |  |
| ③ 작업단 내부의 단원간 마찰                   |  |
| ④ 실제 작업실행시 행정기관의 협조미흡(감독 및 임금정산 등) |  |
| ⑤ 기 타( )                           |  |

14. 귀하가 실제 산림작업을 수행하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 ① 안전장비 및 안전교육 등의 안전대책 미비
- ② 농한기(12월~2월) 작업 가능한 산림작업 물량 부족
- ③ 작업의 고통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 수준
- ④ 별채, 하산 등의 전문 임업기술의 부족
- ⑤ 기타(      )

15. 귀하는 산림작업 수행시 안전대책으로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안전장비의 지급  | ② 안전사고 방지교육 실시 |
| ③ 산업재해보험 가입 | ④ 의료보험 가입      |
| ⑤ 위험수당의 신설  | ⑥ 기타(      )   |

16. 귀하는 산림작업단의 연간 작업 가능한 산림작업 물량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내 산림작업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
- ② 산림작업단 자체의 물량 확보 노력 부족
- ③ 산림작업단이 농한기(12~2월)에 작업 가능한 별채작업을 못하기 때문
- ④ 행정기관에서 적정한 작업 물량을 배정하지 못하기 때문
- ⑤ 기타(      )

17. 귀하의 경우 현재 작업단에 대한 처우로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 요망) (      )

- ① 안전장비 지급,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 각종 안전사고 대책
- ② 월 일정금액(10~20만원정도)의 기본급제 등 월 적정 소득의 보장
- ③ 퇴직금공제제도, 노후연금제도 등 각종 노후대책
- ④ 자녀학자금 보조 등 각종 자녀교육대책
- ⑤ 산림사업 단비의 현실화, 작업물량 확보 등 각종 행정적 지원
- ⑥ 기타(      )

## 附錄 4 林業人 育成 關聯業務擔當者 設問 調查表

### I. 독립가 업무담당자

1. 귀하의 관내에서 독립가가년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독립가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미흡(탈퇴)
  - ② 임야 매매 등으로 인한 독립가 자격의 상실
  - ③ 질병 및 사망 등 자연감소
  - ④ 기타( )
2. 독립가 육성의 근본취지는 독립가의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여 사유림 경영의 선도자로 유도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독립가 육성정책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① 효과가 있다
  - ② 효과가 별로 없다
  - ③ 효과가 전혀 없다
  - ④ 모르겠다
3. 독립가 육성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있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 ① 산림의 조림 및 녹화
  - ② 실질적인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 ③ 포상제도 등으로 산주 사기 고조
  - ④ 기타( )
4. 독립가 육성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독립가로 지정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
  - ② 독립가 지정 대상자의 관외 거주 및 임업경영 의식 결핍
  - ③ 독립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임업금융자금 지원 등의 정책수단 결핍
  - ④ 기타( )

5. 독립가로 지정된 후 실질적으로 독립가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 입니까?

- ① 각종 산림보조금 및 융자금의 우선적 지원
- ② 산림시업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 ③ 영림계획 편성 및 산림시업시 자율성 부여
- ④ 선진지 견학 및 산림경영 기술지도 등 임업교육 실시
- ⑤ 국유림 분수권 설정시 우선권 부여
- ⑥ 기타( )

6. 향후 독립가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말 씀해 주십시오

- ① 임업경영 의욕이 강한 독립가의 선별적 집중 지원
- ② 영림계획 편성 및 별채시 매목조사 생략 등 산림사업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③ 임업경영기술 지도 및 선진지 견학 등 임업교육의 기회 확대
- ④ 각종 산림보조금 및 임지구입자금 등 융자금지원의 확대
- ⑤ 기타 전의사항( )

## II. 임업후계자 업무담당자

1. 귀하께서는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 ② 필요 함
- ③ 필요성은 있으나 어려울 것임
- ④ 필요 없음

2. 귀하는 임업후계자 육성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정규모 이상 임업경영 임가의 집중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 ② 젊은 임업노동의 유출 및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 ③ 독립가의 산림을 자녀 및 후계자에게 계승시키기 위해
- ④ 기타( )

3. 귀하께서 임업후계자 육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임업후계자로 육성할 만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
- ② 육성 대상자는 있으나 가입을 거리기 때문
- ③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임업의 특성에 비해 지원내용이 빈약하기 때문
- ④ 기타(            )

4.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후, 실질적으로 임업후계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산림개발기금의 응자 및 지원
- ② 국고보조 산림사업의 우선적 지원 및 기타 행정기관의 협조
- ③ 영림계획 편성 및 산림시업시 자율성 부여
- ④ 선진지 견학 및 임업경영기술 지도 등 임업 교육훈련 실시
- ⑤ 최신 임업기술정보, 산림지, 임산물 판매유통정보 등의 간행물 제공

5. 현재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귀하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구모로써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00만원 정도
- ② 1,500만원
- ③ 2,000만원
- ④ 2,500만원
- ⑤ 3,000만원 이상
- ⑥ 기타(            )

6.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조건은 현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에서 어느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현행대로가 적당      | ② 5년 거치 10년 상환     |
| ③ 5년 거치 15년 상환  | ④ 10년 거치 10년 상환    |
| ⑤ 10년 거치 20년 상환 | ⑥ 기타(            ) |

7. 현행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금은 임업후계자 각각에 대한 대인신용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 응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사업에 대한 응자가 좋음
- ② 임업후계자 개인에 대한 무담보 대인신용대출이 좋음
- ③ 사업에 대한 응자와 임업후계자에 대한 대인신용을 병용하는 것이 좋음
- ④ 기타(            )

8. 귀하께서 향후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임업경영 의욕과 농산촌 정착의사가 강한 대상자의 선정 및 집중적 지원
- ② 임업후계자에 대한 응자규모 확대 및 응자조건 완화
- ③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임업후계자 지원대책 마련
- ④ 임업후계자 자질향상을 위한 임업경영기술 교육 및 각종 정보제공으로 사기 부여
- ⑤ 기타 건의 사항( )

### III. 임업노동자 및 산림작업단 업무담당자

1. 귀하의 관내에서 연간 산림작업을 담당할 임업노동력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부족함 | ② 부족함   |
| ③ 적당함    | ④ 공급 과잉 |

2. 귀하의 관내에서는 산림작업단을 조직,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           |         |
|-----------|---------|
| ① 매우 필요함  | ② 필요함   |
| ③ 현수준이 적당 | ④ 필요 없음 |

3. 귀하의 관내에서 산림작업단의 조직 및 육성이 꼭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앙에서 배정된 연간 산림사업량의 실행을 위해서
- ② 농산촌 노임상승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 ③ 숙련된 임업노동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산림사업 실시를 위해서
- ④ 농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해서
- ⑤ 기타( )

4. 귀하의 관내에서 산림사업 시행시 하루 평균 현실노임은 어느 정도입니까?

남자 : 약 \_\_\_\_\_ 천원  
 여자 : 약 \_\_\_\_\_ 천원

5. 귀하의 관내에서 실제 산림작업단을 운영하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산림작업단원들의 탈퇴 및 가입희망자 부족
  - ② 산림작업단이 연간 작업가능한 작업 물량 부족
  - ③ 산림작업단원들에 대한 월 적정 소득의 미보장
  - ④ 산림작업단원들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및 각종 혜택 미흡
  - ⑤ 기 타( )
6. 귀하는 산림작업단원들이 작업단을 탈퇴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월 적정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 ② 고된 작업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
  - ③ 임금수준이 높은 타산업 부문으로 이직하기 때문
  - ④ 기 타( )
7. 귀하는 산림작업단원에게 지급되는 월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30만원
  - ② 30~40만원
  - ③ 40~50만원
  - ④ 50만원 이상
8. 귀하는 산림작업단원들에게 매월 적정 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간 산림작업이 가능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
  - ② 산림작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단비가 낮기 때문
  - ③ 산림작업단원들의 전문기술(벌채작업 등)이 부족하여 일당이 낮기 때문
  - ④ 산림작업단원에게 직접지원이 가능한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
  - ⑤ 기 타( )
9. 귀하는 산림작업단에게 지급되는 아래의 임금지불 방법 중에서 어느 것 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완전 월급제 | ② 완전 능율급제   | ③ 일 당 제  |
| ④ 도 급 제  | ⑤ 월기본급+능율급제 | ⑥ 기 타( ) |
10. 귀하는 산림작업단의 소속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군 산림과 소속        | ② 군 산림조합 소속 | ③ 협업체 소속 |
| ④ 위탁임업경영회사(가칭) 소속 | ⑤ 독립된 법인체   |          |

11. 귀하는 산림작업단의 조직규모로써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1개 리당 1개 작업단 | ② 1개 면당 1개 작업단 |
| ③ 1개 군당 1개 작업단 | ④ 지역실정에 맞게 임의로 |
| ⑤ 기타 ( )       |                |

12. 귀하는 1개 산림작업단의 인원은 몇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5명 이하  | ② 5~10명  | ③ 11~15명 |
| ④ 16~20명 | ⑤ 20명 이상 |          |

13. 귀하의 관내에서 산림작업단의 연간 작업가능한 작업 물량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내에 할당된 전체 산림작업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            |  |
| ② 전체 산림작업 물량중 작업단에게 줄 수 있는 보조사업 물량이 적기 때문 |  |
| ③ 산림작업 물량이 시기적으로 3月~11月 사이에 집중 배정되기 때문    |  |
| ④ 산림작업단이 12月~2月 사이에 작업가능한 벌채작업을 못하기 때문    |  |
| ⑤ 기타 ( )                                  |  |

14. 귀하의 관내에서 산림작업단이 벌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현재의 제도 및 규정상 작업단이 벌채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               |  |
| ② 산림작업단에서는 벌채기술자 및 장비부족으로 벌채작업 능력이 없기 때문            |  |
| ③ 현재 벌채작업 물량의 대부분이 목상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작업단의 물량확보가 어렵기 때문 |  |
| ④ 산림작업단에서 벌채한 임목의 판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                     |  |

15. 귀하는 현재 산림작업단 운영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 요망) ( )

- |   |  |
|---|--|
| ① 안전장비 지급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 각종 안전사고 대책        |  |
| ② 월 일정금액 (10~20만원 정도)의 기본급제 등 월 적정 소득의 보장 |  |
| ③ 산림사업 단비의 현실화 및 산주 자부담 비용을 국고보조로 전환      |  |
| ④ 의료보험 및 퇴직금 공제제도, 노후연금제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  |
| ⑤ 기타 견의사항 ( )                             |  |

## 참 고 문 현

- 강봉순 外, 「농어민후계자 사업자금의 적정지원액 조사」, 연구보고 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8.
- 강성연, “독립가의 임업경영 실태분석,” 「전북대 농대 논문집」, 제9집, 전북대 농대, 1978, pp. 141-160.
- 김동일 外, 「영농후계자 육성방안」, 연구보고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6.
- 김상기, “농민후계자의 육성실태와 개선대책,” 「21세기 농정자료 시리즈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8, pp. 75 ~ 102.
- 김용하, “작업단운영과 육립노동력 실태에 관한 연구” -동부·중부영림 서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
- 김장수 外, 「임업후계자의 효율적인 육성방안 연구」, 한국임정연구회, 1987.
- 노재후, “임업기계화에 의한 산림작업의 생력화,” 「한국임학회지」, 54 호, 1981, pp. 90~102.
- 마상규, “사유림경영제도의 발전책,” 농수축산신보, (90. 5. 14일자), (90. 5. 18일자).
- \_\_\_\_\_, “임업기술 및 직업훈련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한국임학회지」, 51호, 1981, pp. 56~65.
- \_\_\_\_\_,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방안,” 「21세기 농정자료 시리즈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8, pp. 191~288.
- 박명규, “임업노동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임정연구회 보고」, 1979, pp. 289~313.

- 박태식, “산주의 경제실태조사 연구,” 「임정연구회 보고」, 1972.
- \_\_\_\_\_, 「삼립정책학」, 향문사, 1983. 1.
- 박태식 外, 「임업경제학」, 향문사, 1983. 7.
- 이광원 外, 「사유림 협업경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12.
- 이광원, “임업구조와 산림소유의 문제점과 대책,” 「농촌경제」, 제7권 3호, 1984. 9, pp. 67~79.
- \_\_\_\_\_, 「농림가 육성과 산촌진흥에 관한 사례연구」, 연구보고 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12.
- 이중웅 外,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위한 작목별 표준영농설계」, 연구보고 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12.
- \_\_\_\_\_, 「농가의 정책수용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보고 1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12.
- 유병일 外, “산촌의 노동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45호, 1979, pp. 37~45.
- 장우환, “한국 산촌지역의 특성분석 및 유형화”,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2.
- 주우일 外,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12.
- \_\_\_\_\_, 「저소득어촌 육성방안」, 연구보고 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12.
- 최양부 外,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연구보고 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12.
- 최정섭 外, 「자립경영농가 육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12.
- 경제기획원, 「주택 및 인구센서스 보고」, 각연도.
- \_\_\_\_\_, 「한국표준직업분류」, 1974.
- \_\_\_\_\_, 「한국표준산업분류」, 1975.

- 노동부, 「한국직업사전」, 1986.
- 농수산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1984.
- 농협중앙회,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움 보고서 84-1, 1984.
- 산림청, 「독립가 육성요강」, 1987. 11.
- \_\_\_\_\_, 「임업통계요람」, 각년도.
- \_\_\_\_\_, 「'90년도 임업후계자 육성지침」, 1990.
- \_\_\_\_\_, 「산림소유규모 및 경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990.
- 임업기계훈련원, 「영림기능인 기술교재」, 1988.
- 吉澤四郎, 「山村の就業構造」 - 事例分析を中心として-, 「農業の構造變化と勞動市場」, 研究叢書 9, 中央大學經濟研究所, 1978. 3, pp. 187~237.
- 大崎六郎, 「林業勞動問題の所在とその解決への方向」, 「林業經濟」 164, 1962, pp. 18~26.
- 筒井迪夫 編著, 「林政學」, 地球社, 1983.
- 藤井實, 「山村における農林家の經營實態と資金の需要動向」, 「農林金融誌」, 1961.
- 山岡亮一・山崎武雄, 「林業勞動の研究」, 有斐閣, 1963.
- 森林・林業行政研究會 編, 「森林・林業と行政」, 清文社, 1982.
- 小林裕, 「山村における農民層分解と林業問題」 - 林業經濟研究會 1969 年 春季大會シンポジウム-, 「日本林學會誌」, 第52卷 第1號, 1970. 1, pp. 25~28.
- 松島良雄, 「林業經濟學」, 地球出版株式會社, 1961.
- 岸根卓郎, 「森林政策學」, 養賢堂, 1979.
- 鈴木忠和 外, 「山村住民の所得形成」, 山村振興調查會, 1968.
- 日本林業調查會, 「林業マンのための補助・融資・稅制全科」, 1982. 8.
- 林業構造研究會 編, 「日本經濟と林業・山村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80.

- 林業労動研究會 編, 「林業労動問題を考之る」, 日本林業調査會, 1976
- 田中值一, 「林業労動者の現状と運動」, 「林業經濟」332, 1976, pp. 8~15.
- Arthur H. Meyer, Arthur B. Recknagel, Donald D. Stevenson and Ronald A. Bartoo, *Forest Management*, John Wiley & Sons, 1961.
- Clason Marion, *Research in Forest Economics and Forest Policy*, Resources for the Future INC., Washington, D. C., 1977.
- John A. Sinden and Albert C. Worrell, *Unpriced Values*, John Wiley & Sons, 1979.
- Joseph Buongiorno and J. Keith Gilless, *Forest Management and Economic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7.
- Leslie A. J., *The Purpose of Forests*, Basil Blackwell Inc., New York, 1987.

빈

면

연구보고 232

##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

찍은날 1990. 12. 펴낸날 1990. 12.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